
소년범 대상 중간처우제도의 활성화방안

: 6호처분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Halfway Treatment for Delinquent Juvenile
: Focused on the Protective Disposition No.6

이승현 · 박선영

발간사

소년범죄가 양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부산여중생 폭행사건과 인천초등생 살인사건 등에서 보듯이 소년범죄가 질적으로는 보다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소년범죄의 배경을 보면 가정의 기능적 결손 현상 등으로 인한 사회적응력이 결여되고 있고, 소년이 비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소가 사회 곳곳에 존재합니다. 소년범죄의 재범률이 40%대를 웃돌고 있고, 소년법의 전과비율이 점점 높아가는 상황에서 현행 소년사법의 교정시스템을 점검해보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소년법에는 10가지 보호처분을 통해 비행소년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자 하고 있으나, 보호처분의 편중 현상으로 인해 비행청소년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개별적 처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소년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잘 활용되고 있지 않은 6호처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의 기능적 결손과 구조적 해체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소년법에 대한 집중처우방식으로 6호처분을 비롯한 중간처우제도는 소년의 안정적 사회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6호처분 시설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위탁소년과 관련 종사자에 대한 설문조사 및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해 6호처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해 보았습니다. 영국과 일본 등의 6호처분 운영모델을 참고로 하여 중간처우시설로서 6호처분이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시설운영측면, 프로그램 개선측면, 관리감독 측면, 사후관리측면, 지역사회연계측면 등으로 다양하게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연구가 향후 아동복지시설 위탁처분인 6호처분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이번 연구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이승현 연구위원과 한세대학교 박선영 교수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그리고 관련자료 제공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6호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여러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범죄예방팀과 보호법제과 관계자 여러분, 그밖에 연구에 자문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7년 10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김진환**

목 차

국문요약 1

| 제1장 | 서 론 · 이승현 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제2절 연구내용 9

제3절 연구방법 10

| 제2장 | 소년사법에서 중간처우의 의의와 변화흐름 · 이승현 ··· 11

제1절 소년사법에서 중간처우의 의의 13

1. 중간처우의 의의 13

가. 중간처우의 개념 13

나. 소년법 특성으로 본 중간처우의 의의 14

2. 6호처분의 의의 15

3. 다른 보호처분과의 차이점 16

제2절 소년법 대상 중간처우제도의 변화흐름 17

| 제3장 | 중간처우로서 6호처분시설 운영현황 분석 · 이승현 ··· 19

제1절 6호처분시설 현황 분석 21

1. 6호처분시설 설치 현황 21

가. 6호처분 현황 21

나. 아동보호치료시설 설치현황 23

다. 6호처분 전담시설 현황 25

2. 6호처분시설 종사자 배치현황	29
3. 6호처분 시설 기준	31
4. 6호처분 시설의 예산 현황	32
제2절 6호처분 교육프로그램 현황	32
제3절 6호처분시설 관리감독 현황	34
제4절 6호처분시설의 사후관리 현황	34
제5절 6호처분 관련법률 현황	34
제6절 현행 소년범 대상 중간처우제도의 문제점	36
1. 시설 운영상 문제점	36
가. 지역적 편중현상 심화	36
나. 예산상의 어려움	37
다. 대규모 형태로 인한 폐쇄적 시설운영	38
라. 운영기준안 부재	38
2. 비행청소년 전문교육 프로그램의 부재	38
3. 관리감독주체의 불명확으로 인한 문제	39
4. 사후관리 부족으로 인한 중간처우 기능 약화	39
5. 근거법령의 불명확	40
6. 대상자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40

| 제4장 | 소년범 중간처우시설 관계자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결과분석 · 이승현·박선영 43

제1절 위탁소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분석	45
1. 응답자 특성	45
2. 과거 비행력 및 처분 경험	47
3. 시설 생활경험 및 만족도	52
4. 시설 프로그램의 만족도	55
5. 시설 경험에 따른 인식 변화	61
6. 시설에 대한 이미지	70

7. 소결	72
제2절 시설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분석	75
1. 응답자 특성	75
2. 6호 처분에 대한 인식	77
가. 6호 처분이 추구하는 목표	78
나. 소년원과의 차별성	79
다. 1호처분(청소년회복센터)과의 차별성	81
라. 6호 처분에 적합한 대상자 선별기준	82
3. 시설 운영에 대한 종사자의 인식	84
가. 담당하고 있는 위탁 소년의 수	84
나. 걱정하는 위탁 소년의 숫자	85
다. 시설 운영의 어려운 점	86
라. 현재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	87
마. 6호 시설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할 프로그램	88
바. 6호 시설에 도입이 필요한 프로그램	90
사. 종사자의 전문성과 교육	91
아. 보호소년을 관리·감독하는데 어려운 점	92
자. 지역사회 및 관련기관	93
차. 기타 업무협조가 필요한 기관과 업무내용	95
카. 사후관리의 형태	96
타. 구체적인 사후관리 방법	97
4. 6호 처분시설의 개선방안	97
가. 6호 처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98
나. 6호 처분 시설의 관리·감독 기관	100
5. 소결	101
제3절 시설장 및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분석	103
1. 조사방법	103
2. 실무자 및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분석	104
가. 중간처우로서 6호 처분의 성격	104
나. 6호처분 운영 관련 인식	109
다. 6호처분시설의 전문성 관련 인식	112
라. 퇴소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후관리	115

마. 관련기관간 연계관련 인식	116
바. 6호처분 활성화방안에 대한 의견	118
사. 통합 관리·감독의 주체에 관한 의견	123
3. 소결	124

| 제5장 | 외국의 소년범 중간처우 형태 분석 · 이승현·박선영 · 127

제1절 미국의 소년범 중간처우 형태	129
1. 중간처우 시설현황	130
가. 오하이오 라이트하우스 청소년 센터(Lighthouse Youth Center)	131
나. 펜실베니아 아델포이 빌리지(Adelphoi Village)	133
2. 중간처우 시설의 교육프로그램 현황	135
가. 아델포이 빌리지	135
나. 오하이오 라이트 하우스	136
3. 중간처우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137
4. 중간처우시설의 사후관리 현황(지역사회 연계)	137
5. 중간처우시설 관련 입법현황	137
6. 소년범 대상 중간처우 효과성 연구 검토	138
7. 시사점	140
제2절 영국의 소년범 중간처우 형태	141
1. 중간처우 시설현황	143
2. 중간처우 시설의 교육프로그램 현황	149
3. 중간처우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149
가. 교육·아동복지와 기량에 대한 표준국(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vices and Skills, Ofsted)	150
나.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151
다. 소년사법 위원회(Youth Justice Board)	151
라. 치안법원 판사(Magistrates)	151
마.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152
바. 지방정부(Local Authorities)	152
사. 사회복지사(Social Workers)	152

- 아. 소년범죄대응 팀(Youth Offending Teams) 152
- 4. 중간처우시설의 사후관리 현황(지역사회 연계) 153
- 5. 중간처우시설 관련 입법현황 154
- 6. 소년범 대상 중간처우 효과성 연구 검토 155
- 7. 영국 중간처우시설의 시사점 157
- 제3절 일본의 소년범 중간처우 형태 158
 - 1. 아동자립지원 시설 현황 160
 - 가. 시설현황 160
 - 나. 종사자 배치 및 자격기준 162
 - 2. 아동자립지원시설의 교육프로그램 164
 - 3. 아동자립지원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164
 - 4. 아동자립지원시설 관련 입법현황 165
 - 5. 아동자립지원시설에 대한 평가 165
 - 6. 일본 중간처우시설의 시사점 166

| 제6장 | 소년범대상 중간처우제도로서 6호처분의

활성화방안 · 이승현·박선영 167

- 제1절 중간처우로서 6호처분의 정체성 169
 - 1. 6호처분의 정체성 확립 169
 - 2. 청소년회복센터(1호처분)과의 차별성 170
 - 3. 소년원과과의 차별성 171
- 제2절 6호처분 대상자 선별방안 172
- 제3절 6호처분시설의 운영개선방안 174
 - 1. 예산의 국가사무 전환화 174
 - 2. 6호처분시설 운영기준 174
 - 가. 시설 운영기준 174
 - 나. 종사자 배치기준 175
 - 다. 시설의 형태 및 운영기준안 176

제4절 6호처분시설 전문화된 프로그램 마련방안	177
제5절 6호처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방안	179
제6절 6호처분 이후 사후관리방안	181
제7절 6호처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입법개선방안	183
참고문헌	185
Abstract	191
부록	193
[부록1] 위탁소년 대상 설문조사지	193
[부록2]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지	206
[부록3] 관련전문가 심층면접지	214

표 차례

〈표 3-1〉 보호처분의 종류	21
〈표 3-2〉 소년보호사건 처리현황	22
〈표 3-3〉 법원의 6호처분현황	23
〈표 3-4〉 아동보호치료시설 현황	24
〈표 3-5〉 지역별 아동보호치료시설 설치현황(2012~2015)	25
〈표 3-6〉 6호처분시설의 운영현황	26
〈표 3-7〉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6호 수탁기관 현황	26
〈표 3-8〉 6호처분시설의 운영현황	29
〈표 3-9〉 「아동복지법」 시행령상 아동보호치료시설 종사자 기준	30
〈표 3-10〉 6호처분시설의 종사자 배치현황	30
〈표 3-11〉 6호처분 시설 현황	31
〈표 3-12〉 6호처분 시설 예산현황	32
〈표 3-13〉 6호처분 시설 교육프로그램 현황	33
〈표 4-1〉 응답자 특성	46
〈표 4-2〉 6호처분 시설 거주 경험 여부	47
〈표 4-3〉 범죄명(중복응답)	48
〈표 4-4〉 소년원 처분 경험	48
〈표 4-5〉 보호관찰 처분 경험	49
〈표 4-6〉 학교 교육 현황	50
〈표 4-7〉 입소 전 가족	51
〈표 4-8〉 부모와의 관계성	51
〈표 4-9〉 입소 전 친구	52
〈표 4-10〉 시설에 대한 만족도	53
〈표 4-11〉 시설 중 가장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	54
〈표 4-12〉 시설에서의 하루일과 만족도	55
〈표 4-13〉 평일 일과 불만족 사유	55
〈표 4-14〉 주말 일과 불만족 사유	55
〈표 4-15〉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는 정도	56
〈표 4-16〉 담임과의 관계	57
〈표 4-17〉 현재 참여 교육	58
〈표 4-18〉 교과/학습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58

〈표 4-19〉 직업/진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59
〈표 4-20〉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60
〈표 4-21〉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교육이나 프로그램	61
〈표 4-22〉 시설에 들어오기 전에 저지른 사건에 대한 의견	62
〈표 4-23〉 저지른 사건으로 인해 시설에서 지내야 하는 것에 대한 의견	62
〈표 4-24〉 시설 생활의 힘든 점	63
〈표 4-25〉 시설에 들어와서 느끼는 생각	64
〈표 4-26〉 시설이탈 충동·유혹 여부	65
〈표 4-27〉 시설이탈 충동·유혹을 가장 크게 느낀 시기	65
〈표 4-28〉 시설이탈 충동·유혹 이유(중복응답)	65
〈표 4-29〉 시설에 들어오기 전에 저지른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생각	66
〈표 4-30〉 시설 입소 후 변한 점	67
〈표 4-31〉 퇴소 이후 계획(중복응답)	68
〈표 4-32〉 퇴소 이후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것(중복응답)	68
〈표 4-33〉 친구의 퇴소 이후 재범여부에 대한 인식	69
〈표 4-34〉 친구의 퇴소이후 재범이유(중복응답)	69
〈표 4-35〉 퇴소 이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중복응답)	70
〈표 4-36〉 입소 전 시설인식	70
〈표 4-37〉 입소 후 시설에 대한 인식 변화	71
〈표 4-38〉 시설에 대한 이미지	71
〈표 4-39〉 적절한 교육기간	72
〈표 4-40〉 응답자의 특성	76
〈표 4-41〉 6호처분 시설이 추구하는 목표(중복응답)	78
〈표 4-42〉 6호처분 시설이 추구하는 목표 1순위	79
〈표 4-43〉 6호처분 시설이 추구하는 목표 2순위	79
〈표 4-44〉 6호처분 시설이 추구하는 목표 3순위	79
〈표 4-45〉 소년원과 구별되는 특징	80
〈표 4-46〉 청소년회복센터와 구별되는 특징	82
〈표 4-47〉 6호처분에 적합한 대상자 선별기준(중복응답)	83
〈표 4-48〉 6호처분에 적합한 대상자 선별기준 1순위	83
〈표 4-49〉 6호처분에 적합한 대상자 선별기준 2순위	84
〈표 4-50〉 6호처분에 적합한 대상자 선별기준 3순위	84
〈표 4-51〉 현재 담당하고 있는 위탁소년의 수	85
〈표 4-52〉 6호처분 시설에서 관리해야 할 적정 위탁소년 수	85

〈표 4-53〉 시설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점	86
〈표 4-54〉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는 정도	87
〈표 4-55〉 6호처분 시설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프로그램(중복응답)	88
〈표 4-56〉 6호처분 시설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프로그램 1순위	89
〈표 4-57〉 6호처분 시설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프로그램 2순위	89
〈표 4-58〉 6호처분 시설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프로그램 3순위	90
〈표 4-59〉 6호처분 시설에서 도입이 필요한 프로그램	90
〈표 4-60〉 종사자의 전문성과 교육	91
〈표 4-61〉 보호소년 관리·감독 어려운 점	92
〈표 4-62〉 지역사회 및 관련기관과의 연계	94
〈표 4-63〉 기타 업무 협조 및 연계가 필요한 기관	96
〈표 4-64〉 기타 업무 협조 및 연계가 필요한 기관: 사유	96
〈표 4-65〉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에 대한 사후관리 형태(중복응답)	97
〈표 4-66〉 사후관리의 방법	97
〈표 4-67〉 6호처분이 활성화되기 위한 개선방안	99
〈표 4-68〉 향후 6호 처분 대상 보호소년의 관리·감독 관할	100
〈표 4-69〉 향후 6호 처분 대상 보호소년의 관리·감독 관할 이유	101
〈표 4-70〉 심층면접 참여자	104
〈표 5-1〉 일본의 청소년지원을 위한 사회적 양호시설 유형	159
〈표 5-2〉 일본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160
〈표 6-1〉 1호처분과 6호처분의 구별기준	171
〈표 6-2〉 8/9/10호처분과 6호처분의 구별기준	172

그림 차례

[그림 4-1] 소년분류심사원과 6호처분시설의 이미지 비교	72
[그림 5-1] 회부절차	147
[그림 5-2] 아동의 집 협력기관	150
[그림 5-3] 회부절차	155

국문요약

가정의 기능적 결손 현상으로 인한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소년사건의 재범률이 40.0%대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대상 소년에게 보호처분을 활성화하여 소년의 특성에 맞는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처분을 해야 한다. 그러나 2007년 「소년법」 개정을 통해 보호처분의 형태를 다양화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간처우시설의 부족 등으로 소년법에 대한 처우가 사회내 및 시설내 처우로 양극화되고 있다.

6호처분은 비행정도는 중하지 않으나 보호환경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소년에 대하여 위탁을 통해 비행환경을 개선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처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호처분시설 부족으로 시설에 대한 집중화가 심화되면서 7개의 아동보호치료시설이 대형화되고 있다. 시설 운영자와 위탁소년의 상호이해 부족으로 인해 관계형성 및 교정교육 기회를 갖기 어렵고, 대형인원 위주로 하다 보니, 수용 중심의 폐쇄적 운영을 하고 있어 중간처우로서의 성격을 잃어가고 있다. 6호처분 기관의 대부분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관계로 위탁소년에 대한 비행성 교정을 위한 전문인력과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종교단체 종사자의 자원봉사에 의존하는 교육 위주이어서 6호처분 대상소년의 수와 교정교육에 필요한 교육내용이 부족한 실정이다.

중간처우로서 6호처분은 가족의 기능적 결손과 구조적 해체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소년법에 대한 집중처우방식으로서 소년법의 재비행 예방에 기여하리라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6호처분의 운영실태 점검과 함께 대상소년과 관련 종사자의 설문조사와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해 현황과 욕구를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외국의 6호처분 운영모델을 참고 하여 중간처우시설로서 6호처분이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대안 즉, 시설 운영개선방안, 프로그램 개선방안, 관리감독 개선방안, 위탁소년에 대한 사후관리방안, 지역사회연계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아동보호치료시설 가운데 전국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으로부터 6호처분 전담시설로 지정된 기관은 서울 2개, 대구 1개, 대전 1개, 경기 1개, 충북 1개, 전북 1개 등 총 7개 기관으로 지역 편중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남녀 구분수용 현황으로 보면, 남자전문시설은 3개(효광원, 살레시오청소년센터, 로템청소년센터), 여자전문시설은

2 소년범 대상 중간처우제도의 활성화방안

3개(마자펠로센터, 나사로 청소년의 집, 늘사랑청소년센터)로 나누어져 있어 성별에 따른 지역적 편중 현상이 더 심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6호처분 시설들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보호치료시설’로 분류되어 종사자 기준과 시설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 예산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지원이 2005년부터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이후 지자체 예산으로 결정됨에 따라 전국에 흩어져 있는 6호처분시설들은 각 지역의 사정에 따라 달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입의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보조금과 후원금, 법원에서 위탁아동 1인당 30만원씩 받게 되는 비용이 전부이다. 6호처분 시설은 현재 19명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에서부터 150명이 수용되는 시설까지 다양한 시설규모를 갖고 있다. 원래 중간처우는 소규모 그룹홈의 형태에서 기원한 것인데 6호처분시설은 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기존 시설에 위탁소년이 대거 몰리게 되어 가정의 보호력을 대신할 수 있는 시설의 필요성이 있는 6호처분이 대형화되어 가고 있다.

현재 6호처분시설은 대부분 민간 또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다 보니, 운영방식이 단체의 성격과 기준에 따라 제각각 운영되고 있다. 최근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침이 마련되면서 시설기준과 종사자 자격기준 등이 상세화되긴 하였으나, 20-30년 넘게 운영되어온 6호처분시설의 관행을 벗어나고 체계적인 운영기준안을 두고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6호처분시설에서는 직업교육, 교과교육, 상담치료 인성교육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교육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대부분 일반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대부분이고 비행청소년의 상황에 적합한 전문비행예방교육프로그램이나 비행성감소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직업교육과 교과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가동인력과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은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6호처분시설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자이긴 하나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이나 그밖에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되기 때문에 법원에 관리감독권한이 없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보호치료시설은 보건복지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아동보호치료시설에 대한 설치기준과 종사자배치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 시설 및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감독하고 있지는 않다. 6호처분 시설 위탁소년에 대한 사후관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고, 사후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퇴소한 청소년에 대한 사후관리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6호처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6호처분이 중간처우로서의 정체성을 살리도록 할 필요가 있다. 6호처분이 중간처우라고 하나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시설내 처우에 가깝다. 따라서 6호처분 시설을 준개방형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시설내 처우가 갖는 처벌과 교정의 관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6호처분에 맞는 적절한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도 중요하다. 6호처분 대상자로는 가정이 없는 대상이 아니라 가정의 보호력이 미약하여 일정기간 가정의 기능을 대신 해줌으로써 가정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기대가능한 대상이어야 한다. 6호처분 시설 내에서 단체생활에 적응가능한 대상이어야 한다. 정신질환자 또는 폭력성향이 강하여 집단생활을 할 수 없는 대상은 제외되어야 한다. 교육에 대한 의지를 가진 대상이면 더 효과적이다. 비행력이나 비행유형은 대상자 선별기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6호처분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비행청소년을 위한 아동보호치료시설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아닌 국가예산으로 지원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시설기준도 일반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24시간 밀착케어를 하는 아동보호치료시설 기준에 맞는 운영기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종사자 배치기준에 있어서도 생활지도 인력기준이 5인당 1인 정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임상심리사, 의사 채용에 대한 기준도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6호처분시설이 1호처분시설과 차별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프로그램 교육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병행되어야 한다.

6호처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는 보건복지부에서 아동보호치료시설로 인가하는 외에 별도로 관리감독이 없는 상황에서 시설별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다. 6호처분 시설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보다 집중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6호처분 이후 사후관리를 위한 자립생활관과 같은 사후정착전문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보호관찰과 연계시기를 앞당겨 사후관리에 있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호처분 운영이 내실화되기 위해서는 입법적 개선도 필요하다. 예산지원이 국가사

4 소년범 대상 중간처우제도의 활성화방안

무로 전환되기 위해 「아동복지법」상에 아동보호치료시설에 대한 예산은 국가부담으로 한다는 근거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지정이 늦어짐으로 인해 재정적 공백이 발생하는바, 법원의 보호처분 결정문만으로 기초생활수급지 변경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수급 관련규정이 정비되어야 한다. 6호처분시설이 대안 교육기관으로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에 아동보호치료시설에 예비교원을 통한 교육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두어야 한다.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1장

서론

이승현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일반적으로 중간처우라는 개념은 두 가지 형태가 혼용되고 있다. 하나는 교도소 출소 전 이루어지는 사회내 정착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이루어지는 처우이고, 또 하나는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 중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처우를 중간처우라고 한다.

그러나 소년사법에서 중간처우는 시설내구금과 사회내 처우의 중간단계에 있는 처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호자감호위탁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청소년복지지원시설 위탁(1호), 아동복지시설 위탁처분(6호)과 병원·요양소 위탁처분(7호)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중간처우 중 6호처분은 비행정도는 중하지 않으나 보호환경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소년에 대하여 위탁을 통해 비행환경을 개선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처우이다.

가정의 기능적 결손 현상으로 인해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소년사건의 재범률이 40.0%대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대상 소년에게는 보호처분을 활성화하여 소년의 특성에 맞는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처분을 해야 한다. 그러나 2007년 「소년법」 개정을 통해 보호처분의 형태를 다양화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간처우시설의 부족 등으로 소년법에 대한 처우가 사회내 및 시설내 처우로 양극화되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중간처우인 6호처분의 경우 처분율이 약 3.0%에 불과한 수준이다.

현재 6호처분은 전국 7개시설(효광원, 살레시오 등)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적 편중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중간처우 대상자가 소년원에 송치되거나 사회내 처우에 그치게 되어 소년의 특성에 맞는 처우를 하지 못하고 있다.

6호처분시설 부족으로 기존 시설에 대한 집중화가 심화되면서 7개의 아동보호치료

8 소년범 대상 중간처우제도의 활성화방안

시설이 대형화되었다. 대전 효광원의 경우 위탁인원이 150명에 이를 정도로 대형화되어 있다. 시설운영자와 위탁소년의 상호이해 부족으로 인해 관계형성 및 교정교육 기회를 갖기 어렵고, 대형인원 위주로 하다 보니, 수용 중심의 폐쇄적 운영을 하고 있어 중간처우로서의 성격을 잃어가고 있다. 6호처분 기관의 대부분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관개로 위탁소년에 대한 비행성 교정을 위한 전문인력과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종교단체 종사자의 자원봉사에 의존하는 교육 위주여서 6호처분 대상소년의 수요와 교정교육에 필요한 교육내용이 부족한 실정이다.

6호처분은 「소년법」 제42조 제1항 제6호 아동복지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이나 그밖의 소년시설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보호치료시설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인력 및 시설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함으로 인해 비행소년에 대한 교정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이 없는 상태이다. 「소년법」상 어떤 기관이 6호처분 시설을 관리감독할지가 명확하지 않고, 아동복지시설의 설치기관인 보건복지부,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기관인 여성가족부, 위탁소년 개인의 집행에 대한 감독을 하는 법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관여함으로 인해 관리감독의 흠결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가 지방사무로 분류되어 있어 「아동복지법」상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예산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타지역 아동수용 등을 이유로 지자체에서 지원을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¹⁾

6호처분 위탁소년에 대한 지속적 관리감독과 사후지도를 위해서는 통합적인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하고 대상소년에게 맞는 전문비행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 6호처분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운영내실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중간처우가 보다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비행소년에 대한 처우를 다양화하고 가정과 같은 보호력이 필요한 대상에게 보호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비행소년이 조기에 범죄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6호처분 대상자의 경우 주거지원이 절실한 경우가 많으므로, 중간처우의 특성을 살려 처우가 끝난 이후로 주거알선 등 지역사회내 자원을 활용한 정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처우관리를 위해서는 6호처분 시설 내에서의

1) 경향신문, “여성청소년보호시설 나사로의 집 폐쇄 위기”, 2016년 3월 30일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3302129051&code=940202)

보호뿐만 아니라, 처분이후 가정의 보호력을 대신해줄 수 있는 주거지원을 하거나 비행환경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도록 소년법에 대한 지지 및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처우의 연속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간처우로서 6호처분은 가족의 기능적 결손과 구조적 해체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소년법에 대한 집중처우방식으로서 소년법의 재비행 예방에 기여하리라 본다. 6호처분을 비롯한 중간처우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입법적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2010년 이은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소년수탁시설 조사 실시 외에도, 2016년 11월 정성호의원이 중간처우로서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해 중간처우시설의 개념을 법에 명확히 하고, 관리감독 주체에 대한 사항도 법에 명문화하기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하였다(의안번호 제193451호).

6호처분이 중간처우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6호처분의 운영실태 점검과 함께 대상소년과 관련 종사자의 설문조사와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해 현황과 욕구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외국의 6호처분 운영모델을 참고 하여 중간처우시설로서 6호처분이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대안 즉, 시설 운영개선방안, 프로그램 개선방안, 관리감독 개선방안, 위탁소년에 대한 사후관리방안, 지역사회연계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내용

본 연구는 크게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밝히고 연구방법 등을 소개한다.

제2장에서는 소년사법에서 중간처우의 의의와 변화흐름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소년법 대상 중간처우로서 6호처분의 시설현황을 파악하고 기관의 교육프로그램, 관리감독 현황, 사후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며, 관련입법 상황을 통해 현행 중간처우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한다.

제4장에서는 6호처분 대상소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6호처분 시설에 대한 인식

과 교육을 통한 변화를 확인하고, 시설종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시설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들을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시설장과 관련학계 전문가, 판사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을 통해 현행 6호처분 운영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소년범 대상 중간처우제도로써 6호처분이 활성화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들을 6호처분시설의 정체성에서부터, 6호처분 대상자 선별방안, 6호처분 시설 운영개선방안, 전문 교육프로그램 개선방안, 6호처분 시설 관리감독방안, 6호처분 종료 후 사후관리방안, 6호처분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6호처분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제안한다.

제3절 연구방법

본 연구는 주로 문헌연구와 외국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6호처분 대상자 및 종사자에 대한 설문조사, 관련전문가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6호처분 운영실태 파악은 국내외 통계자료를 통해 기본정보를 파악하고, 관련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취합하였다. 그밖에 시설장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구체적인 운영실태에 대한 파악을 위해 종사자 및 위탁소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관련전문가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였다. 6호처분 대상소년 337명과 종사자 135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시설장 및 판사, 학자 등 관련전문가에 대한 심층면접 진행을 통해 그 내용을 보완하였다.

소년사법에서 중간처우의 의의와 변화흐름

이 승 현

소년사법에서 중간처우의 의의와 변화흐름

제1절 소년사법에서 중간처우의 의의

1. 중간처우의 의의

가. 중간처우의 개념

중간처우는 형태와 운영방식이 다양하다. 주로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중간처우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별할 수 있다.

첫째, 전통적인 형태로 출소를 앞둔 예정자에 대하여 개방형 형태의 사회내 시설에 머물게 하면서 사회복귀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중간처우 형태(halfway house out of prison)가 있다. 안양·춘천·창원·순천·청주여자교도소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망의 집, 밀양희망센터 등이 이러한 형태이다. 한국법무복지공단 및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출소자 지원시설 등도 이에 포함된다.

둘째, 구금형 대안으로 사회내 거주시설로서의 중간처우(halfway house into prison)가 있다. 시설내 구금을 하는 대신에 중간처우시설에 수용되면서 개인별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이다. 미국과 캐나다의 소년사법에 대한 그룹홈이 이러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Latessa, E & Allen, HE., 2011). 구금형 대안으로서의 중간처우를 어떤 유형으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현재 6호처분인 아동보호치료시설 위탁처분에 대하여 중간처우로 보는 것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1호처분과 7호처분은 소년사법 운영의 관점에서 본다면 달리볼 여지가 있다. 과거 소년보호처분의 유형으로서 7호처분은 병원 또는 요양소 등의 위탁이므로 중간처우

의 성격에 가까웠고, 중간처우라고 평가할 수 있다.²⁾ 그러나 2016년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대신할 수 있는 시설로 인가를 받으면서 사법형그룹홈 형태인 청소년회복센터의 성격도 중간처우에 가까워졌다. 또한 7호처분인 병원이나 요양소 위탁처분은 본래 중간처우이었으나, 최근에는 대전의 료소년원에서 이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시설내 처우로 분류되었다.

중간처우의 형태에 있어 논란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바, 본 연구에서의 중간처우란 앞서 설명한 유형 가운데 두 번째 형태로서 지역사회에 개방된 시설에 수용하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소년의 교정교육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처우를 의미하고, 이러한 대표적 형태가 6호처분(아동복지시설 위탁처분)이라고 본다. 중간처우는 시설수용을 전제로 하나, 시설내 처우의 대안으로서 지역사회 교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와는 다르다.

나. 소년범 특성으로 본 중간처우의 의의

최근 소년사법에서 보호관찰이 확대 적용되는 등 사회내 처우가 확장되긴 하였으나, 보호관찰 업무를 수행할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보호관찰을 받더라도 가족의 빈곤이나 부모의 이혼, 가출, 사망 또는 부모의 학대 등으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보호관찰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³⁾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이나 범죄예방위원과의 결연보다는 비행소년에 대한 신병을 인수하여 안정적인 가정의 역할을 대신할 대안시설의 역할이 필요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6호처분을 비롯한 중간처우시설은 비행소년에 대한 대안가정으로서의 나름대로의 역할과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⁴⁾

실제로 6호처분과 관련된 실태조사⁵⁾를 보면, 6호처분 시설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시설운영자가 비행청소년을 위한 선도에 자발적으로 나서 열성과 성의를 갖고 무의탁

2) 김지선, “중간처우시설(6호처분 시설)의 문제점 및 입법과제”, 소년 중간처우시설 운영, 이대로 좋은가?, 국회의원 정성호 정책토론회, 2016, 3쪽.

3) 김지선, “소년범에 대한 보호처분의 내실화, 다양화 방안”, 「소년법」 개정논의자료집, 법무부 소년법개정특별위원회, 2005, 16쪽.

4) 김지선, “소년범에 대한 보호처분의 내실화, 다양화 방안”, 「소년법」 개정논의자료집, 법무부 소년법개정특별위원회, 2005, 16쪽.

5) 김지선, “4호처분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176쪽.

비행청소년과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 가정의 따스함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주고,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사회의 민간자원이 성공적으로 결합하여 비행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삶의 경험을 심어주며,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한 점을 미루어보아 소년사법에서 6호처분은 보호처분의 일환으로서 그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2. 6호처분의 의의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감호위탁 처분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하도록 되어 있다. 6호처분은 비행이 상습화되지 않은 저연령 소년이나 가정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소년을 대상으로 시설내 처우를 하면서 가정에서 배워야 할 역할들을 습득하고 생활의 안정을 찾아가는 처우라고 할 수 있다.⁶⁾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부모의 이혼, 가출, 사망 또는 부모의 학대, 의사소통의 부재 등으로 인해 가족관계가 해체되거나 가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소년의 경우 가정의 역할을 대신해줄 적절한 시설이 필요하고, 이런 의미에서 중간처우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⁷⁾

6호처분은 비행성이 심화되지 않았으나 보호환경이 매우 열악한 자 또는 보호자의 학대나 성매매비행 등으로 신체 또는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 일정기간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의 교정교육을 통해 사회복귀를 하고자 하는 제도이다.⁸⁾ 6호처분의 목적과 처우내용에 관해서는 「소년법」이나 소년심판규칙에 이를 직접 규정한 것이 없으나 소년을 적절한 환경이 구비된 수탁기관에 일정 기간동안 보호수용하면서 적극적인 심성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과거 비행을 뉘우치게 함과 동시에 건전한 가치관과 생활태도를 길러 재비행을 막고, 나아가 적성에 맞는 학과 및 직업교육을 통하여 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제도라고 본다.⁹⁾ 6호처분은 시설내 처우이긴 하나 국가 위주의 교정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내 처우인 소년원 수용처분(8·9·10호 처분)과는 달리 민간 주도의 시설내 처우라는 점에서 그

6) 이승현, “아동복지시설 위탁처분(6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 제15호, 2010, 254쪽

7) 이승현, “아동복지시설 위탁처분(6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 제15호, 2010, 255쪽

8) 이승현, “아동복지시설 위탁처분(6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 제15호, 2010, 255쪽

9)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소년, 2014, 282쪽.

성격을 달리하고, 복지적 처우이긴 하나 비행성을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의 아동복지 지원과는 구별된다.

6호처분은 국가 시설수용이 소년에게 주는 충격과 파괴적 영향을 줄일 수 있어 보다 인간적이라는 점, 국가시설수용에서 생기는 범죄학습이나 낙인효과를 줄이고 사회생활과의 단절을 줄여 재사회화를 쉽게 하는 점, 국가시설수용에 비해 경비와 효율면에서 보다 경제적인 점, 비행소년의 처우에 민간단체가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소년의 복지와 형사정책적 개선에 기여하는 한편 보호관찰관의 업무가중, 소년원의 과밀수용 등 국가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점 등의 장점이 있다.¹⁰⁾

소년분류심사 기준을 보면 6호처분은 ① 비행 정도가 낮지만 보호자나 가족이 전혀 없는 무위탁소년으로 방치하면 비행반복의 위험성이 큰 경우, ② 소년이 이미 4호나 5호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재범하였고 개선가능성은 있지만 보호자나 가족의 보호능력이 미약한 경우, ③ 아직 9호나 10호처분 전력은 없지만 비행정도가 높은 소년으로서 국가기관에 의한 엄격한 제도적 선도보다는 다소 온정적인 보호에 의한 선도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있는 소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¹¹⁾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수용되는 6호처분의 경우 가정에서 폭력 또는 학대를 경험한 비행소년에 대하여 시설내에서 교육 및 치료를 받으면서 상당 부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시설내 위탁이라는 성격상 폭력성이 심한 소년은 관리상 문제 등을 이유로 피하고 있다.

3. 다른 보호처분과의 차이점

6호처분 위탁시설은 소년원과 가정의 중간단계에 있다고 본다. 6호처분을 집행하는 위탁시설은 지역사회에 설치되어 있고, 위탁시설에서는 소년이 시설운영자의 지도 하에 단체생활을 하기 때문에 일상 가정에서 쉽지 않은 지속적 감독과 통제가 가능하므로 1호처분(보호자감호위탁)을 할 수 없는 소년에게 운용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6호처분과 9호처분(단기소년원송치처분)은 위탁기간이 6개월로 동일하고 비

10) 안병경, “소년범에 대한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의 연계방안”, 보호 통권 18권, 법무부, 2006, 234쪽.

11)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소년, 2014, 282쪽.

행과 보호의 필요성이 유사한 경우가 많지만, 소년원은 국가시설이어서 인적·물적 시설이 우수한 반면, 보호소년의 비행 및 보호의 필요성 정도가 비교적 높은 경우에 적용된다.

6호처분은 4·5호처분(보호관찰처분)과도 구분된다. 수탁시설에서는 시설운영자와 위탁소년이 일정기간 공동생활을 하면서 시설운영자는 소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소년에 대한 충실한 지도를 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소년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교육기회나 취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수탁시설에서 위탁소년이 소규모 단체생활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치료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호관찰 처분보다 내실화되고 적극적인 사회내 처우라고 할 수 있다.¹²⁾

제2절 소년법 대상 중간처우제도의 변화흐름

6호처분은 「소년법」 제정 당시 2호처분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1958년 「제정소년법」 제30조는 제2호처분으로 ‘사원, 교회, 기타 소년보호단체 감호위탁’을 규정해 두고 있다. 그러나 2호처분에서 사원이나 교회 등 종교단체의 참여는 거의 없었고 주로 사회독지가나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소년보호시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도 극히 미약하여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다.¹³⁾

결국 보호처분의 활성화방안으로 1988년 「소년법」 개정 과정에서 4호처분 즉,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으로 변경되었다. 이를 통해 기존의 2호처분 시설이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로 등록하면 국가의 운영지원과 감독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소년보호수탁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4호처분은 주로 소년연령이 낮거나 성행이 비교적 양호하지만 적당한 보호가 없어 오갈 데가 없거나, 부모가 시설수용을 신청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 하는 처분이었다.¹⁴⁾

12) 김준호/이순래, 소년수탁시설의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18쪽.

13) 최태식, “「소년법」상 보호처분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교정복지연구 제3호, 2006, 191쪽.

14) 이승현, 앞의 논문, 257쪽

18 소년범 대상 중간처우제도의 활성화방안

2007년 「소년법」 개정에서 보호처분의 종류가 다양화되면서 4호처분은 6호처분으로 처분명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기존의 6호처분 시설들은 일반 아동에 대한 위탁도 병행하는 형태였으나, 2015년부터 아동보호치료시설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면서 비행청소년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전환해하는 추세에 있고 현재 아동보호치료시설로 인가받은 전북 고창의 희망샘학교를 제외하고, 6곳은 6호처분 대상자를 전담하고 있다.

중간처우로서 6호처분시설 운영현황 분석

이 승 현

제3장

중간처우로서 6호처분시설 운영현황 분석

제1절 6호처분시설 현황 분석

1. 6호처분시설 설치 현황

가. 6호처분 현황

소년보호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2016년 33,142건 가운데 23,526건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실시하였다. 「소년법」 개정 전 소년보호사건의 처분결과를 보면 2호처분(단기보호관찰처분)과 3호처분(장기보호관찰처분)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1호처분(보호자감호위탁처분), 6호처분(단기소년원송치), 7호처분(장기소년원송치), 4호처분(소년보호시설위탁처분)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 보호처분의 종류

보호처분	내용	기간	대상연령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	10세 이상
2호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3호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4호	단기보호관찰	1년	10세 이상
5호	장기보호관찰	2년(1년 연장가)	10세 이상
6호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이나 그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6개월 (6개월 연장가)	10세 이상
7호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시설에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가)	10세 이상
8호	1개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10세 이상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세 이상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12세 이상

22 소년범 대상 중간처우제도의 활성화방안

〈표 3-2〉 소년보호사건 처리현황

(단위: 명, (%))

구분 연도	계	보 호 처 분																	
		소 계	1호 보호자 등에 감 위탁	2호 수강 명령	3호 사회 봉사 명령	4호 단기 보호 관찰	5호 장기 보호 관찰	6호 소년 보호 시설 위탁	7호 병원 요양소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소년원 송치	1,2호	1,2,3 호	1,2,4 호	1,2,5 호	1,2,3 ,4호	1,2,3 ,5호	1,3 호
2008	39,532 (100)	30,222 (76.4)	6,214 (15.7)	130 (0.3)	181 (0.5)	-	10 (0.0)	410 (1.0)	-	6 (0.0)	762 (1.9)	857 (2.2)	972 (2.5)	-	3,535 (8.9)	874 (2.2)	765 (1.9)	1,576 (4.0)	227 (0.6)
2009	47,865 (100)	35,819 (74.8)	5,883 (12.3)	71 (0.0)	268 (0.6)	23 (0.1)	2 (0.0)	128 (0.3)	100 (0.2)	22 (0.0)	919 (1.9)	992 (2.1)	3,388 (7.1)	572 (1.2)	4,891 (10.2)	1,186 (2.5)	1,905 (4.0)	1,581 (3.3)	1,148 (2.4)
2010	45,090 (100)	32,416 (71.9)	4,527 (10.0)	37 (0.1)	116 (0.3)	34 (0.1)	13 (0.0)	73 (0.2)	81 (0.2)	11 (0.0)	861 (1.9)	806 (1.8)	4,251 (9.4)	615 (1.4)	4,473 (9.9)	1,309 (2.9)	1,777 (4.0)	1,288 (2.9)	1,399 (3.1)
2011	48,713 (100)	35,072 (72.0)	4,021 (8.3)	18 (0.0)	53 (0.1)	77 (0.2)	28 (0.0)	9 (0.0)	150 (0.3)	15 (0.0)	883 (1.8)	1,019 (2.1)	4,123 (8.5)	874 (1.8)	4,998 (10.3)	1,393 (2.9)	2,420 (4.9)	1,990 (4.1)	1,629 (3.3)
2012	50,771 (100)	36,150 (71.2)	4,222 (8.3)	51 (0.1)	104 (0.2)	103 (0.2)	71 (0.1)	14 (0.0)	195 (0.4)	7 (0.0)	1,206 (2.8)	1,169 (2.3)	4,518 (8.9)	1,040 (2.0)	5,180 (10.2)	1,118 (2.2)	2,266 (4.5)	1,831 (3.6)	1,405 (2.8)
2013	45,393 (100)	31,952 (70.4)	3,822 (8.4)	107 (0.2)	125 (0.3)	91 (0.2)	41 (0.1)	13 (0.0)	149 (0.3)	3 (0.0)	1,153 (2.5)	1,252 (2.8)	3,522 (7.6)	646 (1.4)	4,020 (8.9)	1,496 (3.3)	1,557 (3.4)	1,901 (4.2)	1,297 (2.9)
2014	34,600 (100)	24,529 (70.9)	2,960 (8.5)	70 (0.2)	92 (0.3)	63 (0.2)	32 (0.1)	9 (0.0)	183 (0.5)	-	812 (2.3)	813 (2.3)	2,420 (7.0)	445 (1.3)	3,163 (9.1)	1,026 (3.0)	1,160 (3.4)	1,541 (4.5)	982 (2.8)
2015	35,920 (100)	25,911 (72.1)	3,771 (10.5)	16 (0.0)	49 (0.1)	40 (0.1)	19 (0.1)	2 (0.0)	141 (0.4)	5 (0.0)	794 (2.2)	866 (2.4)	2,609 (7.3)	581 (1.6)	3,696 (10.3)	803 (2.2)	1,627 (4.5)	1,571 (4.4)	1,133 (3.2)
2016	33,142 (100)	23,526 (70.9)	3,142 (9.5)	59 (0.1)	87 (0.2)	154 (0.5)	27 (0.0)	5 (0.0)	105 (0.3)	3 (0.0)	770 (2.3)	770 (2.3)	2,554 (7.7)	557 (1.7)	3,255 (9.8)	1,009 (3.0)	1,272 (3.8)	1,413 (4.3)	851 (2.6)
구분 연도	보 호 처 분								불처분	심 리 불개시	타법원 이송	검사 송치							
	1,3,4호	1,3,5호	1,4호	1,5호	4,6호	5,6호	5,8호	기타											
2008	1,960 (5.0)	1,838 (4.6)	6,259 (15.8)	2,599 (6.6)	137 (0.3)	142 (0.4)	408 (1.0)	365 (0.9)	2,020 (5.1)	6,801 (17.2)	332 (0.8)	152 (0.4)							
2009	2,183 (4.6)	1,731 (3.6)	4,780 (10.0)	1,256 (2.6)	192 (0.4)	739 (1.5)	1,708 (3.6)	151 (0.3)	3,041 (6.4)	7,377 (15.4)	1,234 (2.6)	394 (0.8)							
2010	2,182 (4.9)	1,482 (3.3)	3,593 (8.0)	880 (1.9)	104 (0.2)	747 (1.6)	1,689 (3.7)	68 (0.1)	3,105 (6.9)	7,338 (16.3)	1,840 (4.0)	391 (0.9)							
2011	2,418 (5.0)	1,352 (2.8)	3,689 (7.6)	808 (1.76)	146 (0.3)	922 (1.9)	1,915 (3.9)	122 (0.2)	2,579 (5.3)	7,905 (16.2)	2,536 (5.2)	621 (1.3)							
2012	2,087 (4.1)	1,560 (3.1)	3,054 (6.0)	637 (1.3)	56 (0.1)	1,164 (2.3)	2,607 (5.1)	485 (1.0)	2,278 (4.5)	9,209 (18.1)	2,441 (4.8)	693 (1.4)							
2013	1,868 (4.1)	1,843 (4.1)	2,746 (6.0)	900 (2.0)	22 (0.0)	1,150 (2.5)	1,879 (4.1)	349 (0.8)	2,663 (5.9)	8,065 (17.8)	2,179 (4.8)	534 (1.2)							
2014	1,844 (5.3)	1,535 (4.5)	2,354 (6.8)	742 (2.1)	39 (0.1)	834 (2.4)	1,257 (3.6)	153 (0.4)	2,543 (7.4)	5,669 (16.4)	1,403 (4.0)	456 (1.3)							
2015	1,832 (5.1)	1,082 (3.0)	2,299 (6.4)	647 (1.8)	46 (0.1)	883 (2.5)	1,316 (3.7)	83 (0.2)	2,763 (7.7)	5,703 (15.9)	1,093 (3.0)	450 (1.3)							
2016	1,194 (3.6)	891 (2.7)	1,923 (5.8)	522 (1.6)	33 (0.0)	1,063 (3.2)	1,012 (3.0)	855 (2.6)	2,650 (8.0)	5,547 (16.7)	1,106 (3.3)	313 (0.9)							

출처: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07년 12월 「소년법」 개정으로 기존의 7개 보호처분에서 10개 보호처분으로 다양화되었고 처분명도 변경되었다. 새롭게 2호처분(수강명령), 3호처분(사회봉사명령), 8호처분(1개월 이내 소년원송치)이 도입되었다. 새로운 처분의 도입과 함께 사회내 처우인 보호관찰이 병합처분으로 활성화되는 반면에, 중간처우인 6호처분과 7호처분의 활용도는 급격히 감소하였고, 9·10호처분의 비율도 증가하였다.

전체 소년사건 가운데 6호처분은 3-4% 정도에 불과하다. 이처럼 10가지 보호처분 유형 가운데 6호처분이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시설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

〈표 3-3〉 법원의 6호처분현황

(단위: 명,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보호처분 전체	30,222 (100)	3,5819 (100)	32,416 (100)	35,072 (100)	36,150 (100)	31,952 (100)	24,529 (100)	25,911 (100)	23,526 (100)
6호 전체	689 (1.7)	1059 (2.2)	283 (0.9)	1,077 (3.0)	1,234 (3.3)	1,185 (3.7)	882 (3.6)	931 (3.6)	1,101 (4.6)
6호	410 (1.0)	128 (0.3)	73 (0.2)	9 (0.0)	14 (0.0)	13 (0.0)	9 (0.0)	2 (0.0)	5 (0.0)
4+6호	137 (0.3)	192 (0.4)	104 (0.3)	146 (0.4)	56 (0.1)	22 (0.1)	39 (0.1)	46 (0.2)	33 (0.1)
5+6호	142 (0.4)	739 (1.5)	747 (1.6)	922 (2.6)	1,164 (3.2)	1,150 (3.6)	834 (3.5)	883 (3.4)	1,063 (4.5)

출처: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나. 아동보호치료시설 설치현황

6호 아동복지시설 위탁처분에서 의미하는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아동보호치료시설'을 말한다. 아동보호치료시설이란 ①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성이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이 이에 해당된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전국 아동보호치료시설은 11개이다. 지난 10년간 아동보호치료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시설수와 수용인원에 있어 큰 변화가 없다. 2006년 8개에 불과하던 아동보호치료시설이 10년 후 11개 시설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수용인원은 2006년 436명에서 2015년 447명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표 3-4〉 아동보호치료시설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시설수	8	8	10	11	11	10	11	11	10	11
입소자	388	382	474	532	646	724	759	760	767	714
퇴소자	409	414	401	486	665	764	717	772	772	748
연말 수용인원	436	404	477	514	495	455	497	486	481	447

출처: 보건복지부, 2016 보건복지통계연보, 2017, 319쪽.

전국 지역별로 아동보호치료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은 3개기관(살레시오청소년센터, 마자렐로센터, 돈보스코오라토리오), 대구 2개기관(늘사랑청소년센터, 성바오로 청소년의집), 대전 1개기관(효광원), 경기 1개기관(나사로 청소년의집), 충북 1개기관(로템청소년학교), 전북 1개기관(희망샘학교), 전남 1개기관(푸른동산), 경남 1개기관(동해청소년학교)이다. 서울과 대구는 최근 시설이 늘어난 반면에, 경기지역은 2개에서 1개로 줄어들었다. 부산지역은 시설내 집단적·반복적 성폭력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시설이 폐쇄되었다. 전국 권역별로 아동보호치료시설이 고루 분포되어서 접근성이 용이하게 되어야 하나,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8시도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부산, 인천, 강원, 제주 등의 지역에서는 아동보호치료시설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표 3-5〉 지역별 아동보호치료시설 설치현황(2012~2015)¹⁵⁾

(단위 : 개소, 명)

시·도	2012		2013		2014		2015	
	시설수	아동수	시설수	아동수	시설수	아동수	시설수	아동수
계	11	497	11	486	10	481	11	447
서울	2	130	2	130	3	158	3	143
부산	1	30	1	25	0	0	0	0
대구	1	34	1	37	1	32	2	38
대전	1	128	1	137	1	137	1	105
경기	2	58	2	43	1	33	1	39
충북	1	28	1	28	1	32	1	34
전북	1	58	1	51	1	57	1	63
전남	1	17	1	23	1	18	1	17
경남	1	14	1	12	1	14	1	8

다. 6호처분 전담시설 현황

아동보호치료시설 가운데 전국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으로부터 6호처분 전담시설로 지정된 기관은 서울 2개, 대구 1개, 대전 1개, 경기 1개, 충북 1개, 전북 1개 등 총 7개 기관으로 지역 편중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남녀 구분수용 현황으로 보면, 남자전문시설은 3개(효광원, 살레시오청소년센터, 로템청소년센터), 여자전용시설은 3개(마자렐로센터, 나사로 청소년의 집, 늘사랑청소년센터)로 나누어져 있어 성별에 따른 지역적 편중 현상이 더 심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7개 기관 가운데 전북고창의 희망샘학교만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6호처분 시설이 많지 않아서 제주, 부산 등의 지역에서는 6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관할 법원에서 결정 전 정원 수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입소가 어려운 경우 1호처분이나 9.10호처분을 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경기도 나사로의 집과 같이 지방예산에 의해 운영되다 보니 해당지역이 아닌 지역의 6호처분 대상소년에 대하여는 입소를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15) 남인순 의원실 보도자료, “아동보호치료시설 국가사무로 전환해야”, 2016.9.27.일자.

〈표 3-6〉 6호처분시설의 운영현황

(2017년 9월 기준)

시설명	성별	운영단체	위탁법원	정원	현원	6호
효광원 (대전)	남	천주교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의정부, 인천,수원,춘천,청주,전주	150	110	110
살레시오청소년센터 (서울)		천주교	서울,의정부,인천,수원,춘천	80	65	65
로템청소년학교 (충북 제천)		기독교	서울,인천,수원,춘천,청주	36	34	34
희망생학교 (전북 고창)	남,여	아모스	광주,전주,춘천	70	65	47
마자렐로센터 (서울)	여	천주교	서울,수원,인천,춘천,청주	50	53	53
나사로청소년의집 (경기 양주)		기독교	서울,의정부,인천,수원,춘천,청주	40	40	40
늘사랑청소년센터 (대구)		대한사회 복지회	대구	32	19	19

6호처분시설은 관할법원별로 아동복지시설이나 그밖의 소년보호시설 중에서 6호 처분 수탁기관을 지정하여 보호소년을 위탁할 수 있다. 2016년 현재 전국법원에서 6호처분 수탁기관으로 지정한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7〉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6호 수탁기관 현황

(2016. 7. 31 현재)

법원	수탁기관 명칭	수탁기관 지정년월	2011년 이후 해제
서울가정법원	나사로청소년의 집	1988. 7.	해뜨는 마을 (2013. 3. 해제) 청소년복지원 아들의 집 (2013. 9. 13. 해제) 은혜학교 (2015. 2. 11. 해제)
	로템청소년학교	1994. 9.	
	마자렐로센터	2005. 5.	
	보호치료시설 효광원	1984. 7.	
	살레시오근로청소년회관	1990. 3.	
의정부지방법원	보호치료시설효광원	2009. 5.	
	나사로청소년의집	2004. 3.	
	해뜨는마을	2004. 3.	
	청소년복지원 아들의 집	2004. 3.	
	살레시오 청소년센터	2012. 4.	
	은혜학교	2012. 4.	
	마자렐로센터	2013. 6.	
로템청소년학교	2014.11.		

법원	수탁기관 명칭	수탁기관 지정년월	2011년 이후 해제
인천지방법원	나사로 청소년의 집	1998. 4.	
	보호치료시설 효광원	2009. 7.	
	살레시오근로 청소년회관	2001. 4.	
	청소년복지원 아들의 집	1998. 4.	2015. 해제
	마자렐로센터	2011. 8.	
	로템청소년학교	2012. 6.	
수원지방법원	세상을 품은 아이들(유스캠퍼스)	2016. 1.	
	로템청소년학교	2009. 4.	청소년복지원 아들의 집 (2013. 9. 13. 해제)
	마자렐로센터	2008. 7.	
	살레시오 근로청소년회관	2001. 7.	
	청소년복지원 아들의 집	1998. 5.	
	효광원	1992. 5.	
나사로 청소년의 집	1992. 8.		
춘천지방법원	은혜학교	2013. 6.	
	나사로 청소년의 집	2010. 5.	
	로템청소년학교	2010. 6.	
	보호치료시설 효광원	2010. 5.	
	해뜨는 마을	2010. 10.	
	청소년복지원 아들의 집	2010. 8.	
대전가정법원	살레시오청소년회관	2010. 12.	
	마자렐로센터	2011. 7.	
	보호치료시설 효광원	1984. 7.	
	마자렐로센터	2012. 4.	
	로템청소년학교	2014. 7.	
청주지방법원	나사로청소년의집	2015. 11.	
	희망샘학교	2015. 12.	
	로템청소년학교	1997. 1.	
	보호치료시설효광원	2005. 4.	
	자모원	2009. 1.	
대구가정법원	마자렐로센터	2011. 4.	
	나사로의 집	2012. 4.	
	구미시청소년쉼터	2010. 3.	경북 청소년쉼터, 경북 피해여성 지원시설누리봄, 등불의 집, 경북 청소년남자쉼터 (2011. 12. 해제) 재단법인 대구청소년
	사회복지법인 효광원	2010. 8.	
	대구청소년자립생활관	2008. 7.	
동글레 청소년지원시설	2012. 3.		
늘사랑 청소년 센터	2015. 9.		

법원	수탁기관 명칭	수탁기관 지정년월	2011년 이후 해제
			종합지원센터, 가톨릭푸름터, 성바오로 청소년집 (2013. 6. 11. 해제)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수지의 집(2015. 7. 해제)
부산가정법원	보호치료시설 효광원	2011. 6.	동해청소년학교 (2011. 3. 11. 해제)
	구세군 셸리홈	2008. 6.	
	웨슬리마을 신나는 디딤터	2008. 5.	
울산지방법원	보호치료시설 효광원	2014.10	
	구세군 셸리홈	2014.10	
창원지방법원	로템청소년학교	2010. 5.	동해청소년학교 (2011. 3. 9. 해제)
광주가정법원	사회복지법인 보호치료시설 효광원	2008. 5.	사회복지법인 영산원 푸른동산 (2014. 1. 1. 해제)
	희망샘학교	2011. 7.	
전주지방법원	보호치료시설 효광원	1990. 1.	
	희망샘학교	1990. 1.	
제주지방법원	성지청소년쉼터	2012. 11.	
	제주청소년쉼터	2012. 11.	

출처: 남인순의원실, 2016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자료.

해당지역 관할법원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그밖의 소년보호시설 가운데 6호처분시설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로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양육시설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 훈련, 자립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아동일시보호시설이란 보호대상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 양육대책 수립 및 보호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아동보호치료시설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소년부 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자,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이다.

6호처분 위탁기준에 따르면 2016년 현재 15개 기관이 6호처분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6호처분 시설은 대부분 아동보호치료시설로 분류되고, 2016년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복지시설로 지정된 2개 기관도 있으나 실제 2016년에 수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표 3-8〉 6호처분시설의 운영현황¹⁶⁾

(2017년 9월 기준)

시설		수탁지정 시설	실제수탁 시설	실제수탁 인원	근거법률	설치관리기관
아동복지 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7	7	312	아동 복지법	보건 복지부
	아동양육시설	1	0	-		
	공동생활가정	1	0	-		
청소년복지시설		2	0	-	청소년복지지원법	여성 가족부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2	2	6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청소년자립생활관		1	1	5	보호소년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미인가시설		1	1	5		
합계		15	11	328		

2. 6호처분시설 종사자 배치현황

6호처분시설 종사자에 대한 배치기준은 「아동복지법」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의 장, 사무국장, 보육사, 생활복지사 또는 상담지도원, 직업훈련교사, 임상심리상담원, 자립지원전담요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12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한다.

16) 김지선, “중간처우시설(6호처분 시설)의 문제점 및 입법과제”, 소년 중간처우시설 운영, 이대로 좋은가?, 국회의원 정성호 정책토론회, 2016, 6쪽.

〈표 3-9〉 「아동복지법」 시행령상 아동보호치료시설 종사자 기준

시설별	직종별 아동 복지 시설의 장	사무 국장	의사 (또는 축탁 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 무사	사 무 원	영 양 사	보육사	생활 복지사	직업 훈련 교사	상담 지도원	임상 심리 상담원	조리원	위생원	안전 관리원	자립 지원 전담 요원
아동 보호 치료 시설	아동 30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1명	0-2세까지:아동 2명당 1명 3-6세까지:아동 5명당 1명 7세 이상:아동 7명당 1명	1명	필요 인원		1명	1명 (30명 초과 시 1명 추가)		2명 (아동 40명 이상 4명)	1명
	아동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0-2세까지:아동 2명당 1명 3-6세까지:아동 5명당 1명 7세 이상:아동 7명당 1명				1명	1명			1명
	아동 10명 미만	1명					0-2세까지:아동 2명당 1명 3-6세까지:아동 5명당 1명 7세 이상:아동 7명당 1명				1명				

아동보호치료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르면, 현재 7개의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아동 30인 이상 기준에 따라 시설장 1인, 사무국장 1인, 의사1인, 간호사 1인, 사무원 1인, 사회복지사 1인, 임상심리상담원 1인, 조리원 1인, 보육사는 아동 7명당 1인, 안전관리원 2인(40명 이상인 경우 4명), 자립지원전담요원 1인을 배치해야 한다. 종사자 배치현황을 보면, 대체로 종사자 배치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동 30인 이상 시설에서는 반드시 의사 1인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시설에 의사가 배치된 곳은 1곳도 없다. 또한 7세 이상 아동은 7명당 보육사 1인씩 두도록 하고 있으나 살레시오와 로렘만 그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표 3-10〉 6호처분시설의 종사자 배치현황

(2017년 10월 기준)

구분	효광원	살레시오	로렘	희망샘	마자헬로	나사로	늘사랑
시설장	1	1	1	1	1	1	1
사무국장	1	1	1	1	1	1	1
의사	-	-	-	-	-	-	-
간호사	1	1	1	1	-	1	1
사무원		1	1	-	1	2	1
영양사	1	1	1	1	1	1	1
보육사	-	12	8	-	-	-	2
생활복지사	1	1	1	1	1	-	1
직업훈련교사	4	3	-	3	-	1	-
임상심리상담원	1	1	1	1	1	1	1
조리원	4	3	2	2	3	1	1
위생원		1	-	1	-	-	-

구분	효광원	살레시오	로템	희망샘	마자렐로	나사로	늘사랑
안전관리원	4	4	2	4	6	2	2
자립지원전담요원	1	1	2	1	1	1	1
관리인	-	1	-	-	3	-	-
생활지도원	16	-	-	8	6	10	-
종사자 합계	35	32	21	25	25	22	13
위탁소년 정원	150	80	36	70	50	40	32

위탁소년 정원수에 따라 종사자 배치는 위탁소년 정원 수에 따라 차등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효광원의 경우 위탁소년 정원이 150명에 달하고 있으나, 종사자는 35명에 불과하여 인력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3. 6호처분 시설 기준

6호처분시설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보호치료시설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아동 30명 이상 시설에 대한 기준으로 거실, (아동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 침실 1개 정원 6명 이하로 하고 있고, 7세 이상 아동 수용시 남녀구분 설치가 전제되어 있다. 그밖에 상담실, 양호실,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화장실, 급수·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아동보호치료시설에는 특별하게 16.5제곱미터 이상의 심리검사, 치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전국 6호처분시설의 경우 침실 1개당 정원 6명 이하와 아동 한명당 6.6제곱미터 기준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전반적으로 상담실을 비롯하여 관련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었으나, 심리검사·치료시설은 16.5제곱미터 이상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없는 곳도 있거나 상담실을 함께 활용하는 것으로 보였다.

〈표 3-11〉 6호처분 시설 현황

(2017년 10월 기준)

구분	효광원	살레시오	로템	희망샘	마자렐로	나사로	늘사랑
대지면적	7,113	?	2,912	4,883	20,461	2,502	1,678
건축면적	4,818	?	1,403	3,086	2,456	563	1,447
종사자 합계	35	32	21	25	25	22	13
위탁소년 정원	150	80	36	70	50	40	32

4. 6호처분 시설의 예산 현황

6호처분 시설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을 100% 받고 있다. 예산은 수용정원과 종사자수에 따라 편차가 있으나 살레시오의 경우 309,3010만원으로 예산규모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희망샘학교가 예산이 많다. 세입의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보조금과 후원금, 법원에서 위탁아동 1인당 30만원씩 받게 되는 비용이 전부이다.

〈표 3-12〉 6호처분 시설 예산현황

(단위: 만원, 2016년 기준)

구분	효광원	살레시오	로템	희망샘	마자렐로	나사로	늘사랑
예산	3,047	309,310	133,710	182,114	157,252	?	79,769
종사자 합계	35	32	21	25	25	22	13
위탁소년 정원	150	80	36	70	50	40	32

제2절 6호처분 교육프로그램 현황

6호처분 시설에서의 교육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대체로 교과교육프로그램, 치료프로그램, 선도프로그램, 보호프로그램 등으로 구분된다. 효광원은 치료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적이고, 살레시오는 열매 프로그램과 또래모임을 통해 선도프로그램이 진행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희망샘학교는 다양한 진로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퇴소준비 프로그램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마자렐로는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여자시설답게 발레, 네일아트 등 동아리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나사로 청소년의 집은 상담·치료프로그램으로 이끄미지원을 하고 있고, 자립지원을 위해 숲치유프로그램, 직업훈련으로 애견미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늘사랑청소년센터는 특별하게 뇌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정서치유를 하고 있었고, 원가족 회복지원과 퇴소 후 사례관리를 한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표 3-13〉 6호처분 시설 교육프로그램 현황

(2017년 10월 기준)

구분	교육프로그램
효광원	치료프로그램(성교육, 미디어, 심리정서지원, 이혈침, 가족치료) 선도프로그램(언어순화교육, 예절교육, 위생교육 등) 보호프로그램(두드림, 검정고시 등) 교육프로그램(치료공동체, 교통안전교육, 실종유괴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
살레시오	치료(목공예, 도예, 미술치료, 분노조절프로그램) 선도프로그램(열매프로그램, 모닝미팅, 예절교육, 모듬활동, 생일자파티, 토래모임) 교육프로그램(검정고시 주간학교/야간학교)
로템	치료프로그램(바이올린, 가족힐링캠프, 원예치료, 심리정서지원사업) 선도프로그램(교사-아동멘토링, 보호자특별교육, 비폭력서약, OK로템 시상) 보호프로그램(아동미용, 아동안전교육, 아동건강관리, 소방안전, 위생교육 등) 교육프로그램(검정고시, 직업상담, 꿈키움제방, 농사교육, 컴퓨터, 축구)
희망샘	교과학습프로그램 진로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제과제빵, 네일아트, 바리스타 등) 생활지도프로그램(생활예절, 식사예절, 위생교육, 건강관리 등) 적응훈련프로그램(초기적응, 개별아동, 퇴소준비 프로그램) 심리치료프로그램(심리상담, 심리검사, 외부전문기관 연계, 안전교육프로그램(교통안전교육, 유괴예방, 약물오남용 교육 등)
마자벨로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동아리활동(발레, 네일아트, 기타 등) 직업훈련(바리스타, 컴퓨터) 퇴소생을 위한 프로그램 가족캠프 자아성장프로그램(법과질서, 효과적인대화법, 학교폭력예방, 진로교육, 인터넷중독)
나사로	건강발달프로그램(건강검진, 헬스케어)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이끄미지원, 미술치료교실, 인지행동치료, 보호자특별교육 등) 정서프로그램(영화상영, 자원봉사, 공연관람, 텃밭가꾸기) 특기적성계발 프로그램(댄스, POP, 밴드, 냅킨아트, 캘리그래피) 인지발달프로그램(스마일교실, 검정고시반, 다큐, 독서) 자기보호능력계발프로그램(약물오남용예방교육, 소방 및 재난대비교육, 구강교육 등) 사회성발달프로그램(여행, 아동자치회, 달란트 시장, 토래상담 프로그램) 자립지원프로그램(일상생활기술, 사회적기술, 경제교육, 진로 및 취업, 숲치유캠프) 직업훈련(애견미용, 제과제빵, 한식조리사 등)
늘사랑	교육지원프로그램(학교복귀, 검정고시, 특별교육, 교양문화) 자립지원프로그램(자립지원표준화 프로그램) 심리·정서치유(개별상담, 집단상담, 뇌훈련프로그램) 원가족 회복지원사업(연고자 상담, 보호자 특별교육) 퇴소후 지원사업(사례관리)

제3절 6호처분시설 관리감독 현황

6호처분시설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자이긴 하나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이나 그밖에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되기 때문에 법원에 관리감독권한이 없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보호치료시설은 보건복지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아동보호치료시설에 대한 설치기준과 종사자배치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 시설 및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감독하고 있지는 않다. 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소년보호시설의 경우에도 권역별로 법원소년부에서 위탁을 지정하는 하나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 위탁을 받아 수용하고 있음에도 법원은 법적으로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할 근거가 없다.

제4절 6호처분시설의 사후관리 현황

6호처분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고, 사후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퇴소한 청소년에 대한 사후관리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부분의 6호처분 시설에서는 담당교사가 정기적으로 전화를 한다든지, 문자, SNS를 통해 소식을 접하는 것으로 사후관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희망샘학교의 경우에는 홈커밍데이 등의 행사를 통해 퇴소 청소년을 시설로 오게 함으로써 아이들의 자립상황을 점검하고 있어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제5절 6호처분 관련법률 현황

법원에서 6호처분을 위탁지정하는 근거에 대하여는 「소년법」상 제32조의 보호처분에 관련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감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이란 「아동복지법」상 다양한 아동복지시설 가운데 아동보호치료시설로 분류되어 그에 관한 시설기준들의 적용을 받고 있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나.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구·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 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9.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10.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입법형태로 보면 6호처분의 지정 위탁에 관한 사항은 「소년법」에 있어서 법원이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아동복지시설 기준에 따라 시설기준이 마련

되어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 법원은 사법적 처분기관이기 때문에 시설에 관한 관리감독권한이 없고, 보건복지부는 시설 인가에 관한 사항만 규율하고 있을 뿐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은 법적근거가 없어 실제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6호처분시설 관리감독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2016년에 법무부에서 비행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관리감독방안의 일환으로 「소년법」 개정을 통해 6호처분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갖도록 하는 입법발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정성호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제3415호).

제42조의2(소년중간처우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제32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처분을 받은 소년의 감호를 위탁하기 위하여 소년중간처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 이외의 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소년중간처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소년중간처우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소년중간처우시설의 설치 및 세부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3(소년중간처우시설의 종류) 소년중간처우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대안보호가정: 소년을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보호하며 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방형 시설
 2. 소년보호지원시설: 소년을 입소시켜 보호와 선도를 통해 비행을 교정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호처분시설 관리감독에 관한 입법적 논의는 제6장에서 보다 상세하게 다루기로 한다.

제6절 현행 소년범 대상 중간처우제도의 문제점

1. 시설 운영상 문제점

가. 지역적 편중현상 심화

6호처분시설은 전국에 7개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시설 가운데 마자렐로센터, 살레시오센터, 늘사랑센터를 제외하고는 도심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어 지역사회와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뿐더러, 서울지역 2곳(마자렐로센터, 살레시오청소년센터)

을 제외하고는 경기도 양주(나사로 청소년의 집), 충북 제천(로템청소년학교), 전북 고창(희망샘학교), 대구(늘사랑센터), 대전(효광원) 등은 전국 지역규모 단위별로 설치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남자시설과 여자시설이 분리되어 있음을 감안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남자시설은 서울, 대전, 충북지역에만 있는 반면에, 여자시설은 서울, 경기, 대구에만 집중되어 있다. 부산, 울산, 경남, 인천, 광주, 전남, 인천, 수원, 강원 등의 지역에서는 원거리를 이유로 위탁 자체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6개의 가정법원(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과 8개의 지방법원(의정부, 수원, 춘천, 울산, 창원, 전주, 제주)에는 14개의 소년부가 있다. 전국 14개에서 위탁되는 소년의 수요를 감당하기에 현재 7개의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중간처우가 필요한 소년이 있다 할지라도 6호처분시설이 전국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소년을 소년부에 송치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드러내게 되고, 이는 소년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처우를 하겠다는 소년보호처분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나. 예산상의 어려움

현재 6호처분시설들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보호치료시설'로 분류되어 종사자 기준과 시설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 예산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지원이 2005년부터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이후 지자체 예산으로 결정됨에 따라 전국에 흩어져 있는 6호처분시설들은 각 지역의 사정에 따라 달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비행청소년 관련시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시설에 대한 지원을 삭감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경기 양주의 나사로 청소년의 집에서와 같이 해당지역 청소년이 아닌 대상소년에 대한 지원을 할 법적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에 언제든 예산지원이 동결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법원에서 위탁시 위탁소년 1인당 30만원씩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 지원도 법원행정처의 정기적 예산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라 임시예산편성에 의해 지원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언제 삭감되거나 끊기게 될지 모르는 사정 하에 있다.

다. 대규모 형태로 인한 폐쇄적 시설운영

6호처분 시설은 현재 19명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에서부터 150명이 수용되는 시설까지 다양한 시설규모를 갖고 있다. 원래 중간처우는 소규모 그룹홈의 형태에서 기원한 것인데 6호처분시설의 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기존 시설에 위탁소년이 대거 물리게 되어 가정의 보호력을 대신할 수 있는 시설의 필요성이 있는 6호처분이 대형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시설규모는 대형화되어가고 있으나 6호처분 시설의 종사자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은 종사자로 많은 수요의 비행청소년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위탁소년이 많아진 시설에서는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시설을 폐쇄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고 이는 중간처우 시설의 성격과는 멀어져 시설내 처우에 가까워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라. 운영기준안 부재

6호처분이 중간처우 성격에 부합하는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시설 운영에 대한 기본 방침과 프로그램 등의 기준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6호처분시설은 대부분 민간 또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다 보니, 운영방식이 단체의 성격과 기준에 따라 제각각 운영되고 있다. 최근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침이 마련되면서 시설기준과 종사자 자격기준 등이 상세화되긴 하였으나, 20-30년 넘게 운영되어온 6호처분시설의 관행을 벗어버리고 체계적인 운영기준안을 두고 운영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다. 6호처분 7개 기관 모두 자체 운영기준안이 마련되어 있긴 하나, 시설운영에 있어서 자체기준에 따르기 보다는 사례접근의 노하우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어 6호처분시설의 체계적이고 통일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2. 비행청소년 전문교육 프로그램의 부재

현재 6호처분시설에서는 직업교육, 교과교육, 상담치료 인성교육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교육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대부분 일반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대부분이고 비행청소년의 상황에 적합한 전문비행예방교육프로

그램이나 비행성감소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직업교육의 경우에도 수용기간이 6개월에서 최장 1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수행하기 어렵고, 교육 이후 직업을 찾게 되기는 더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교과교육의 경우 대부분 학업중단 상태에 있는 위탁소년이 많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교과과정을 관리해주고 학업 및 성적관리를 해줄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6호처분시설에서는 가동인력의 부족 등을 이유로 위탁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교과교육이 불가능하고 대부분 자원봉사자의 조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담치료 프로그램의 경우 사회복지사 및 임상심리상담원이 상주하도록 하고 있어 다른 교육프로그램에 비해 보다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는 있으나, 한 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위탁소년수가 많기 때문에 소년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상담치료가 어려운 실정이다.

3. 관리감독주체의 불명확으로 인한 문제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법원에서 6호처분 시설에 대한 위탁지정을 하고는 있으나, 법원은 사법적 처분기관이기 때문에 실제 행정업무에 관여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갖고 있다. 또한 6호처분시설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보호치료시설로 분류되어 그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관리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측되나,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시설 인가에 관한 권한만 가지고 있고 관리감독에 대하여는 법적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많은 아동복지시설 중 비행청소년을 위한 시설은 매우 적은 일부분의 사업규모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내 관심부족 등을 이유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관리감독 주체가 없다보니, 아동복지시설 예산이 지방재정사무로 전환됨으로 인해 6호처분시설이 겪게 되는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도 사실이다.

4. 사후관리 부족으로 인한 중간처우 기능 약화

중간처우는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의 중간적 지위에 있으면서 사회내로의 진입이 원활하게 하는 것을 그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런데 현재 6호처분시설은 중간처우시

설임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사회로의 진입 지원에 문제를 갖고 있다.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6호처분시설에서의 사후관리는 전화나 문자 등을 이용한 확인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연락이 끊기거나 하는 상황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다. 시설 내에서 직업교육, 교과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사회 내에서 지속적 사후관리를 통해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단편적 교육이 될 수밖에 없고 다시 비행에 노출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5. 근거법령의 불명확

6호처분시설은 관련기관이 많다.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 시설 위탁지정에 대하여는 법원, 비행청소년에 대한 연계는 법무부, 지역사회내 자원 활용에 있어서 여성가족부, 위탁청소년 교육지원에 있어서는 교육부, 직업교육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예산지원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부처와 적용법률이 혼재되어 있어 어떠한 법률에 의해 일관되게 관리감독이 될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6호처분 관련규정도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 유형으로 되어 있으나,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 기준에 따르고 있고, 직업·교과 교육 등과 관련해서는 해당 법률의 규정 적용을 받게 되므로 시설운영에 있어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

6. 대상자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중간처우로서 6호처분은 가정의 보호력을 대신하면서 사회적응력을 길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6호처분 시설의 대상소년은 가정의 보호력을 대신할 필요가 있거나 비행력은 심화되지 않으면서 개선의 여지가 큰 대상을 중심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6호처분은 가정을 보호력을 대신하거나 퇴소 이후 지속적인 가정의 보호력을 기대할 수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가정의 보호력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대상에게 6개월에서 1년의 처우를 하게 되면 그 이후를 보호력을 장담할 수 없다.

또한 6호처분은 비행력이 심화되지 않았으나 가정의 보호력에 문제가 있어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 그 전제로 되어야 하나, 실제로 6호처분 시설에 있는 아동의 경우 비행력이 상당 수준에 이른 위탁소년도 수용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폭력성 향이나 정신질환이 심화된 소년의 경우 집단시설 수용에 어려움이 있으나 이들 청소년도 수용되고 있어 6호처분이 제대로된 기능을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소년범 중간처우시설 관계자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결과분석

이승현·박선영

제4장

소년범 중간처우시설 관계자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결과분석

제1절 위탁소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분석

6호처분 시설에 위탁되어 있는 대상소년의 시설에 대한 만족도 및 인식 등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국/내외 선행연구를 토대로 설문문항을 개발하였으며, 학계와 실무계에서 설문문항들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였다. 2017년 8월부터 9월까지 현재 우리나라에서 6호처분시설로 지정된 7개 기관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위탁소년 설문은 응답자 특성(5개 문항), 6호 처분 시설 경험 및 실태(10개 문항), 시설 생활경험 및 시설만족도(3개 문항), 6호처분 프로그램 만족도(10개 문항), 시설경험과 인식변화(15개 문항), 시설에 대한 이미지(4개 문항) 등 총 4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7개 시설에서 총 337명의 위탁소년이 참여하였으며, 각 항목에 대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응답자 특성

조사에 참여한 소년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가 62.9%(210명), 여자 37.1%(124명)로 남자시설이 더 많은 만큼 남자소년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15-17세가 가장 많은 68.5%(230명), 18-21세는 17.6%(59명), 12-14세 14%(47명)로 15-17세가 과반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설 입소기간을 살펴보면 6개월 이하가 45.4%(149명)로 가장 많았고, 3개월 이하 39.3%(129명), 9개월 이하 6.1%(20명), 12개월 이하 6.1%(20명), 12개월 초과 3.1%(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 6개월 이하의 경우가 총 84.7%인 것으로 나타나 입소기간을 연장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소년법」에 따르면 6개월에 한하여 1회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2개월까지 위탁할 수 있지만 직업훈련 등의 이유로 추가적으로 12개월이 초과 되는 경우도 10건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입소 소년현황은 효광원(남) 27.6%(93명), 마자렐로(여) 15.4%(52명), 살레시오(남) 14.8%(50명), 희망샘학교(남/여) 13.9%(47명), 나사로의 집(여) 11.9%(40명), 로템청소년학교(남) 10.7%(36명), 늘사랑(여) 5.6%(19명)으로 효광원의 입소 소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소 전 거주지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35%(116명)로 가장 많고, 서울 30.5%(101명), 전라남도 8.8%(29명), 충청남도 6.9%(23명), 전라북도 5.7%(19명), 경상북도 4.8%(16명), 충청북도 3.3%(11명), 강원도 2.7%(9명), 경상남도 2.1%(7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수에 따라 서울 및 경기도 출신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4-1〉 응답자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전체		337	100.0
성별	남자	210	62.9
	여자	124	37.1
연령	12-14세	47	14.0
	15-17세	230	68.5
	18-21세	59	17.6
입소기간	3개월 이하	129	39.3
	6개월 이하	149	45.4
	9개월 이하	20	6.1
	12개월 이하	20	6.1
	12개월 초과	10	3.1
입소 시설명	살레시오	50	14.8
	마자렐로	52	15.4
	효광원	93	27.6
	나사로의 집	40	11.9
	로템청소년학교	36	10.7
	희망샘	47	13.9
	늘사랑	19	5.6

구분		빈도	비율(%)
입소 전 거주지	서울	101	30.5
	경기도	116	35.0
	강원도	9	2.7
	충청북도	11	3.3
	충청남도	23	6.9
	전라북도	19	5.7
	전라남도	29	8.8
	경상북도	16	4.8
	경상남도	7	2.1

2. 과거 비행력 및 처분 경험

6호 처분 시설 거주 경험 유무를 살펴보면 경험이 있는 경우가 54.0%(182명), 없는 경우가 46%(155명)으로 비슷한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었다(〈표 4-2〉). 입소하게 된 범죄 유형은 재산범죄가 34.7%(147명)로 가장 많았고, 폭력범죄 22.9%(97명), 교통범죄 10.6%(445명), 성범죄 3.5%(15명), 금융범죄 2.4%(10명)순으로 나타났다(〈표 4-3〉).

소년원 처분의 경험에 대해서는 처분 경험이 없는 경우가 89.2%(298명)으로 월등히 많았고, 있는 경우는 10.8%(3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원 처분을 받은 대상자 중 1회 받은 경우는 80.6%(29명), 2회 받은 경우 19.4%(7명)로 1회 받았던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표 4-4〉). 6호시설에 위탁되고 있는 대상자는 소년원 처분을 받았던 경험이 없는 상대적으로 경비행소년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년원 처분 경험이 있는 대상자도 10명 중 1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그 중 20%정도는 소년원 처분을 두 번 받았던 대상자들임을 감안할 때 이들 대상자에 대한 경비행자들과는 다른 접근방식의 필요성도 고려해볼만 하다.

〈표 4-2〉 6호처분 시설 거주 경험 여부

구분	빈도	비율(%)
있다	182	54.0
없다	155	46.0
전체	337	100.0

〈표 4-3〉 범죄명(중복응답)

구분	빈도	비율(%)
재산범죄(절도, 사기, 공갈)	147	34.7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15	3.5
폭력범죄(폭행, 상해)	97	22.9
금융범죄	10	2.4
교통범죄	45	10.6
기타	110	25.9
전체	424	100.0

〈표 4-4〉 소년원 처분 경험

구분		빈도	비율(%)
처분 경험 여부	있다	36	10.8
	없다	298	89.2
	전체	334	100.0
처분 횟수	1회	29	80.6
	2회	7	19.4
	전체	36	100.0

보호관찰 처분 경험여부를 살펴보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68.5%(230명), 없는 경우는 31.5%(106명)로 나타나 보호관찰을 받았던 대상자가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 받은 대상자 중 처분 횟수는 무응답 11.7%를 제외하고 1회가 37%(85명)로 가장 많았고, 2회가 23.5%(54명), 3회 16.5%(38명), 4회 6.5%(15명), 5회 이상 4.8%(11명)로 나타났다. 보호관찰 처분이 변경된 경우는 63.5%(169명), 없는 경우 36.5%(97명)로 처분이 변경된 경우가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5〉).

〈표 4-5〉 보호관찰 처분 경험

구분		빈도	비율(%)
처분 경험 여부	있다	230	68.5
	없다	106	31.5
	전체	336	100.0
처분 횟수	1회	85	37.0
	2회	54	23.5
	3회	38	16.5
	4회	15	6.5
	5회 이상	11	4.8
	무응답	27	11.7
	전체	230	100.0
처분 변경	있다	169	63.5
	없다	97	36.5
	전체	266	100.0

학교 교육현황을 살펴보면 세 가지 학교 교육 단계 중 고등학교 자퇴가 20.2%(68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중학교 1학년 휴학 및 고등학교 3학년 휴학은 동일하게 0.6%(2명)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초등학교 졸업 4.2%(14명), 중학교 휴학 3.4%(11명), 중학교 유예 10.1%(34명), 중학교 졸업 16.1%(54명)로 나타났고 고등학교의 경우 고등학교 휴학 5.4%(18명), 고등학교 자퇴 20.2%(68명),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졸업이 9.5%(32명)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비중은 각 29.6%와 35.1%로 고등학생의 비중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 휴학의 경우와 고등학교 휴학의 경우는 각각 3.4%, 5.4%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중학교 유예와 고등학교 자퇴를 비교해보면 각각 10.1%, 20.2%로 나타나 고등학교 자퇴자가 중학교 자퇴자 보다 두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비중이 큰 차이가 없었음을 고려할 때 중학교 보다 고등학교 자퇴자가 많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6〉 학교 교육 현황

구분		빈도	비율(%)
초등학교 졸업		14	4.2
중학교 휴학	1학년 휴학	2	.6
	2학년 휴학	3	.9
	3학년 휴학	6	1.8
	전체	11	3.4
중학교 유예	1학년 유예	5	1.5
	2학년 유예	14	4.2
	3학년 유예	15	4.5
	전체	34	10.1
중학교 졸업		54	16.1
고등 학교 휴학	1학년 휴학	12	3.6
	2학년 휴학	4	1.2
	3학년 휴학	2	.6
	전체	18	5.4
고등 학교 자퇴	1학년 자퇴	52	15.5
	2학년 자퇴	11	3.3
	3학년 자퇴	5	1.5
	전체	68	20.2
고등학교 졸업		32	9.5
기타		105	31.3
전체		336	100.0

입소 전 가족상황에 대해서는 친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39.4%(132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부 또는 모의 한부모 가정인 경우가 25.4%(85명), 조부모 4.8%(16명), 양부모 1.2%(4명)로 나타나 70.8%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 거주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보호력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친구 12.2%(41명), 형제자매 1.8%(6명)로 나타나 14%정도가 부모의 보호력이 없는 상황에서 놓여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입소 전 가족

구분	빈도	비율(%)
친부모	132	39.4
부 또는 모	85	25.4
조부모	16	4.8
양부모	4	1.2
형제자매	6	1.8
친구	41	12.2
아동복지시설	23	6.9
기타	28	8.4
전체	335	100.0

부모님과과의 관계에 대한 항목을 〈표4-8〉과 같이 다섯가지로 제시하고 각 항목에 대한 답변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다섯 가지 항목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나는 부모님(보호자)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4.43)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나는 부모님(보호자)과 관계가 좋다'(4.02), '나는 부모님(보호자)과 자주 대화한다'(3.73)로 나타나 부모님 또는 보호자와 관계가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부모와 거주하는 대상자가 과반수가 훨씬 넘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모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

〈표 4-8〉 부모와의 관계성

(단위: 명, %)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나는 부모님(보호자)과 자주 대화한다.	15 (4.5)	35 (10.4)	78 (23.3)	104 (31.0)	103 (30.7)	3.73	1.14
나는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학대를 당한 적이 있다.	198 (59.1)	55 (16.4)	47 (14.0)	22 (6.6)	13 (3.9)	1.80	1.14
나는 부모님(보호자)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	5 (1.5)	11 (3.3)	29 (8.7)	80 (23.9)	210 (62.7)	4.43	.89
나는 부모님(보호자)과 관계가 좋다.	11 (3.3)	22 (6.6)	64 (19.2)	90 (26.9)	147 (44.0)	4.02	1.09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관심이 없다.	155 (46.3)	102 (30.4)	50 (14.9)	19 (5.7)	9 (2.7)	1.88	1.03

입소 전 친구 관계에 대한 7가지 항목을 <표 4-9>와 같이 제시하고 각 항목에 대한 답변을 5점 척도로 제시하였다. 그 중 '나는 고민이 있을 때 같이 의논하는 친구가 있다'가 4.17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나는 친구가 많다'는 3.90, '나는 친구들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 한다'는 3.66점으로 나타나 친구와 친구관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상자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나는 내 주변에 비행으로 조사 또는 처분을 받은 친구들이 있다'의 경우도 3.35점으로 나타나 대상자들의 비행 성향이 있는 친구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4-9> 입소 전 친구

(단위: 명, %)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나는 친구가 많다	5 (1.5)	14 (4.2)	94 (28.0)	120 (35.7)	103 (30.7)	3.90	.94
나는 친구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252 (75.0)	37 (11.0)	27 (8.0)	10 (3.0)	10 (3.0)	1.48	.97
나는 고민이 있을 때 같이 의논하는 친구가 있다.	6 (1.8)	8 (2.4)	59 (17.7)	112 (33.5)	149 (44.6)	4.17	.92
나는 친구들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 한다.	17 (5.1)	35 (10.4)	84 (25.1)	109 (32.5)	90 (26.9)	3.66	1.13
나는 여기 있는 아이들과 범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	144 (43.0)	94 (28.1)	63 (18.8)	25 (7.5)	9 (2.7)	1.99	1.08
나는 여기 있는 아이들과 싸운 적이 있다.	104 (31.1)	62 (18.6)	86 (25.7)	61 (18.3)	21 (6.3)	2.50	1.27
나는 내 주변에 비행으로 조사 또는 처분을 받은 친구들이 있다.	36 (10.7)	36 (10.7)	107 (31.9)	87 (26.0)	69 (20.6)	3.35	1.23

3. 시설 생활경험 및 만족도

시설에 대한 만족도에 대하여 <표 4-10>과 같이 9개 항목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만족도를 '매우 불만이다', '대체로 불만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의 다섯가지 5점 척도로 제시하였다. 9가지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3.59점에서 4.15점의 분포로 나타나 대상자들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던 부분은 제공되는 식사로 4.15점이었으며, 상담실

4.08점, 작업실 3.96점, 생활실(숙소) 3.95점으로 나타났고 화장실에 대한 만족도가 3.59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시설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항목	매우 불만 이다	대체로 불만이다	보통 이다	대체로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평균	표준 편차
전반적인 만족도	14 (4.2)	22 (6.6)	76 (23.0)	99 (29.9)	120 (36.3)	3.87	1.11
생활실(숙소)	9 (2.7)	19 (5.6)	75 (22.3)	110 (32.6)	124 (36.8)	3.95	1.03
화장실	17 (5.1)	52 (15.5)	83 (24.7)	85 (25.3)	99 (29.5)	3.59	1.20
사위실	17 (5.1)	36 (10.7)	96 (28.6)	80 (23.8)	107 (31.8)	3.67	1.18
교실	7 (2.1)	10 (3.0)	109 (32.5)	98 (29.3)	111 (33.1)	3.88	.98
상담실	6 (1.8)	4 (1.2)	81 (24.1)	110 (32.7)	135 (40.2)	4.08	.92
작업실	8 (2.4)	8 (2.4)	101 (30.1)	91 (27.2)	127 (37.9)	3.96	1.00
운동장 등 부대시설	16 (4.8)	25 (7.4)	96 (28.6)	85 (25.3)	114 (33.9)	3.76	1.14
제공되는 식사	6 (1.8)	14 (4.2)	59 (17.6)	100 (29.8)	157 (46.7)	4.15	.97

시설 중 가장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관식으로 질문하였고 그에 대한 내용을 8가지로 범주화하여 〈표 4-11〉에 정리하였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던 시설 중 운동장이 24.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다음 화장실이 20.1%로 〈표 4-10〉에서의 화장실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던 것과 일치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외에도 사위실 14.1%, 생활관 12.8%로 나타났으며 징계나 면회, 그리고 외박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응답자도 동일하게 3.4%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시설 중 가장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

구분	빈도	비율(%)
생활관	19	12.8
샤워실	21	14.1
화장실	30	20.1
운동장	36	24.2
재밌고 다양한 프로그램 필요	12	8.1
징계, 면회	5	3.4
외박필요	5	3.4
기타	21	14.1
전체	149	100.0

시설에서의 하루일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위하여 평일과 주말로 항목을 구분하여 매우 불만이다, 대체로 불만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의 다섯 가지 척도로 제시하였다. 주말일과에 대한 만족도는 3.96점, 평일 일과에 대한 만족도는 3.70점으로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루일과에 대하여 불만족에 응답한 대상자 중 불만족 사유를 평일과 주말로 구분하여 주관식 응답으로 제시하였다. 평일 일과의 불만족 사유에 대해서는 〈표 4-13〉과 같이 5 가지로 범주화하였는데 ‘지루하고 할 일이 없음’이 43.9%로 과반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프로그램이 너무 많음’ 19.5%, ‘프로그램 부족’ 12.2%로 나타났다. 이는 각 시설마다의 운영방식이 반영된 결과인데 프로그램이 너무 많거나 반대로 너무 적어 지루하게 느낄 경우 만족도가 낮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상자들에게 의미 있고 흥미 있는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주말일과에 대한 불만족 사유에 대해서도 주관식으로 질문 한 결과 〈표 4-14〉와 같이 4가지 정도의 사유가 제시되었다. 4개 사유 중 ‘지루하다’가 43.3%로 과반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쉬는 시간이 없다’, ‘전반적으로 불만’의 경우는 동일하게 각 20%, ‘징계자는 방에만 있어야한다’는 10%가 불만족 사유로 제시하였다. 평일 일과와 같이 지루한 느낌이 불만족 사유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평일과 주말의 적정 수준의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표 4-12〉 시설에서의 하루일과 만족도

(단위: 명, %)

항목	매우 불만 이다	대체로 불 만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만 족한다	매우 만족 한다	평균	표준 편차
평일 일과생활	12 (3.6)	26 (7.7)	105 (31.2)	102 (30.3)	92 (27.3)	3.70	1.06
주말 일과생활	12 (3.6)	17 (5.1)	78 (23.3)	94 (28.1)	134 (40.0)	3.96	1.08

〈표 4-13〉 평일 일과 불만족 사유

구분	빈도	비율(%)
프로그램 부족	5	12.2
지루하고 할 일이 없음	18	43.9
일과가 불규칙함	2	4.9
전반적으로 불만	4	9.8
프로그램이 너무 많음	8	19.5
기타	4	9.8
전체	41	100.0

〈표 4-14〉 주말 일과 불만족 사유

구분	빈도	비율(%)
지루하다	13	43.3
징계자는 방에만 있어야 한다	3	10.0
쉬는 시간이 없다	6	20.0
전반적으로 불만	6	20.0
기타	2	6.7
전체	30	100.0

4. 시설 프로그램의 만족도

시설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도움이 되는 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 4-15〉와 같이 10개의 항목에 대하여 ‘전혀 도움이 안된다’, ‘별로 도움이 안된다’, ‘보통이다’, ‘대체로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경험 없음’의 6개 척도로 제시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도움의 정도는 3.77점에서 4.16점의 분포로 각 영역에 대하여 대체적

으로 고르게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항목 중 문화체험활동이 4.1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교과/학습 교육(검정고시) 4.13점, 직업/진로교육·개인 및 집단상담·생활지도가 모두 동일한 4.05점, 스포츠 활동 4.01점, 부모 및 가족상담·비행예방교육이 동일하게 3.95점, 그리고 종교교육이 3.77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 및 가족 상담과 비행예방교육에 대한 높은 점수를 통해 부모관계 및 비행성향의 개선의지가 있는 대상자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15〉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는 정도

(단위: 명, %)

항목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보통이다	대체로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경험 없음	평균	표준 편차
교과/학습 교육(검정고시)	4 (1.2)	5 (1.5)	60 (18.0)	70 (21.0)	115 (34.5)	79 (23.7)	4.13	.95
직업/진로교육	1 (.3)	12 (3.6)	74 (22.2)	103 (30.8)	116 (34.7)	28 (8.4)	4.05	.90
개인 및 집단상담	3 (.9)	10 (3.0)	81 (24.3)	92 (27.5)	124 (37.1)	24 (7.2)	4.05	.94
부모 및 가족상담	4 (1.2)	9 (2.7)	88 (26.2)	74 (22.0)	105 (31.3)	56 (16.7)	3.95	.97
심리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7 (2.1)	19 (5.7)	79 (23.5)	77 (22.9)	99 (29.5)	55 (16.4)	3.86	1.05
스포츠활동	8 (2.4)	20 (6.0)	69 (20.5)	70 (20.8)	137 (40.8)	32 (9.5)	4.01	1.09
문화체험활동	3 (.9)	10 (3.0)	66 (19.6)	85 (25.3)	143 (42.6)	29 (8.6)	4.16	.94
종교교육	19 (5.7)	24 (7.1)	84 (25.0)	63 (18.8)	117 (34.8)	29 (8.6)	3.77	1.21
비행예방교육	4 (1.2)	20 (6.0)	87 (25.9)	78 (23.2)	124 (36.9)	23 (6.8)	3.95	1.02
생활지도	7 (2.1)	10 (3.0)	84 (25.0)	87 (25.9)	140 (41.7)	8 (2.4)	4.05	1.00

시설에서 만난 담임선생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표 4-16〉과 같이 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제시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점수가 3.79점에서 3.89점으로 담임과의 관계가 대체적으로 좋다고 인식하는 대상자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담임선생님은 욕설이나 체벌을 하지 않는다’가 4.1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담임선생님은 내 이야기를 잘 들어 주신다’와 ‘나는 담임선생님을 신뢰하고 믿는다’가 동일하게 4.01점, ‘담임선생님은 내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 3.89점, 그리고 ‘나는 담임선생님과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가 3.79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대상자와 시설 담임선생님과의 라포가 잘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16〉 담임과의 관계

(단위: 명, %)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담임선생님은 내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	6 (1.8)	22 (6.5)	90 (26.8)	102 (30.4)	116 (34.5)	3.89	1.01
담임선생님은 내 이야기를 잘 들어 주신다.	6 (1.8)	20 (6.0)	73 (21.7)	104 (31.0)	133 (39.6)	4.01	1.01
담임선생님은 욕설이나 체벌을 하지 않는다.	15 (4.5)	16 (4.8)	47 (14.0)	83 (24.7)	175 (52.1)	4.15	1.11
나는 담임선생님을 신뢰하고 믿는다.	12 (3.6)	17 (5.1)	69 (20.5)	94 (28.0)	144 (42.9)	4.01	1.08
나는 담임선생님과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10 (3.0)	23 (6.8)	104 (31.0)	90 (26.8)	109 (32.4)	3.79	1.07

교과·학습교육(검정고시) 및 직업·진로 교육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기 위하여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교육에 따라 각 대상자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각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항목을 6가지로 구분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제시하였다. 우선 현재 참여 하고 있는 교육이 교과/학습교육인 경우는 46.%(139명), 직업/진로교육은 53.4%(159명)로 나타났다(〈표 4-17〉). 먼저 〈표 4-18〉에서 제시된 교과/학습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미래를 계획하는데 도움이 된다’ 3.91점, ‘진학에 도움이 된다’ 3.90 점, ‘검정고시 준비에 도움이 된다’ 3.80점으로 나타나 교과/학습 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4점 이하지만 전반적으로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내용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들다’ 2.16점, 교재 및 선생님의 부족에 대해서도 각

1.89점, 1.88점으로 나타나 교육 효과성에 대한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9>의 직업/진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나의 미래를 계획하는데 도움이 된다’ 3.56점, ‘취업에 도움이 된다’ 3.44점으로 교과학습보다 약간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또한 ‘교육과목이 부족하다’ 2.37점, ‘나의 적성에 맞지 않는다’ 2.32점, ‘자격증을 따기에 교육기간이 짧다’ 2.27점, ‘실습장비가 부족하다’ 2.25점으로 나타나 교육과목, 적성부합정도, 자격증 프로그램에 있어 보통정도의 만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6호시설 입소기간이 대부분 6개월 정도임을 감안할 때 직업/진로 교육에 있어 어떠한 접근방식을 취할지에 대하여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표 4-17> 현재 참여 교육

구분	빈도	비율(%)
교과/학습교육(검정고시)	139	46.6
직업/진로교육	159	53.4
전체	298	100.0

<표 4-18> 교과/학습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내용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들다.	59 (32.1)	57 (31.0)	52 (28.3)	12 (6.5)	4 (2.2)	2.16	1.02
선생님이 부족하다.	77 (41.8)	64 (34.8)	35 (19.0)	4 (2.2)	4 (2.2)	1.88	.94
교재가 부족하다.	81 (44.0)	57 (31.0)	37 (20.1)	4 (2.2)	5 (2.7)	1.89	.98
검정고시 준비에 도움이 된다.	12 (6.6)	8 (4.4)	54 (29.5)	40 (21.9)	69 (37.7)	3.80	1.18
진학에 도움이 된다.	7 (3.8)	9 (4.9)	45 (24.5)	57 (31.0)	66 (35.9)	3.90	1.07
미래를 계획하는데 도움이 된다.	5 (2.7)	10 (5.4)	52 (28.1)	47 (25.4)	71 (38.4)	3.91	1.06

〈표 4-19〉 직업/진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교육과목이 부족하다.	71 (26.5)	71 (26.5)	89 (33.2)	29 (10.8)	8 (3.0)	2.37	1.08
실습장비가 부족하다.	80 (29.9)	78 (29.1)	84 (31.3)	16 (6.0)	10 (3.7)	2.25	1.06
나의 적성에 맞지 않는다.	74 (27.7)	68 (25.5)	100 (37.5)	16 (6.0)	9 (3.4)	2.32	1.05
자격증을 따기에 교육기간이 짧다.	81 (30.2)	75 (28.0)	83 (31.0)	17 (6.3)	12 (4.5)	2.27	1.10
취업에 도움이 된다.	20 (7.5)	17 (6.3)	107 (39.9)	73 (27.2)	51 (19.0)	3.44	1.10
나의 미래를 계획하는데 도움이 된다.	14 (5.2)	20 (7.5)	100 (37.3)	70 (26.1)	64 (23.9)	3.56	1.09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기 위하여 〈표 4-20〉과 같이 6개 항목으로 나누어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제시하였다. 단점에 대한 항목을 제외하고, 각 항목별로 3.53점에서 3.84점으로 4점 이하지만 고르게 대체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를 돌아보는데 도움이 된다'가 3.8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나의 미래를 계획하는데 도움이 된다'와 '비행예방 또는 재비행방지에 도움이 된다'가 3.83점으로 동일하게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나에게 꼭 필요한 상담이다' 3.78점으로 나타났으며 상담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만큼 '상담시간이 짧아 아쉽다'에 대한 항목에서 3.23점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표 4-15〉에서 개인 및 집단 상담과 비행예방 교육의 높은 만족도에 대한 결과와 일치하게 나타났다.

〈표 4-20〉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나에게 꼭 필요한 상담이다.	5 (1.5)	27 (8.1)	106 (31.6)	95 (28.4)	102 (30.4)	3.78	1.02
상담시간이 짧아 아쉽다.	25 (7.5)	63 (18.9)	113 (33.8)	77 (23.1)	56 (16.8)	3.23	1.16
분노조절에 도움이 된다.	17 (5.1)	28 (8.4)	126 (37.7)	87 (26.0)	76 (22.8)	3.53	1.09
나를 돌아보는데 도움이 된다.	6 (1.8)	12 (3.6)	112 (33.5)	104 (31.1)	100 (29.9)	3.84	.96
나의 미래를 계획하는데 도움이 된다.	5 (1.5)	18 (5.4)	106 (31.8)	102 (30.6)	102 (30.6)	3.83	.98
비행예방 또는 재비행 방지에 도움이 된다.	9 (2.7)	15 (4.5)	108 (32.3)	94 (28.1)	108 (32.3)	3.83	1.02

시설에서 실시되는 교육이나 프로그램 중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프로그램을 주관식 설문으로 조사한 결과를 〈표 4-21〉과 같이 6개의 항목으로 범주화하여 정리하였다. 우선 자격증 등의 교육프로그램의 보완으로 응답한 대상자가 45.9%(34명)로 과반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 스포츠 등 체험프로그램 18.9%(14명), 외부로 나가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10.8%(8명)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대상자 중 30% 정도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연계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상담시간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8.1%(6명), 수업시간이 짧다는 의견에 5.4%(4명)의 대상자가 응답하여 기존 교과학습 프로그램과 상담프로그램의 높은 만족도에 낮은 비중이지만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표 4-21〉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교육이나 프로그램

구분	빈도	비율(%)
수업시간이 짧다	4	5.4
쉬는 시간 활동 필요	3	4.1
문화, 스포츠 등 체험프로그램	14	18.9
외부로 나가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8	10.8
자격증 등 교육프로그램	34	45.9
상담시간을 늘렸으면 좋겠다	6	8.1
기타	5	6.8
전체	74	100.0

5. 시설 경험에 따른 인식 변화

시설에 들어오기 전에 저지른 사건에 대한 대상자의 의견을 조사하였는 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잘못을 인정한다’ 76.8%(256명), ‘부분적으로만 잘못을 인정한다’ 15.0%(50명)로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가 91.9%로 월등하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행예방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만큼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었던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에 반하여 ‘전혀 잘못이 없다’ 2.7%, ‘오히려 내가 피해자다’ 1.5%로 나타나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은 경우도 4.2%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22〉).

또한 그 사건으로 인해 시설에서 지내야하는 사실에 대한 의견도 조사한 결과 ‘잘못한 것이니 당연하다’라는 의견에 과반수 이상인 64.1%(214명)가 응답하였고,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지나치다’라는 의견에 33.5%(112명)가 답변하였다(〈표 4-23〉).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가 97.6%로 〈표 4-22〉보다 조금 높지만 일치하는 결과로 나타났으며 다만 잘못에 대한 인정과 시설입소의 관계에 대하여 지나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는 7개 각 시설의 개방의 정도 등 운영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4-22〉 시설에 들어오기 전에 저지른 사건에 대한 의견

구분	빈도	비율(%)
모든 잘못을 인정한다	256	76.9
부분적으로만 잘못을 인정한다	50	15.0
전혀 잘못이 없다(무죄이다)	9	2.7
오히려 내가 피해자다	5	1.5
기타	13	3.9
전체	333	100.0

〈표 4-23〉 저지른 사건으로 인해 시설에서 지내야 하는 것에 대한 의견

구분	빈도	비율(%)
잘못한 것이니 당연하다.	214	64.1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지나치다.	112	33.5
잘못한 것도 아닌데 지나치다.	8	2.4
전체	334	100.0

시설 생활의 힘든 점에 대하여 <표 4-24>와 같이 7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제시하여 조사하였다. 가장 힘든 점으로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그리움'이 3.3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하였다. '지난날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은 3.18점, '자유가 없는 구속된 생활' 2.89점, '규칙적인 생활' 2.67점, '친구와의 관계' 2.16점, '선생님과의 관계' 1.88점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그리움은 시설마다 개방성에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설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응답이라고 판단되며, 선생님과 관계 점수가 가장 낮게 나온 것은 선생님과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표 4-16>과 일치하는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4-24〉 시설 생활의 힘든 점

(단위: 명, %)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여기서 만난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힘들다.	112 (33.2)	102 (30.3)	83 (24.6)	37 (11.0)	3 (.9)	2.16	1.04
여기서 만난 선생님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다.	146 (43.3)	108 (32.0)	68 (20.2)	9 (2.7)	6 (1.8)	1.88	.94
자유가 없는 구속된 생활 때문에 힘들다.	81 (24.0)	55 (16.3)	83 (24.6)	57 (16.9)	61 (18.1)	2.89	1.42
규칙적인 생활 때문에 힘들다.	85 (25.2)	70 (20.8)	88 (26.1)	59 (17.5)	35 (10.4)	2.67	1.31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힘들다.	52 (15.4)	34 (10.1)	87 (25.8)	76 (22.6)	88 (26.1)	3.34	1.37
지난날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 때문에 힘들다.	53 (15.7)	38 (11.3)	104 (30.9)	78 (23.1)	64 (19.0)	3.18	1.31
친구의 욕설과 폭행 때문에 힘들다.	177 (52.5)	74 (22.0)	66 (19.6)	15 (4.5)	5 (1.5)	1.80	1.00

시설에 들어와서 느끼는 생각에 대한 설문을 〈표 4-25〉와 같이 7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제시하였다. 7개 항목 중 ‘부모님과 가족을 실망시켜서 부끄럽다’가 4.3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다’ 4.32점, ‘이번 일을 계기로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다’도 4.20점으로 높게 나타나 자신이 저지른 일을 반성하는 대상자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8〉 부모와의 관계성 분석에서 부모님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부모님과 관계가 좋은 대상자가 많았던 것만큼 자신이 저지른 일로 인하여 부모님 및 가족의 실망감을 우려하는 대상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학교나 주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한 걱정’이 3.05점, ‘친구들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한 걱정’이 2.77점으로 낙인에 대하여 우려하는 대상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5〉 시설에 들어와서 느끼는 생각

(단위: 명, %)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이번 일을 계기로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4 (1.2)	9 (2.7)	55 (16.4)	117 (34.8)	151 (44.9)	4.20	.89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다.	2 (.6)	4 (1.2)	46 (13.7)	115 (34.3)	168 (50.1)	4.32	.80
부모님과 가족을 실망시켜서 부끄럽다.	3 (.9)	7 (2.1)	46 (13.8)	88 (26.3)	190 (56.9)	4.36	.86
학교나 주변에 알려질까봐 걱정이다.	59 (17.7)	61 (18.3)	86 (25.7)	61 (18.3)	67 (20.1)	3.05	1.37
친구들에게 알려질까봐 걱정이다.	73 (21.8)	73 (21.8)	96 (28.7)	45 (13.4)	48 (14.3)	2.77	1.32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될까봐 걱정이다.	55 (16.5)	46 (13.8)	86 (25.7)	68 (20.4)	79 (23.7)	3.21	1.38
돌아갈 곳이 없게 될까봐 두렵다.	119 (35.7)	66 (19.8)	70 (21.0)	34 (10.2)	44 (13.2)	2.45	1.40

시설이탈 충동·유혹 여부를 살펴보면 이탈 충동이나 유혹을 느낀 경우가 51.7%(169명), 없는 경우는 48.3%(158명)으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탈 충동이나 유혹을 느꼈던 대상자 중 유혹을 가장 크게 느낀 시기에 대해 살펴보면 시설에 입소한 후 1주일 이내인 경우가 53.6%(9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1개월 이내 28%(47명), 1개월부터 3개월 사이 11.9%(20명),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6.5%(11명) 순으로 나타났다(〈표 4-27〉). 입소하자마자 자유가 박탈된 상황이 힘들어서 초기에 힘들어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적응이 되어 유혹을 덜 느끼게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설이탈의 유혹을 느낀 이유를 살펴보면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가 27.4%(64명)로 가장 많았고, ‘(이성)친구가 보고 싶어서’가 25.2%(59명), ‘생활이 지겨워서’ 16.2%(38명), ‘생활규칙이 너무 엄격해서’ 8.5%(20명), ‘친구들의 괴롭힘 때문에’ 3.4%(8명) 순으로 나타났다(〈표 4-28〉). 부모님이나 친구가 보고 싶어서 유혹을 느낀 경우가 가장 많은 것은 〈표 4-24〉의 시설 내 힘든 점에 대한 분석과 일치하는 결과로 나타나 가족과 친구에 대한 애착이 시설생활을 힘들게 느끼게 하기도 하고 입소 초기에는 이탈의 충동까지 느끼도록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6〉 시설이탈 총동·유혹 여부

구분	빈도	비율(%)
있다.	169	51.7
없다.	158	48.3
전체	327	100.0

〈표 4-27〉 시설이탈 총동·유혹을 가장 크게 느낀 시기

구분	빈도	비율(%)
들어온 후 1주일 이내	90	53.6
들어온 후 1개월 이내	47	28.0
1개월부터 3개월 사이	20	11.9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11	6.5
전체	168	100.0

〈표 4-28〉 시설이탈 총동·유혹 이유(중복응답)

구분	빈도	비율(%)
부모님이 보고파서	64	27.4
(이성)친구가 보고파서	59	25.2
생활이 지겨워서	38	16.2
다른 친구들의 괴롭힘 때문에	8	3.4
생활규칙이 너무 엄격해서	20	8.5
기타	45	19.2
전체	234	100.0

시설에 입소 전 저지른 사건 피해자에 대한 생각을 조사하기 위하여 5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제시하였다. 피해자에 대하여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느낀 경우가 4.1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하였으며, 다른 항목들도 3.28점에서 3.62점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반성하고 피해자를 위한 행동으로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는 대상자가 많은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접 만나서 사죄를 하고 싶은 경우가 3.66점, 사과와 편지를 쓰고 싶은 경우가 3.62점, 피해배상을 하고 싶은 경우가 3.50점, 피해자를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다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3.28점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조치든 취하려고 인식하고 있는

대상자가 많은 것은 상술한 분석내용과 같이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비행예방교육 프로그램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

〈표 4-29〉 시설에 들어오기 전에 저지른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생각

(단위: 명, %)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	18 (5.5)	7 (2.2)	51 (15.7)	93 (28.6)	156 (48.0)	4.11	1.10
사과의 편지를 쓰고 싶다.	28 (8.6)	35 (10.8)	80 (24.6)	71 (21.8)	111 (34.2)	3.62	1.29
만나서 사죄하고 싶다.	28 (8.6)	33 (10.2)	76 (23.4)	73 (22.5)	115 (35.4)	3.66	1.29
피해배상을 하고 싶다.	38 (11.7)	26 (8.0)	100 (30.8)	56 (17.2)	105 (32.3)	3.50	1.33
피해자를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다.	49 (15.1)	39 (12.0)	97 (29.8)	51 (15.7)	89 (27.4)	3.28	1.38

시설 입소 후 달라진 점에 대하여는 〈표 4-30〉과 같이 10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제시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모든 항목이 3.69점에서 4.38점으로 매우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대상자들이 많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를 다니고 싶다’와 ‘직업을 가지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가 4.3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퇴소 후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대상자들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모님과 사랑과 고마움을 알게 되었다’도 4.32점으로 나타나 상술한 여러 분석을 통해 나타난 부모님과 관계성이 좋은 대상자들인 만큼 부모와 가족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보고 고마움을 느끼게 된 대상자가 많았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규칙적인 생활습관이 생겼다’ 4.08점, ‘규칙과 질서를 잘 지키게 되었다’가 4.01점의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규칙적인 생활습관이 시설내에서의 생활을 힘들게 하는 점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 이탈하고 싶은 충동도 느끼게 하지만 결국 규칙적인 생활의 긍정적인 면을 인식하는 대상자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외에도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었다' 3.95점, '친구가 힘들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3.94점, '나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었다' 3.93점 등 여러 항목에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대상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소년들이나 만큼 시설의 여러 프로그램과 짧은 기간 시설생활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 도출이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표 4-30〉 시설 입소 후 변한 점

(단위: 명, %)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참여성(인내심)이 좋아졌다	10 (3.0)	11 (3.3)	72 (21.5)	112 (33.4)	130 (38.8)	4.02	1.00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었다	9 (2.7)	12 (3.6)	85 (25.4)	109 (32.5)	120 (35.8)	3.95	1.00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	10 (3.0)	30 (9.0)	103 (30.8)	103 (30.8)	88 (26.3)	3.69	1.05
친구가 힘들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7 (2.1)	14 (4.2)	79 (23.6)	128 (38.2)	107 (31.9)	3.94	.95
규칙적인 생활습관이 생겼다	7 (2.1)	9 (2.7)	64 (19.1)	124 (37.0)	131 (39.1)	4.08	.93
규칙과 질서를 잘 지키게 되었다	6 (1.8)	13 (3.9)	69 (20.6)	131 (39.1)	116 (34.6)	4.01	.93
나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었다	7 (2.1)	5 (1.5)	65 (19.4)	124 (37.0)	134 (40.0)	4.11	.91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었다	14 (4.2)	14 (4.2)	91 (27.2)	100 (29.9)	116 (34.6)	3.87	1.07
나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었다	12 (3.6)	16 (4.8)	85 (25.4)	94 (28.1)	128 (38.2)	3.93	1.07
부모님의 사랑과 고마움을 알게 되었다	5 (1.5)	9 (2.7)	50 (14.9)	81 (24.2)	190 (56.7)	4.32	.93
학교를 다니고 싶다	7 (2.1)	4 (1.2)	48 (14.3)	73 (21.8)	203 (60.6)	4.38	.92
직업을 갖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	5 (1.5)	1 (.3)	57 (17.0)	70 (20.9)	202 (60.3)	4.38	.88

퇴소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학교 복학이 가장 많은 36%(129명)을 차지하고 있었고, 취직 또는 취업 준비 24%(86명), 검정고시 준비 18.2%(65명), 계획 없는 경우 2.5%(9

명) 순으로 나타나(〈표 4-31〉) 시설 입소 후 학교에 다니거나 직업을 가지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많았던 〈표 4-30〉의 내용과 일치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퇴소 이후 안정적인 적응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부모님과 관계회복, 선량한 친구들과의 관계가 각각 26.3%(112명), 22.3%(95명)으로 부모님과 친구가 가장 그립고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대상이면서 관계회복을 우선적으로 하고 싶은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복학 또는 취직 19.0%(81명), 주위의 따뜻한 시선 17.4%(74명), 생계의 안정 10.3%(44명) 순으로 나타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욕구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4-32〉). 특히나 복학, 취직, 주위의 시선 등과 같은 부분은 입소기간 동안 활발한 지역사회연계를 기반으로 한 인식변화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표 4-31〉 퇴소 이후 계획(중복응답)

구분	빈도	비율(%)
학교복학	129	36.0
취직 또는 취업준비	86	24.0
검정고시 준비	65	18.2
계획 없다	9	2.5
기타	69	19.3
전체	358	100.0

〈표 4-32〉 퇴소 이후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것(중복응답)

구분	빈도	비율(%)
주위의 따뜻한 시선	74	17.4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	112	26.3
생계의 안정	44	10.3
선량한 친구들과의 관계	95	22.3
복학 또는 취직	81	19.0
기타	20	4.7
전체	426	100.0

시설에서 함께 지낸 친구들이 퇴소 이후 다시 범죄를 저질 것 같은지에 대한 생각을 조사하였는데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대상자를 제외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59.0%(193명), 다시 저지를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8.0%(59명)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표 4-33). 다시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한 경우가 아닌 경우보다 3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퇴소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 '자신이 변하지 않아서' 38.2%(39명), '비행친구의 유혹 때문에' 36.3%(37명)로 나타나 재비행의 주된 위험요소를 개인적인 가치관 및 마인드와 비행소년의 영향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표 4-34). 반면에 퇴소 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교육을 받은 후 변화해서'가 28.1%(85명), '부모님을 생각해서'가 26.8%(81명), '다시 구속된 생활을 하는 게 싫어서'가 24.8%(75명)로 세 가지가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35). 이를 통하여 범죄를 저지르거나 저지르지 않는 주된 요인은 결국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모와의 관계는 정적 강화, 자유가 박탈되는 시설생활은 부적 강화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3〉 친구의 퇴소 이후 재범여부에 대한 인식

구분	빈도	비율(%)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59	18.0
결코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193	59.0
잘 모르겠다	75	22.9
전체	327	100.0

〈표 4-34〉 친구의 퇴소이후 재범이유(중복응답)

구분	빈도	비율(%)
비행친구의 유혹 때문에	37	36.3
돈이 없어서	8	7.8
가정환경이 변하지 않아서	14	13.7
자신이 변하지 않아서	39	38.2
기타	4	3.9
전체	102	100.0

〈표 4-35〉 퇴소 이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중복응답)

구분	빈도	비율(%)
시설에서 교육을 받은 후 변화해서	85	28.1
취직이나 복학을 하기 때문에	38	12.6
부모님을 생각해서	81	26.8
다시 구속된 생활을 하는게 싫어서	75	24.8
그냥 하지 않을 거 같아서	16	5.3
기타	7	2.3
전체	302	100.0

6. 시설에 대한 이미지

입소 전 시설 인식에 대하여 살펴보면 입소 전에 6호처분 시설을 소년원과 유사한 시설로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가 45.5%(151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에 가정처럼 보호를 받는 곳이라고 인식한 경우가 20.5%(68명), 학교와 비슷한 교육을 받는 곳 17.2%(57명), 사회복지시설 14.5%(48명), 직업훈련 받는 곳 2.4%(8명)로 나타나 입소 전에도 복지시설이나 교육시설 등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54.6%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36〉). 반면에 입소 후 시설에 대한 인식은 변화한 경우가 79.7%로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변하지 않은 경우는 20.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표 4-37〉), 입소 후에 시설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36〉 입소 전 시설인식

구분	빈도	비율(%)
학교와 비슷하게 교육을 받는 곳이다	57	17.2
소년원과 비슷하게 갇혀 있는 곳이다	151	45.5
직업훈련을 받는 곳이다	8	2.4
가정처럼 보호를 받는 곳이다	68	20.5
사회복지 시설이다	48	14.5
전체	332	100.0

〈표 4-37〉 입소 후 시설에 대한 인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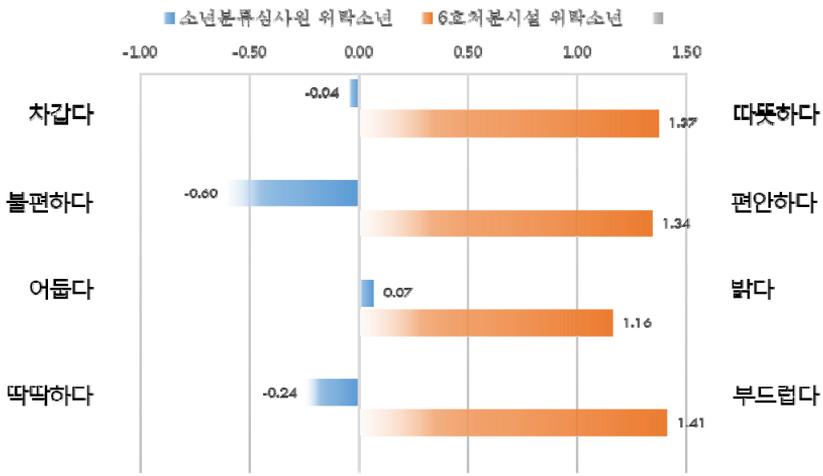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율(%)
전혀 변하지 않았다	16	4.8
별로 변하지 않았다	51	15.5
약간 변했다	107	32.4
매우 많이 변했다	156	47.3
전체	330	100.0

〈표 4-38〉 시설에 대한 이미지

구분	평균	표준편차
나쁘다/좋다	5.37	1.59
차갑다/따뜻하다	5.34	1.62
불편하다/편안하다	5.16	1.85
어둡다/밝다	5.41	1.68
딱딱하다/부드럽다	5.18	1.70
약하다/강하다	5.27	1.54
조용하다/활기차다	5.67	1.55

시설의 이미지에 인식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2015년 연구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이 느끼는 시설에 대한 이미지¹⁷⁾와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시설내 수용이긴 하나, 6호처분 시설 위탁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소년보다 시설에 대하여 보다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6호처분시설이 시설 구금이긴 하나 복지적 처우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보다 개방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7) 이승현/박성훈,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강화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89쪽.



[그림 4-1] 소년분류심사원과 6호처분시설의 이미지 비교

적절한 교육 기간에 대해 살펴보면, 3개월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자가 54.1%(180명)로 가장 많았고, 현재처럼 6개월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대상자가 23.7%(79명)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이외에 1개월 9.3%(31명), 1년 정도 2.4%(8명), 1년 이상 1.8%(6명)로 나타났다.

<표 4-39> 적절한 교육기간

구분	빈도	비율(%)
1개월 정도	31	9.3
3개월 정도	180	54.1
현재처럼 6개월 정도	79	23.7
1년 정도	8	2.4
1년 이상	6	1.8
기타	29	8.7
전체	333	100.0

7. 소결

7개 기관에서 총 337명의 소년들이 조사에 참여하였고 크게 응답자 특성, 시설 입소경험 및 실태, 시설 생활경험 및 시설만족도, 시설 프로그램 만족도, 시설 생활경

협과 인식변화, 시설에 대한 이미지의 6개 분야 걸쳐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시설이 많은 만큼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연령은 15-17세가 68.5%로 가장 많았다. 입소기간은 6개월 이하가 45.4%로 가장 많았으며, 입소 전 거주지는 경기도와 서울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시설 입소경험 및 실태에 대한 영역에서는 시설경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각각 과반수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고, 입소하게 된 범죄유형으로는 재산범죄가 가장 많은 34.7%로 가장 많았다. 소년원 처분 경험에 대해서는 처분 경험이 없는 경우가 89.2%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처분 횟수는 1회가 80.6%로 대부분 경비행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68.5%로 나타났고 1회가 37%로 가장 많았다. 학교 교육현황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자퇴자가 20.2%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비중은 각 29.6%와 35.1%로 고등학생의 비중이 약간 높았다. 입소 전 가족관계는 친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39.4%로 가장 많았고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양부모 모두 포함하면 70.8%가 부모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관계는 부모님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부모님과 관계가 좋다고 인식하는 대상자가 많았으며,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을 때 친구와 나누고 친구가 많다고 인식하는 대상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생활경험 및 시설만족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었는데 특히 식사(4.15점), 작업실(3.96점), 생활실(3.95점) 순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개선사항에 관해서는 운동장 24.2%, 화장실 20.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시설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일과에 대해서는 주말일과에 대한 만족도 3.95점, 평일 3.70점으로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말 및 평일 일과 불만족사유로는 지루하다는 점이 43.3%로 가장 높게 나타나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시설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각 영역별로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문화체험활동이 4.1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설내 담임선생님과 관계에 대해서도 각 항목별로 고른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특히 선생님이 욕설이나 체벌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높은 4.15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며 선생님을 신뢰한다는 점도 각 4.01점으로 나타나 선생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였다. 또한 교과/학습프로

그럼과 직업/진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대상자들의 의견을 살펴보았는데 두 프로그램 모두 미래를 계획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6가지 항목에 대체적으로 고른 만족도를 보였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특히 '나를 돌아보는데 도움이 된다', '미래를 계획하는데 도움이 된다', '비행예방 또는 재비행방지에 도움 된다'가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보완할 점에 대해서는 자격증 등의 교육프로그램이 45.9%로 과반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체험프로그램의 필요성도 18.9%로 나타나 입소기간 중 다양한 체험을 하고 미래를 계획하기 위한 자격증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생활경험과 인식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면, 시설생활의 힘든 점으로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그리움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시설에서의 이탈 충동을 느낀 대상자가 51.7%로 과반수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탈의 충동은 입소 후 1주일 이내에 53.6%로 가장 높았으며 이유는 부모님과 친구에 대한 그리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입소 후 학교를 다니고 싶고, 직업을 가져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고 느낀 대상자가 많았으며 퇴소 이후에는 학교에 복학하고 취업준비를 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대상자가 많았다. 더불어 퇴소 이후 안정적인 적응을 위해서 부모님과의 관계회복, 선량한 친구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많았다. 시설에서 함께 지내던 친구들의 재범가능성에 대해서는 59%가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그 이유로는 시설내 교육으로 인한 변화, 부모님에 대한 요인, 구속된 생활이 싫어서의 이유가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에 재범으로 나아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이 변화하지 않아서와 비행친구의 유혹이 영향을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6호처분 시설의 적정대상자에 대해서는 가정처럼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비행환경과의 단절이 필요한 경우도 주된 대상으로 언급되었다.

제2절 시설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분석

6호 처분 시설인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종사하는 종사자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국/내외 선행연구를 토대로 설문문항을 개발하였으며, 학계와 실무계에서 설문문항들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였다. 2017년 8월부터 9월까지 현재 우리나라에서 6호 시설로 사용되는 7개 기관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설문은 응답자 특성 (7개), 6호 처분에 대한 인식 (4개 문항), 시설 운영에 대한 인식(12문항), 6호처분 시설의 개선방안(3문항) 등 총 3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4개의 문항은 주관식 질문으로서 코딩 단계에서 답변에 대한 범주화가 이루어졌다. 7개 시설에서 총 135명의 종사자가 참여하였으며, 본 조사의 목적이 종사자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함이므로 각 항목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1. 응답자 특성

본 조사에 참여한 7개 기관은 현재 법원에서 6호 처분을 받은 소년사범을 수용하는 '아동보호치료시설'이며, 살레시오(남), 효광원(남), 로템 청소년 학교(남), 늘사랑(여), 나사로의 집(여), 희망샘 학교(남/녀) 등이다. 3개 기관이 남자 시설이며, 2개 기관이 여자 시설, 1개 기관이 남/녀 시설이다(표 4-40) 참조). 각 기관별 참여인원을 살펴보면 희망샘 학교가 25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했으며, 마자렐로가 23명, 살레시오, 효광원, 로템 청소년 학교가 각각 22명, 나사로의 집이 13명, 늘사랑이 8명 참여하였다. 응답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이 71명으로 52.6%, 남성이 64명으로 47.4%가 참여하였다.

연령으로는 30대가 가장 많은 35.1%(47명), 40대가 29.1%(39명), 50대가 24.6%(33명), 20대가 8.2%(11명), 60대 이상이 3%(4명)으로 30~40대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시설에 재직한 기간을 살펴보면 1년~3년 미만이 29%(38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7년 이상이 25.2%(33명), 3년~5년 미만이 20.6%(27명), 1년 미만이 16.3%(11명), 5년~7년 미만이 9.2%(12명)로, 3년 이내가 가장 많으며(45.3%), 이후 7년 이상이 가장 많아서 신·구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당분야 재직 기간을 살펴보면 7년 이상이 28.9%(29명)로 가장 많고, 1년~3년 미만이 25%(26명), 3년~5년 미만이 18.3%(19명), 1년 미만이 16.3%(17명), 5년~7년 미만이 12.5%(13명) 순으로 7년 이상의 경력자와 3년 미만의 다소 신입들의 함께 종사하는, 본 시설 재직기간과 유사한 성향을 보였다.

학력을 살펴보면 65.4%(87명)가 대학재학/졸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석사 재학/졸업은 19.5%(26명), 고졸이 9.8%(13명), 기타는 4.5%(6명), 박사 재학/졸업자는 0.8%(1명)로 종사자들의 학력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보유한 자격증과 관련해서는 가장 많이 보유한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69.6%(87명)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기타 자격증은 16.8%(21명), 교사 자격증은 12.8%(16명), 청소년 상담사는 1명이었으며, 청소년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종사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의 시설 내 역할에 관한 질문에서는 생활지도를 맡은 응답자가 49.3%(6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가 30.6%(41명), 교과/학습교육이 6.7%(9명), 상담치료가 5.2%(7명), 직업/진로교육이 4.5%(6명), 실습교육이 2.2%(3명), 사회복지업무 담당자가 1.5%(2명) 이었다.

〈표 4-40〉 응답자의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전체		135	100.0
가소속시설	살레시오	22	16.3
	마자렐로	23	17.0
	효광원	22	16.3
	나사로의 집	13	9.6
	로뎀청소년학교	22	16.3
	희망샘	25	18.5
	늘사랑	8	5.9
성별	남자	64	47.4
	여자	71	52.6
연령	20대	11	8.2
	30대	47	35.1
	40대	39	29.1
	50대	33	24.6
	60대 이상	4	3.0

	구분	빈도	비율(%)
본 시설 재직기간	1년 미만	21	16.0
	1년 - 3년 미만	38	29.0
	3년 - 5년 미만	27	20.6
	5년 - 7년 미만	12	9.2
	7년 이상	33	25.2
해당분야 재직기간	1년 미만	17	16.3
	1년 - 3년 미만	26	25.0
	3년 - 5년 미만	19	18.3
	5년 - 7년 미만	13	12.5
	7년 이상	29	27.9
학력	고졸	13	9.8
	대학재학/졸업	87	65.4
	석사 재학/졸업	26	19.5
	박사 재학/졸업	1	.8
	기타	6	4.5
보유자격증	교사	16	12.8
	사회복지사	87	69.6
	청소년지도사	-	-
	청소년상담사	1	.8
	기타	21	16.8
역할	생활지도	66	49.3
	상담치료	7	5.2
	교과/학습교육	9	6.7
	직업/진로교육	6	4.5
	사회복귀업무(사후관리)	2	1.5
	실습교육(목공예, 도예, 악기 등)	3	2.2
	기타	41	30.6

2. 6호 처분에 대한 인식

6호 처분에 대한 종사자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6호 처분의 목표, 소년원과의 차별성, 청소년회복센터(1호처분)와의 차별성, 6호 시설에 적합한 대상자 선별기준 등에 대한 의견이 조사되었다.

가. 6호 처분이 추구하는 목표

시설 종사자들이 인식하는 6호 처분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질문하였으며 이에 대한 응답으로 선행연구를 토대로 구성된 비행행동에 대한 처벌, 학교/가정으로의 복귀, 비행환경과의 단절, 비행억제를 통한 사회보호, 청소년의 치유와 회복, 지역사회와의 소통 등 6개 답변이 제시되었다. 종사자들이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 3순위까지 응답할 것을 요청하였다. <표 4-41>을 보면 6호 처분이 추구하는 목표에 대한 중복응답 결과를 알 수 있다. 가장 높은 응답은 29.6%로서, 종사자들은 6호 처분의 목표를 ‘청소년의 치유와 회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후 ‘학교/가정으로의 복귀’(26.8%), ‘비행환경과의 단절’(20.8%), ‘비행억제를 통한 사회회복’(14.8%)이며, 가장 낮은 답변은 ‘지역사회와의 소통’(2.5%)과 ‘비행행동에 대한 처벌’(5.5%)이었다. 종사자들은 치유, 회복, 복귀, 비행과의 단절을 6호 처분 시설의 목표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41> 6호처분 시설이 추구하는 목표(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비행행동에 대한 처벌	22	5.51
학교/가정으로의 복귀	107	26.82
비행환경과의 단절	83	20.80
비행억제를 통한 사회보호	59	14.79
청소년의 치유와 회복	118	29.57
지역사회와의 소통	10	2.51
전체	399	100.0

순위별로 살펴보면, 종사자들이 1순위로 답변한 것은 ‘청소년의 치유와 회복’으로 과반수인 55.6%가 6호 시설의 가장 주된 목표로 인식하고 있었다(<표 4-42> 참조). 2순위로 가장 많이 제시한 답변은 ‘학교/가정으로의 복귀’로 36.1%가 2순위로 답변하였으며(<표 4-43> 참조), 3순위 역시 ‘학교/가정으로의 복귀’가 가장 많은 30.8%가 답변하였다(<표 4-44> 참조). 순위별로 살펴보더라도 치유, 복귀가 주된 목표이며 반면에 6호 시설이 처벌이나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목표로 한다는 인식은 가장 낮았다.

〈표 4-42〉 6호처분 시설이 추구하는 목표 1순위

구분	빈도	비율(%)
비행행동에 대한 처벌	8	6.0
학교/가정으로의 복귀	18	13.5
비행환경과의 단절	22	16.5
비행억제를 통한 사회보호	11	8.3
청소년의 치유와 회복	74	55.6
지역사회와의 소통	-	-
전체	133	100.0

〈표 4-43〉 6호처분 시설이 추구하는 목표 2순위

구분	빈도	비율(%)
비행행동에 대한 처벌	2	1.5
학교/가정으로의 복귀	48	36.1
비행환경과의 단절	25	18.8
비행억제를 통한 사회보호	24	18.0
청소년의 치유와 회복	33	24.8
지역사회와의 소통	1	.8
전체	133	100.0

〈표 4-44〉 6호처분 시설이 추구하는 목표 3순위

구분	빈도	비율(%)
비행행동에 대한 처벌	12	9.0
학교/가정으로의 복귀	41	30.8
비행환경과의 단절	36	27.1
비행억제를 통한 사회보호	24	18.0
청소년의 치유와 회복	11	8.3
지역사회와의 소통	9	6.8
전체	133	100.0

나. 소년원과의 차별성

6호 처분 시설의 정체성을 수립하기 위해 9.10호 처분인 소년원과 구별되는 특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구별되는 특성에 대한 조사 결과는 향후 소년사법 실무자들이 6호 처분을 활용함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구별되는 특성에 대해서는 7가지 답변이 제시되었으며, 각 7개 항목에 대한 응답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등 5점 척도의 답변이 주어졌다. <표 4-45>을 보면 각 7개 항목에 대한 답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직원(교사 등)과 보호소년과의 관계성'(4.47)으로 중간값 3점을 상회하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소년원 실무자들이 공무원이며, 사건/사고에 대한 엄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호소년과의 관계성이 다소 엄격할 수 있다는 시설장 심층면접과 일치되는 결과로, 보호소년과의 친밀한 관계성 형성이 6호 시설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며 대표적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는 '외부자원의 다양한 활용'(4.45),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다양성'(4.42)으로 6호 처분이 지역사회 교정이며 중간처우의 한 일환인 점을 고려한다면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이 소년원과 또 다른 차별화된 장점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규칙 운영의 자율성'(4.11), '개방적인 시설'(4.08) 순이었으며, '사건/사고에 대한 직원의 책임'은 3.93, '소규모 시설'은 3.60으로 가장 낮은 점수였다. 소년원과 구별되는 특징으로 가장 많이 응답된 3가지 항목(직원과 보호소년과의 관계,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다양성, 외부자원의 다양한 활용) 모두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과반수 이상을 넘었다. 세 가지 특성이 소년원과 구별되는 두드러진 특성이며, 복지시설이며 지역사회 내의 중간처우 특성을 잘 반영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표 4-45> 소년원과 구별되는 특징

(단위: 명, %)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개방적인 시설	1 (.8)	4 (3.0)	24 (18.0)	58 (43.6)	46 (34.6)	4.08	.84
외부자원의 다양한 활용	-	1 (.8)	11 (8.3)	48 (36.1)	73 (54.9)	4.45	.68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다양성	-	2 (1.5)	16 (12.1)	39 (29.5)	75 (56.8)	4.42	.76
직원(교사 등)과 보호소년의 관계	-	-	12 (9.2)	46 (35.1)	73 (55.7)	4.47	.66
사건/사고에 대한 직원(교사 등)의 책임	-	3 (2.3)	39 (29.5)	54 (40.9)	36 (27.3)	3.93	.81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규칙 운영의 자율성	-	3 (2.3)	25 (18.8)	59 (44.4)	46 (34.6)	4.11	.78
소규모 시설	2 (1.5)	13 (9.8)	43 (32.6)	52 (39.4)	22 (16.7)	3.60	.93

다. 1호처분(청소년회복센터)과의 차별성

1호 처분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는 청소년회복센터는 일명 그룹홈이라고 불리우며 7~10명이 가정집의 형태로 위탁부모와 함께 사는 처우이다. 2016년에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 복지시설로 인정되었으며 여성가족부가 관할하고 있다. 청소년회복센터 역시 지역사회 교정이며 중간처우의 하나이므로 6호 처분과 상당히 유사한 점들이 많으므로 두 시설간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는 것은 향후 소년사법 실무자들의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청소년회복센터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 후 종사자들에게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차이점 5가지를 제시하고 각 항목에 대한 답변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등 5점 척도를 제시하였다.

5가지 항목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가장 많은 응답자(90.2%)가 그렇다고 응답한 '10인 이상의 수용인원'(4.56)으로 가시적으로 들어난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시설 내 교과/학습교육이 가능'이 4.51점, '시설 내 상담 및 심리치료 가능'이 4.45, '시설 내 직업/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4.26점으로 청소년회복센터보다는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로서의 장점들이 제시되었다. 또한 재단형태로 운영되는 6호 처분시설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인 '복지시설간 연계 용이'도 4.11점 이었다.

6호 처분 종사자들은 1호 처분에 해당되는 청소년회복센터와의 차별성으로는 인원수, 적정 인원수 확보로 인한 시설 내 프로그램 운영 가능, 시설 간 연계 등을 인식하고 있었다.

〈표 4-46〉 청소년회복센터와 구별되는 특징

(단위: 명, %)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시설 내 직업/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	4 (3.0)	17 (12.8)	52 (39.1)	60 (45.1)	4.26	.80
시설 내 상담 및 심리치료 가능	-	2 (1.5)	8 (6.0)	51 (38.3)	72 (54.1)	4.45	.68
시설 내 교과/학습 교육(검정고시 준비) 가능	-	2 (1.5)	12 (9.0)	35 (26.3)	84 (63.2)	4.51	.72
복지시설 간 연계 용이	-	7 (5.3)	24 (18.2)	48 (36.4)	53 (40.2)	4.11	.89
10인 이상의 수용인원	1 (.8)	1 (.8)	11 (8.3)	29 (22.0)	90 (68.2)	4.56	.74

라. 6호 처분에 적합한 대상자 선별기준

현재 「소년법」 상에는 6호 처분에 적합한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이에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Latessa & Allem, 2011). 보호소년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을 지도하는 종사자들이 인식하는 6호 시설에 가장 적합한 소년사범이 누구인지에 대해 8개 항목이 제시되었으며, 6호 시설 목표 질문과 동일하게 3순위까지 답변을 하도록 요청하였다. 〈표 4-47〉에 의하면 ‘가정의 보호력’이 21.9%로 가장 높았으며, ‘대상자의 비행유형’이 19.7%, ‘대상자의 비행경력’이 19.2%, ‘부모의 학대/방임 여부’가 18.9%이었다. 반면에 ‘학교밖 청소년’은 8.7%, ‘대상자 나이’는 7.5%, ‘집단생활의 적응력’은 4.2%로 다소 낮았다. 소년원 처분보다는 낮은 처분인 점을 감안한다면 비행 유형과 경력이 중요하고, 부모의 지도력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 위탁이나 보호관찰이 아닌 점을 고려한다면 가정의 보호력을 6호 처분에 대상자 선별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47〉 6호처분에 적합한 대상자 선별기준(중복응답)

구분	빈도	비율(%)
대상자의 비행경력	77	19.2
대상자의 나이	30	7.5
대상자의 비행유형	79	19.7
가정에서의 보호력	88	21.9
부모의 학대/방임 여부	76	18.9
학교 밖 청소년	35	8.7
집단생활의 적응력	17	4.2
전체	402	100.0

순위별로 살펴본다면 1순위로 가장 높게 제시된 답변은 ‘대상자의 비행경력’과 ‘대상자의 비행유형’으로 동일하게 27.6%였다(〈표 4-48〉). 전체적인 답변에서 가장 많은 응답자가 제시한 ‘부모의 보호력’은 23.1%였다. 종사자에게 있어서 6호 처분 적정 대상자 판단 여부가 부모의 보호력도 중요한 결정인자이지만 비행에 관한 사안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순위로는 〈표 4-49〉에서 보듯 ‘대상자의 비행유형’(23.1%), ‘부모의 학대/방임여부’(22.4%), ‘가정의 보호력’(20.9%)이었으며, 3순위로는 ‘부모의 학대/방임여부’(22.4%), ‘가정의 보호력’(21.6%), ‘학교밖 청소년’(14.9%), ‘대상자의 비행경력’(14.2%) 순이었다(〈표 4-50〉).

〈표 4-48〉 6호처분에 적합한 대상자 선별기준 1순위

구분	빈도	비율(%)
대상자의 비행경력	37	27.6
대상자의 나이	5	3.7
대상자의 비행유형	37	27.6
가정에서의 보호력	31	23.1
부모의 학대/방임 여부	16	11.9
학교 밖 청소년	3	2.2
집단생활의 적응력	5	3.7
전체	134	100.0

〈표 4-49〉 6호처분에 적합한 대상자 선별기준 2순위

구분	빈도	비율(%)
대상자의 비행경력	21	15.7
대상자의 나이	8	6.0
대상자의 비행유형	31	23.1
가정에서의 보호력	28	20.9
부모의 학대/방임 여부	30	22.4
학교 밖 청소년	12	9.0
집단생활의 적응력	4	3.0
전체	134	100.0

〈표 4-50〉 6호처분에 적합한 대상자 선별기준 3순위

구분	빈도	비율(%)
대상자의 비행경력	19	14.2
대상자의 나이	17	12.7
대상자의 비행유형	11	8.2
가정에서의 보호력	29	21.6
부모의 학대/방임 여부	30	22.4
학교 밖 청소년	20	14.9
집단생활의 적응력	8	6.0
전체	134	100.0

3. 시설 운영에 대한 종사자의 인식

6호 처분 시설 운영에 참여하는 종사자로서 경험하고 인식하는 것을 조사하기 위해 담당한 위탁소년의 수, 적정 위탁소년의 수, 시설 운영상 어려운 점,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 중요한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한 프로그램, 종사자의 전문성과 교육, 보호소년 관리·감독의 어려움, 지역사회 및 관련기관과의 연계, 업무협조와 연계가 필요한 기관과 내용, 사후관리, 사후관리 방법 등이 설문 문항으로 주어졌다.

가. 담당하고 있는 위탁 소년의 수

현재 6호 처분시설의 위탁인원은 적게는 20명에서 많게는 150명에 이르고 있고, 시설별로 담임교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위탁소년의 숫자

를 조사한 결과, 현재 담당하는 위탁소년의 숫자가 15명 이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48.7%(56명)로 가장 많았으며, 46명~60명이 19.1%(22명), 31명~45명(17.4%), 16~30명이 9.6%, 61명 이상이 5.2% 였다. 시설마다 관리하는 담당 위탁소년의 숫자가 크게 차이남을 알 수 있다.

〈표 4-51〉 현재 담당하고 있는 위탁소년의 수

구분	빈도	비율(%)
15명 이내	56	48.7
16 - 30명	11	9.6
31 - 45명	20	17.4
46 - 60명	22	19.1
61명 이상	6	5.2
전체	115	100.0

나. 적절한 위탁 소년의 숫자

6호 처분 시설은 일반적으로 소년원보다는 적은 숫자이지만 청소년회복센터보다는 많은 인원수를 수용하고 있다. 실무자들이 인식하는 적정 인원수에 대한 문항에서 35.7%는 15명 이내라고 응답하였으며, 24.3%는 46~60명, 22.6%는 31~45명, 10.4%는 16명~30명, 7%는 61명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위의 항목에서 현재 관리하는 소년의 숫자와 동일한 순위를 보이고 있다. 15명 이내의 소규모가 바람직 하지만, 30명~60명 정도 수준도 적당하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의 규모가 확보가 되어야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는 심층면접 의견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표 4-52〉 6호처분 시설에서 관리해야 할 적정 위탁소년 수

구분	빈도	비율(%)
15명 이내	41	35.7
16 - 30명	12	10.4
31 - 45명	26	22.6
46 - 60명	28	24.3
61명 이상	8	7.0
전체	115	100.0

다. 시설 운영의 어려운 점

6호 처분이라는 시설의 어려운 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문제점으로 제시된 8가지 사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를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문제로 인식하는 정도가 4점을 넘지 않아서 각 항목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으며,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는 사안은 ‘예산상의 어려움’ (3.72)였으며, ‘사후관리의 어려움’(3.53), ‘지역별 6호 처분시설 설치의 불균형’(3.46), ‘비행청소년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전문가의 부재’(3.06) 순이었다. 반면에 ‘그렇다’라고 응답하지 않은 3점 이하 응답으로는 ‘표준화된 규율이나 규칙의 부재’(2.53), ‘청소년의 비행성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의 부재’(2.87), ‘지역사회 또는 유관부처/기관과의 연계미흡’(2.92)이었다. 이는 시설장 심층면접에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6호 처분 시설에 표준화된 동일한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각 시설은 시설에 맞는 내부 규율과 규칙을 가지고 있고, 비행성보다는 인성이나 관계회복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과 일치되는 결과이다.

〈표 4-53〉 시설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점

(단위: 명,%)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지역별 6호 처분시설 설치의 불균형	3 (2.3)	20 (15.2)	41 (31.1)	49 (37.1)	19 (14.4)	3.46	.99
예산상의 어려움	4 (3.0)	8 (6.0)	41 (30.6)	49 (36.6)	32 (23.9)	3.72	.99
비행청소년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전문가 부재	4 (3.0)	41 (30.4)	44 (32.6)	35 (25.9)	11 (8.1)	3.06	1.01
청소년의 비행성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 부재	11 (8.2)	47 (35.1)	33 (24.6)	35 (26.1)	8 (6.0)	2.87	1.08
보호소년이 6호처분을 처벌로 인식하지 않는 문제	9 (6.7)	37 (27.6)	35 (26.1)	30 (22.4)	23 (17.2)	3.16	1.20
표준화된 규율이나 규칙의 부재	24 (17.9)	49 (36.6)	36 (26.9)	16 (11.9)	9 (6.7)	2.53	1.12
사후관리의 어려움	2 (1.5)	19 (14.1)	42 (31.1)	50 (37.0)	22 (16.3)	3.53	.98
지역사회 또는 유관부처/기관과의 연계 미흡	14 (10.4)	28 (20.7)	56 (41.5)	29 (21.5)	8 (5.9)	2.92	1.04

라. 현재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

현재 6호 처분 시설은 시설 내에서 학과 공부와 기타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외부의 자원을 활용하거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10개의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해 얼마큼 도움이 되는지를 질문하였으며, 답변으로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 '별로 도움이 안된다', '보통이다', '대체로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등 5점 척도를 제시하였으며,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도 제시하였다. <표 4-54>를 살펴보면 모든 프로그램들이 4점을 넘었으므로, 종사자들은 현재 모든 프로그램들이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종사자들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교과/학습교육(검정고시)'로 4.83이며, '개인 및 집단 상담'이 4.59, '생활지도'가 4.56, '문화/체험활동'이 4.49였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인 프로그램은 '종교교육'이 4.03, '비행예방교육'이 4.25였다. 특히 '종교교육'의 경우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6.1%로 가장 높은 퍼센트를 차지하였다. 실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종교교육'이 가장 높은 12%, 비행예방교육이 2.3%, 생활지도, 직업/진로교육, 개인 및 집단상담, 스포츠 활동이 각각 0.7%였다.

<표 4-54>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는 정도

(단위: 명, %)

항목	전혀 도움이 안된다	별로 도움이 안된다	보통 이다	대체로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실시 하 지 않음	평균	표준 편차
교과/학습 교육(검정고시)	-	2 (1.5)	4 (3.0)	9 (6.7)	119 (88.8)	-	4.83	.54
직업/진로교육	-	2 (1.5)	16 (11.9)	53 (39.6)	62 (46.3)	1 (.7)	4.32	.74
개인 및 집단상담	-	1 (.7)	9 (6.7)	34 (25.4)	89 (66.4)	1 (.7)	4.59	.65
부모 및 가족상담	-	3 (2.2)	15 (11.2)	43 (32.1)	73 (54.5)	-	4.39	.77
심리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	1 (.7)	22 (16.4)	42 (31.3)	69 (51.5)	-	4.34	.78
스포츠활동	-	-	20 (14.9)	45 (33.6)	68 (50.7)	1 (.7)	4.36	.73
문화체험활동	-	-	13 (9.7)	42 (31.3)	79 (59.0)	-	4.49	.67

항목	전혀 도움이 안된다	별로 도움이 안된다	보통 이다	대체로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실시 하 지 않음	평균	표준 편차
종교교육	1 (.8)	7 (5.3)	27 (20.3)	35 (26.3)	47 (35.3)	16 (12.0)	4.03	.98
비행예방교육	-	-	27 (20.3)	43 (32.3)	60 (45.1)	3 (2.3)	4.25	.78
생활지도	-	-	13 (9.7)	33 (24.6)	87 (64.9)	1 (.7)	4.56	.67

마. 6호 시설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프로그램

6호 시설 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8개 프로그램이 제시 되었으며, 중요도 순으로 3개까지 순위를 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체험활동(4.3%)과 사후관리(7.0%)을 제외하고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10%대의 응답으로 고르게 제시되었다. 가장 높은 응답은 '비행예방교육'(17.3%), '심리치료'(17%), '부모 및 가족상담'(16.8%), '개인 및 집단상담'(14.5%), 교과/학습교육(검정고시)(13.3%), 직업/진로교육(10.0%) 순이었다. 그들이 관리·감독하는 대상자가 비행청소년이기 때문에 그 어떤 프로그램 보다도 '비행예방교육'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이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표 4-55〉 6호처분 시설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프로그램(중복응답)

구분	빈도	비율(%)
교과/학습 교육(검정고시)	53	13.3
직업/진로교육	40	10.0
개인 및 집단상담	58	14.5
부모 및 가족상담	67	16.8
심리치료	68	17.0
비행예방교육	69	17.3
체험활동	17	4.3
사후관리	28	7.0
전체	400	100.0

순위별로 살펴보면 다소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1순위로는 '심리치료'가 가장 높은 30.6%이며, '비행예방교육'이 21.6%, '개인 및 집단 상담'이 17.2%였다(〈표 4-56〉).

위에서 제시된 전체 응답에서 비행예방교육과 심리치료가 0.3% 정도의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을 고려한다면 가장 높은 빈도로 제시된 것은 비행예방이지만, 종사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소년사범들의 심리치료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종사자들이 6호 처분의 목적이 치유와 회복이라고 제시한 것과 일치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심리치료를 통한 소년들의 치유와 회복을 이뤄내겠다는 인식으로 분석된다. 2순위로는 '비행예방교육'(21.1%)(<표 4-57>), 3순위로는 '부모/가족상담과 진로/직업교육'이 동일하게 17.3%로 가장 높게 제시되었다(<표 4-58>).

〈표 4-56〉 6호처분 시설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프로그램 1순위

구분	빈도	비율(%)
교과/학습 교육(검정고시)	16	11.9
직업/진로교육	2	1.5
개인 및 집단상담	23	17.2
부모 및 가족상담	17	12.7
심리치료	41	30.6
비행예방교육	29	21.6
체험활동	2	1.5
사후관리	4	3.0
전체	134	100.0

〈표 4-57〉 6호처분 시설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프로그램 2순위

구분	빈도	비율(%)
교과/학습 교육(검정고시)	20	15.0
직업/진로교육	15	11.3
개인 및 집단상담	17	12.8
부모 및 가족상담	27	20.3
심리치료	20	15.0
비행예방교육	28	21.1
체험활동	3	2.3
사후관리	3	2.3
전체	133	100.0

〈표 4-58〉 6호처분 시설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프로그램 3순위

구분	빈도	비율(%)
교과/학습 교육(검정고시)	17	12.8
직업/진로교육	23	17.3
개인 및 집단상담	18	13.5
부모 및 가족상담	23	17.3
심리치료	7	5.3
비행예방교육	12	9.0
체험활동	12	9.0
사후관리	21	15.8
전체	133	100.0

바. 6호 시설에 도입이 필요한 프로그램

현재 6호 시설에서 운영되지는 않지만 어떠한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주관식 질문이 제시되었으며, 코딩과정에서 각 답변은 9개 공통적인 항목으로 범주화 되었다. 가장 많이 제시된 프로그램은 ‘심리지원 및 치료’(29.5%)였으며, ‘문화/스포츠 활동’(27.3%), ‘퇴소 이후 사례관리’(13.6%), ‘진로체험 프로그램’(11.4%), ‘퇴소 후 학습연계가 가능한 교육프로그램’(6.8%), ‘의료지원’(6.8%), ‘비행청소년 예방프로그램’(2.3%), ‘법률교육’(2.3%) 순이었다(〈표 4-59〉). 이는 시설에 수용된 소년사범들의 심리적, 정서적인 문제에 대한 지원이 가장 시급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상담이나 학과 교육 외에도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문화/스포츠 활동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표 4-59〉 6호처분 시설에서 도입이 필요한 프로그램

구분	빈도	비율(%)
퇴소 이후 사례관리	6	13.6
진로체험 프로그램	5	11.4
퇴소 후 학습연계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	3	6.8
문화, 스포츠 활동	12	27.3
비행청소년 예방프로그램	1	2.3
심리지원 및 치료	13	29.5
법률교육	1	2.3
의료지원	3	6.8
전체	44	100.0

사. 종사자의 전문성과 교육

국/내외 선행연구는 중간처우 시설 종사자들이 비행 청소년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함을 주장한다(Dishion et al., 1996). 이에 대해 종사자의 자질을 진단하기 위해 종사자는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비행/범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어야 하는지, 또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정기적인 교육의 실시와 특정분야 자격증 보유가 필요한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응답으로는 5점 척도가 제시되었다. <표 4-60>의 결과에서 보듯이 종사자의 자질에 대해 ‘종사자는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한다’는 4.59로 94.8%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종사자는 없었다.

반면에 ‘종사자는 비행/범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춰야한다’라는 항목은 3.99로 76.3%가 동의하기는 했지만, 5.1%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는 ‘정기적 교육 실시’가 4.41로 89.6%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없었다. 특정분야의 자격증 보유는 3.83으로 67.4%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9%였다. 종사자들은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정기적 교육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4-60〉 종사자의 전문성과 교육

(단위: 명, %)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종사자는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한다	-	-	7 (5.2)	41 (30.4)	87 (64.4)	4.59	.59
종사자는 비행/범죄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춰야 한다	1 (.7)	6 (4.4)	25 (18.5)	64 (47.4)	39 (28.9)	3.99	.85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기적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	-	14 (10.4)	52 (38.5)	69 (51.1)	4.41	.67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특정분야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	8 (5.9)	36 (26.7)	62 (45.9)	29 (21.5)	3.83	.83

아. 보호소년을 관리·감독하는데 어려운 점

설문조사에 참여한 종사자들은 보호소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하며 그들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 가운데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한 6가지 문항이 제시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는 5점 척도가 주어졌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4점을 넘는 문항이 없어서 종사자들은 보호소년을 관리·감독하는데 매우 어렵다는 응답은 하지 않았다.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온 항목은 '보호소년이 거짓말, 규칙 미준수 등 시설 부적응 행동을 하는 점'이 3.66이었으며, '보호소년의 폭력성(언어/신체폭력)'이 3.47점, '보호소년이 학업/진로에 대한 의욕이 없는 점'이 3.45, '보호소년이 가족과 관계가 나쁜 점'이 3.37, '보호소년이 시설 내 친구와 관계가 나쁜 점'이 3.37 순으로 전반적으로 소년의 비행성이 종사자들에게 어려운 점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반면에 '보호소년이 마음을 열지 않는 점'은 2.99로 과반수 이상(51.8%)이 보통이거나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6호 처분이 소년원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응답한 '보호소년과 교사와의 관계성'이라는 장점에서 오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표 4-61〉 보호소년 관리·감독 어려운 점

(단위: 명, %)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보호소년이 가족과의 관계가 나쁜 점	2 (1.5)	17 (12.7)	53 (39.6)	53 (39.6)	9 (6.7)	3.37	.85
보호소년이 시설 내 친구와의 관계가 나쁜 점	2 (1.5)	32 (23.7)	45 (33.3)	41 (30.4)	15 (11.1)	3.26	.99
보호소년이 거짓말, 규칙 미준수 등 시설부적응 행동을 하는 점	2 (1.5)	20 (14.8)	40 (29.6)	33 (24.4)	40 (29.6)	3.66	1.10
보호소년이 마음을 열지 않는 점	8 (5.9)	37 (27.4)	49 (36.3)	31 (23.0)	10 (7.4)	2.99	1.02
보호소년의 폭력성(언어, 신체폭력)	4 (3.0)	28 (20.7)	38 (28.1)	31 (23.0)	34 (25.2)	3.47	1.16
보호소년이 학업/진로에 대한 의욕이 없는 점	2 (1.5)	13 (9.6)	62 (45.9)	38 (28.1)	20 (14.8)	3.45	.91

자. 지역사회 및 관련기관

지역사회 교정이며 중간처우인 6호 처분은 수용된 소년사범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궁극적인 목표인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야 하며 관련 기관간의 협력이 중요한 요인이다. 지역사회와의 협력, 구체적인 관련 기관과의 협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12개 항목이 조사되었으며 각 항목에 대해 5점 척도가 답변으로 주어졌다. <표 4-62>을 살펴보면,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있다'라는 항목에서는 평균이 4.0으로 74.8%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3.7%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으며,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항목은 3.87로 71.1%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4.4%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다'는 4.41로 79.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1.5%만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 결과를 통해 6호 처분 시설이 중간처우가 지향하는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어느 정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외국의 연구를 살펴보면 중간처우 시설이나 교정시설에 대한 낙인현상으로 인해 그룹홈이나 6호 시설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한 우려가 논의되고 있다(Latessa et al., 2010).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지역사회에서 비행청소년 시설이라고 기피한다'라는 응답은 2.24로 3.7%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62.2%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시민의식이 성숙되었다는 분석보다는, 시설장 심층면접에서 "굳이 본 시설이 비행청소년을 수용한 시설이라고 지역사회에 밝히지 않는다"는 의견에 비추어 볼 때, 지역주민들이 본 시설이 소년사범을 위탁 수용하는 시설이라고 인지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학교밖 지원센터, 청소년 상담 센터와 같은 타기관, 법원, 법무부, 보호관찰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경찰 등 관련 기관과의 협조에 대한 인식도 조사되었다. 나열된 기관 중에서 가장 협조가 잘된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기관은 법원(4.44)으로 88.9%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0.7%만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보호하는 소년사범들이 법원을 통해 배치되고 있으며, 판사나 법원 관계자가 정기적으로 시설을 방문하는 관례를 고려한다면 가장 협조가 잘되는 기관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보호관찰소(4.36)으로 88.2%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는 소년보호 처분에서 4.6호, 5.6호 병합처분이 이루어지므로, 시설에서 보호하는 소년사범이 보호관찰을 함께 받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보호관찰소와의 협력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¹⁸⁾. 이외에 '학교밖 지원센터나 청소년 상담센터와의 협력'(4.11), 6호 시설에 대한 예산을 배정해주는 지자체와는 3.93, 아동보호치료시설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와는 3.81, 법무부와는 3.77, 경찰과는 3.76 이었다. 가장 협조가 낮은 부서는 여성가족부로 3.19였으며, 대상자의 20%가 협조가 잘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표 4-62〉 지역사회 및 관련기관과의 연계

(단위: 명, %)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지역사회와 교류가 있다.	-	5 (3.7)	29 (21.5)	62 (45.9)	39 (28.9)	4.00	.81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	1 (.7)	5 (3.7)	33 (24.4)	67 (49.6)	29 (21.5)	3.87	.81
지역사회에서 비행청소년 시설이라고 기피한다.	24 (17.8)	60 (44.4)	46 (34.1)	4 (3.0)	1 (.7)	2.24	.81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다.	-	2 (1.5)	26 (19.3)	62 (45.9)	45 (33.3)	4.11	.76
지역사회 타 기관과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	2 (1.5)	25 (18.5)	64 (47.4)	44 (32.6)	4.11	.75
법원과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	1 (.7)	14 (10.4)	45 (33.3)	75 (55.6)	4.44	.71
법무부와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2 (1.5)	5 (3.7)	45 (33.6)	52 (38.8)	30 (22.4)	3.77	.89
보호관찰소와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	3 (2.2)	13 (9.6)	51 (37.8)	68 (50.4)	4.36	.75
보건복지부와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	8 (5.9)	46 (34.1)	45 (33.3)	36 (26.7)	3.81	.90
여성가족부와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10 (7.4)	17 (12.6)	60 (44.4)	33 (24.4)	15 (11.1)	3.19	1.04
지자체와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	6 (4.5)	35 (26.1)	56 (41.8)	37 (27.6)	3.93	.85
경찰과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1 (.7)	10 (7.4)	43 (31.9)	47 (34.8)	34 (25.2)	3.76	.94

18) 가장 최근 통계인 2015년도 소년보호사건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6호 처분만을 받은 소년은 2명이었으며, 단기보호관찰인 4호와 6호 병합처분이 46명, 장기보호관찰 5호와 6호 병합처분이 883명이었다(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6. p.607).

차. 기타 업무협조가 필요한 기관과 업무내용

위에서 제시한 관련 기관 외에 실무를 담당하는 종사자로서 업무 협조가 필요한 기관은 어디이며, 그 업무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주관식 문항이 주어졌으며, 코딩 과정에서 13개 답변으로 범주화 되었다. 가장 높은 응답은 교육청으로 대상자의 17.4%가 제시하였다(〈표 4-63〉). 만약 보호소년이 학교를 그만두지 않았다면 6호 시설에 있는 동안은 출석이 인정된다. 만약 학업을 그만 두었다 하더라도 6호 시설은 보호소년들에게 검정고시의 형태이든 학업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기관장 심층면접을 통해 학교와 교육청의 무관심과 몰이해가 제기되었다. 또한 다음 문항에서 질문한 이유를 살펴본다면 〈표 4-64〉에 제시된 바대로 '퇴소 후 학습연계'(23.5%), '진로 및 취업정보제공'(26.5%) 등 출원하는 소년사범의 미래를 위해 학교가 중요한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중간처우 시설을 감사하는 기관이 교육청인 점을 고려한다면 6호 시설의 보호소년들에 대한 교육부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 다음으로는 법무부가 15.2%로 이는 다음의 문항에서 조사된 필요한 이유 가운데 '전문적인 범죄예방교육'의 필요성과 연결지어 해석될 수 있다. 법무부 산하 범죄예방 정책국이 제시하는 다양한 범죄예방 프로그램에 6호 처분 시설의 소년들이 참여할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13%의 응답자는 '직업기술학교', '노동부'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다음의 필요성 항목에서 '진로 및 취업정보 제공'이 가장 높은 응답인 26.5%인 것과 일치되는 결과이다. 교육부의 학업지원과 함께, 보호소년이 출원 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기술 교육과 지원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병원 역시 동일하게 13%의 응답자가 제시하였는데 이는 필요성에서 11.8%가 '진료상담 및 치료'라고 응답한 것과 일치된다.

이외에 상담센터(6.5%)는 '체계적인 상담의 필요성'(14.7%)과 연결된다. 이외에 지역공공시설(4.3%)은 '외부활동시 적극적인 협조의 필요성'(5.9%), 건강증진센터(4.3%)는 '진료상담 및 치료의 필요성'(11.8%), 분류심사원(4.3%), 보호관찰소(4.3%)와 아동보호전문기관(2.2%)은 '돌발 상황 및 긴급상황 발생시 대상아동 격리 필요성(5.9%)'으로 연결될 수 있겠다.

〈표 4-63〉 기타 업무 협조 및 연계가 필요한 기관

구분	빈도	비율(%)
지역 공공시설	2	4.3
건강증진센터	2	4.3
법무부	7	15.2
교육청	8	17.4
분류심사원	2	4.3
노동부	6	13.0
보호관찰소	2	4.3
굿네이버스	1	2.2
직업기술학교	6	13.0
아동보호전문기관	1	2.2
병원	6	13.0
상담센터	3	6.5
전체	46	100.0

〈표 4-64〉 기타 업무 협조 및 연계가 필요한 기관: 사유

구분	빈도	비율(%)
환경개선	3	8.8
돌발상황 및 긴급상황 발생시 대상아동 격리필요	2	5.9
외부 활동시 적극적 협조	2	5.9
퇴소 후 학습연계	8	23.5
진로 및 취업정보 제공	9	26.5
전문적인 유괴예방교육	1	2.9
진료 상담 및 치료	4	11.8
체계적인 상담	5	14.7
전체	34	100.0

카. 사후관리의 형태

6호 시설에서의 긍정적인 변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현재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4가지 답변이 주어졌다. 각 항목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면 〈표 4-65〉와 같다. 1.2%만이 사후관리를 못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형태는 61.4%로 '전화/문자/SNS 등으로 안부 확인'하는 것이었으며, 21.7%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다른 시설에 연계'였

으며, 13.3%는 ‘지역사회의 다른 시설 및 프로그램에 연계’였다. 이 외에 ‘직원의 가정 방문 등 정기적 대면상담’은 1.8%, ‘기타’는 0.6%였다.

〈표 4-65〉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에 대한 사후관리 형태(중복응답)

구분	빈도	비율(%)
전화, 문자, SNS 등으로 안부 확인	102	61.4
재단에서 운영하는 다른 시설에 연계	36	21.7
지역사회의 다른 시설 및 프로그램에 연계	22	13.3
직원의 가정방문 등 정기적 대면상담	3	1.8
사후관리를 전혀 못함	2	1.2
기타	1	0.6
전체	166	100.0

타. 구체적인 사후관리 방법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주관식 문항이 주어졌으며 각 답변은 코딩 과정에서 5가지로 범주화 되었다. 과반수인 57.3%는 ‘전화/문자/SNS로 안부 확인 및 상담’이었으며, 18.7%는 ‘자립기관과 연계하여 직업교육을 시킨다’라고 응답하였으며, 14.7%는 ‘담임이 진로를 관리한다’라고 응답하였다. ‘퇴소자 모임을 한다’라는 응답은 6.7%였으며, ‘장학금 지급 및 지역사회 연계’는 2.7%였다.

〈표 4-66〉 사후관리의 방법

구분	빈도	비율(%)
자립기관과 연계하여 직업교육	14	18.7
담임이 진로 관리	11	14.7
전화, 문자, SNS로 안부확인 및 상담	43	57.3
장학금 지급 및 지역사회 연계	2	2.7
퇴소자모임	5	6.7
전체	75	100.0

4. 6호 처분시설의 개선방안

현재 6호 처분시설은 아동복지시설의 일환인 아동보호치료시설이며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다. 예산은 지자체를 통해 지원받으며, 법원에서 위탁한 아동들을 수용하고 있고, 법원에서 각 아동에 대한 일정 금액을 지원받고 있다.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소년사범들은 모두 법무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6호 처분 시설의 법무부 관할이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현재 6호 처분 시설 종사자들의 인식하는 6호 처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향후 6호 처분 시설의 관리·감독 기관과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하였다.

가. 6호 처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국·내외 선행연구를 토대로 6호 처분의 문제점과 개선해야할 사안 10가지에 대한 문항이 제시되었으며,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의 답변이 제시되었다. <표 4-67>을 살펴보면 10가지 항목에 대한 답변에 대한 평균은 모두 3.18에서 4.08 사이로 각 사안에 대해 대체로 그렇다고 인식하고는 있지만 매우 그렇다고 심각하게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10가지 사안 중에 가장 강하게 동의하는 사안은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보호력 및 지원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및 자원연계가 필요하다’(4.08)에 ‘그렇다’는 응답이 80.5%로, 6호 처분 활성화를 위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일반 아동복지시설과 달리 보호하는 아동·청소년들이 모두 비행청소년인 관계로 학교를 가는 등 외부 출입이 제한된 상황에서 시설 내부에서 학과교육, 직업교육,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어야 하는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의 협력과 자원연계는 보호소년에 대한 성공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필수적인 사안이다. 이러한 이유는 ‘운영예산의 지원문제를 해결해야한다’(4.08)로 76.5%가 그렇다고 응답한 항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로서, 특수한 상황에서 일반 아동복지시설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점이 현재 고려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가지 사안 다음으로는 ‘시설의 노후부분 개선’(3.92)에 대해 75.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현재 7개 시설이 기존에 오랜 시간 동안 아동복지시설로 운영되다가 아동보호치료시설로 시설 전환한 사례가 많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간처우의 특성상 지역사회 자원 활용이 용이한 도심 내에 위치해야 하는데 비용의 한계로 인해 낙후된 건물에 위치할 수 밖에 없으며 혹은 비용이 저렴한 외곽지역에

위치 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외에 ‘직원의 전문성을 향상해야 한다’(3.86), ‘프로그램의 질적인 면이 개선되어야 한다’(3.62), ‘비행성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3.62), ‘6호 처분 대상자 선별을 위한 표준화된 도구가 개발되어야 한다’(3.62), ‘보호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3.36)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지지를 얻은 문항은 ‘프로그램이 양적인 면에서 개선되어야 한다’(3.01)로 30.9%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모든 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표준화된 규율, 규칙이 마련되어야 한다’(3.18)도 30.9%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표 4-67〉 6호처분이 활성화되기 위한 개선방안

(단위: 명, %)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시설의 노후부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6 (4.5)	3 (2.3)	24 (18.0)	62 (46.6)	38 (28.6)	3.92	.98
프로그램이 양적인 면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7 (5.3)	35 (26.3)	50 (37.6)	32 (24.1)	9 (6.8)	3.01	1.00
프로그램의 질적인 면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8 (6.0)	11 (8.3)	33 (24.8)	53 (39.8)	28 (21.1)	3.62	1.09
운영예산의 지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3 (2.3)	4 (3.0)	24 (18.2)	50 (37.9)	51 (38.6)	4.08	.95
직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	6 (4.5)	36 (27.1)	61 (45.9)	30 (22.6)	3.86	.81
모든 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표준화된 규율, 규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7 (5.3)	37 (28.0)	34 (25.8)	33 (25.0)	21 (15.9)	3.18	1.16
비행성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한다.	3 (2.3)	13 (9.8)	44 (33.1)	44 (33.1)	29 (21.8)	3.62	1.00
6호 처분에 적절한 대상 청소년 선별을 위한 표준화된 도구가 개발되어야 한다.	4 (3.0)	17 (12.9)	31 (23.5)	53 (40.2)	27 (20.5)	3.62	1.05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보호력 및 지원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및 자원연계가 필요하다.	-	4 (3.0)	22 (16.5)	67 (50.4)	40 (30.1)	4.08	.76
보호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	9 (6.8)	26 (19.5)	34 (25.6)	36 (27.1)	28 (21.1)	3.36	1.21

나. 6호 처분 시설의 관리·감독 기관

앞서 논의된 바대로 6호 처분 시설의 주무 관리·감독 기관을 법무부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비행청소년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면에서 법무부의 관리를 찬성하는 의견도 있지만, 중간처우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복지적 접근, 다양한 처우 형태가 필요하다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6호 처분 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할 기관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에 대한 이유를 질문하였다. 이유에 대한 답변은 주관식으로 주어졌으며 코딩과정에서 8개 항목으로 범주화 되었다. <표 4-68>를 보면 적합한 관리·감독에 대해 가장 높은 응답은 ‘현행처럼 법원에서 지정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관리·감독한다’로 74.8%의 응답자가 답변하였으며, 13%는 법무부를, 5.3%는 법원, 4.6%는 보건복지부, 1.5%는 기타기관, 0.8%는 지자체를 통합 관리·감독 기관으로 제시하였다.

<표 4-68> 향후 6호 처분 대상 보호소년의 관리·감독 관할

구분	빈도	비율(%)
현행처럼 법원에서 지정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관리·감독한다.	98	74.8
보건복지부에서 통합 관리·감독한다.	6	4.6
법원에서 통합 관리·감독한다.	7	5.3
법무부에서 통합 관리·감독한다.	17	13.0
지자체에서 통합 관리·감독한다.	1	.8
통합 관리·감독 기관이 필요 없다.	-	-
기타	2	1.5
전체	131	100.0

<표 4-69>를 살펴보면 보건 복지부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답변들이 제시되었는데, ‘복지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가 41.9%, ‘현행처럼 유지, 보건 복지부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16.1%, ‘통합된 곳에서 책임지고 관리 감독 필요함’이 12.9%, ‘현 상황에 만족’이 12.9%, ‘민간 복지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자율화’가 11.3%였다. 법무부(13%)를 제시한 이유로는 ‘법무부가 대상 아동 들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가 1.6%였다. 법원(5.3%)을 제시한 이유로는 ‘보건복

지부 관리감독에 부정적이며, 법원에서 보호감독에 더 집중할 필요성이 있어서'가 1.6%였다.

〈표 4-69〉 향후 6호 처분 대상 보호소년의 관리·감독 관할 이유

구분	빈도	비율(%)
통합된 곳에서 책임지고 관리감독 필요함	8	12.9
현행처럼 유지, 보건복지부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10	16.1
복지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26	41.9
교사의 인권도 중요하다	1	1.6
민간 복지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자율화	7	11.3
보건복지부 관리 감독에 부정적. 법원에서 보호감독에 더 집중할 필요성이 있음.	1	1.6
현 상황에 만족	8	12.9
법무부가 대상아동들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1	1.6
전체	62	100.0

5. 소결

7개 기관에서 총 135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특성, 6호 처분에 대한 인식, 시설 운영에 대한 인식, 6호 시설의 개선 방안 등 총 36개 항목이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녀가 고르게 참여하였으며, 30~40대가 64.2%로 가장 많았다. 본 시설 재직기간은 1년~3년 미만이 29%로 가장 많았으며, 해당 분야 재직기간은 7년 이상이 27.9%로 가장 많았다. 학력으로는 대학재학·졸업이 65.4%였으며, 69.6%의 응답자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가장 많은 49.3%가 생활지도를 담당하고 있었다.

6호 처분이 추구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29.6%가 회복과 치유라고 응답하였으며, 소년원과 구별되는 특성으로는 90.8%가 '직원과 보호소년과의 관계성'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청소년회복센터와 구별되는 점에서는 80% 이상의 응답자가 수용인원과 시설에서 프로그램이 가능한 점을 제시하였다. 6호 시설에 적합한 대상자 선별기준으로는

가정의 보호력, 대상자의 비행유형과 비행경력을 중요하게 제시하였다. 현재 담당하는 소년의 수에 관해서는 15명 이내가 가장 많았으며(48.7%), 적절한 위탁 소년의 수도 35.7%가 15명 이내라고 응답하였지만 30명~60명 정도도 가능하다는 응답도 40%를 넘었다. 시설운영의 어려운 점으로는 예산상의 어려움과 사후관리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현재 운영되는 프로그램 중에서는 교과/학습교육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비행예방교육, 심리치료, 부모 및 가족 상담이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심리지원 및 치료 프로그램과 문화/스포츠 활동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종사자는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하며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기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호소년 관리감독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보호소년이 거짓말하고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점, 폭력성 등을 제시하였다.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도움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원과의 협조가 가장 잘 이루어지며, 여가부와의 협조가 가장 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보호소년의 교육과 진로, 비행예방 교육을 위해 교육청, 법무부, 노동부, 직업기술학교와의 협조와 연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사후관리는 주로 전화, 문자, SNS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6호 처분 활성화를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문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자원연계, 노후된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관리·감독은 현행 대로 보건복지부가 해야 하며 그 이유로는 복지적 접근의 필요성, 민간 복지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자율화 등을 제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6호 처분 기관인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지역사회 교정이 지향하는 사회와의 소통, 지역사회 자원 활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복지적 관점에서 수용된 보호소년과의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소년들의 치유와 회복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충분한 예산의 확보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 관련 기관의 협조,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의 모색은 6호 처분 시설의 목표를 성취하고 출원하는 소년의 재범억제를 위해 필요한 사안이다.

제3절 시설장 및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분석

1. 조사방법

중간처우시설인 6호 처분 아동보호치료시설의 목표를 달성하고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7개 시설의 시설장과 실무 및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이 실시되었다. 본 심층면접은 7개 시설 종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나지 않은 심도 깊은 의견과 정보를 이끌어 낼 것이다. 국·내외 선행연구를 토대로 중간처우의 문제를 보완하고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조사내용이 설정되었다. 설문조사의 내용을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해 조사 내용은 최대한 설문조사 내용과 유사하게 구성되었다. 조사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중간처우로서 6호 처분의 목표
2. 6호 처분과 8·9·10호처분(소년원)과의 차별성
3. 6호 처분과 1호처분(청소년회복센터)의 차별성
4. 6호 처분에 가장 적합한 대상자 선별기준
5. 6호 처분에 가장 적합한 기간
6. 6호 시설 종사자가 갖춰야할 소양과 자질
7. 6호 시설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8. 6호 시설에서 가장 중요하게 시행되어야 할 프로그램
9. 퇴소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후관리
10.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협조
11. 관련 국가기관과의 연계와 협조
12. 6호 처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13. 통합 관리·감독의 주체

2017년 7월부터 8월 두 달간 전국에 있는 7개 6호 처분 시설에 대한 조사를 위해 방문이 이루어졌으며, 해당 시설에서 3~4시간 동안 시설장 (혹은 사무장)과의 심층면접이 실시되었다. 판사와 6호처분 시설 운영 경험이 있는 청소년복지센터 센터장과

학자 등 실무계 및 학계 전문가에 대한 면접은 9월 한달 동안 이루어졌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인원은 총 12명으로 직위, 성별, 연령대, 학력, 보유한 자격증 등은 다음과 같다.

〈표 4-70〉 심층면접 참여자

	직위	성별	연령대	학력	자격증
1	시설장	남	40대	석사	교사자격증
2	시설장	여	40대	박사수료	교사, 사회복지사
3	시설 사무국장	여	40대	대졸	사회복지사
4	시설장	남	50대	석사	사회복지사
5	시설장	남	50대	대졸	사회복지사
6	시설장	남	50대	대졸	사회복지사
7	시설 사무국장	여	50대	고졸	사회복지사
8	판사	남	50대	대졸	
9	판사	여	40대	대졸	
10	상담센터장	남	50대	대졸	
11	교수	여	50대	박사	
12	연구원	여	50대	박사	

2. 실무자 및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분석

가. 중간처우로서 6호 처분의 성격

1) 6호처분의 목표

6호 처분의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은 6호 처분이 나아가야 할 길, 운영방안의 기본 토대가 될 것이다. 이는 중간처우로서의 정체성을 수립하고 다른 소년사범 기관과의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7명의 시설장과 5명의 실무자와 전문가 모두 공동적으로 제시한 목표는 복지적 관점으로 접근한 치유와 회복이었다. 시설장과 전문가들은 복지, 치유, 회복이라는 공통적인 키워드 외에도, 도움, 지원, 보살핌, 공동체, 교정 등이 본 시설의 목표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우리 센터의 미션이 ‘청소년이 안고 있는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그들이 안고 있는

어려움을 도와서 자신과 사회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고 착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입니다. <사례 1>

보살피고 치료하고 끌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변화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우리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례 6>

다수의 시설장과 전문가들은 이 아이들의 가정과 학교에서 소외된 일종의 피해자이므로 건강한 어른들과의 관계성을 통해 상처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정과 학교의 문제가 총체적으로 나타난 아이들입니다. 학대당하고 방임당했던 아이들이 다른 사람한테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지요. 이곳이 안전한 곳이라는 신뢰감을 주고 건강한 관계성을 통해 아이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어야 합니다. <사례 2>

아이들 안에 선한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은 좋은 어른을 못 만났습니다. 우리는 좋은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고, 아이들의 상처를 회복시키고 신뢰를 회복해주어야 합니다.

<사례 1>

아이들이 잘못되지 않았어요. 좋은 부모 밑에서 양육 받았으면 저렇게 되지 않았겠죠.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돈 벌려고 술, 담배팔고, 문신 새기고, 성을 사고... 아이들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다려 줘야 합니다. <사례 3>

1명의 시설장은 시설의 목표는 처벌이 아니라고 명시하였다

우리는 중간처우 기관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처벌이 아니에요. 처벌이라는 생각자체를 안합니다. 강하게 처벌하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폐쇄형 시설과 중간처우의 재범률이 비슷하다면 우리 같은 중간처우 시설에서 아이들이 생활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사례 4>

또 다른 시설장은 형사사법에서 사용하는 징계와 시설에서 사용하는 징계는 다름을 강조하였다.

징계에 대한 정의가 다릅니다. 징계란 사랑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를 통해 잘못을 깨닫게 해주고, 피해자와 화해를 하고 관계 회복을 시켜

줘야 합니다. <사례 5>

한 학계 전문가는 치유, 회복도 언급함과 동시에 중간처우는 낙인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중간처우의 목표는 수용시설에 대한 낙인효과 감소입니다. <사례 12>

2) 6호 처분과 소년원과의 차별성

21세기 교정이 추구하는 바는 처분의 다양성, 개별화/맞춤화된 처우이다. 천편일률적인 처우로는 다양한 사회의 다양한 특성을 가진 구성원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른 시설과는 다른 6호 처분시설 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른 기관과 특화된 점을 강화한다면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특성을 가진 소년사범에 대한 맞춤형, 개별화된 처우가 가능할 것이다. 현재 9·10호 처분은 폐쇄형 시설인 소년원이며 국가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6호 시설은 이른바 중간처우시설로서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은 민간단체(재단)가 운영하고 있는 이른바 아동 복지시설 중의 하나이다. 시설장과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소년원과의 다른 점에 대한 질문이 제시되었다.

공통적으로 나온 답변은 소년원과 달리 개방형 시설이다, 개별 처우가 가능하다, 융통성과 자율성이 있다, 소년들과 관계 형성이 가능하다, 공무원으로서 가지는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외부자원 참여가 가능하다, 아이들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가능하다 등이었다.

외부와 연계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맞춤형 개별 서비스가 가능하지요.

<사례 2>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요. 자원봉사자가 참여해서 협력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개별처우, 치유, 양육이 가능해지죠. <사례1>

우리는 사회복지사입니다. 공무원이 아니죠. 천편일률적으로 정해진 룰 대로 아이들을 대하지 않아요. 아이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접근합니다.

<사례 3>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어요. 사건사고에 책임져야 하잖아요. 자신의 직위를 보존해야 하니 아무래도 조심스럽죠.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그런 면에서 다소 자유롭죠. <사례 6>

사회복지적 관점으로 접근하니까,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자원과 서비스가 많아요. 공무원은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사례 3>

소년을 비행환경으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시킬 수 있고 소년으로 하여금 보호받는다든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게 할 수 있으며 적절한 식사, 운동, 교육 등 청소년기에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 한편 소년원에 비하여 국가시설수용이 주는 충격과 파괴적 영향이 덜하고 국가시설수용에서 생기는 범죄학습, 낙인효과도 상대적으로 적으며 사회생활과의 단절을 줄여 재사회화를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어요. <사례 9>

또한 시설 운영과 생활에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도 다른 점으로 제시하였다. 소년원 내부 규정은 법무부에서 개발한 것이므로 소년원생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6호 처분 시설은 시설 마다 자체적으로 내부 생활 규정과 규율을 개발하고 있으며, 규정 개발 시에 수용된 소년사범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이들이 밝고 만족도가 높아요. 그 이유는 주장을 하고, 의견을 낼 수 있으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죠. 소년원이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례 4>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 실시가 가능하여 다양한 맞춤형 처우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우리는 직원 공모전을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합니다. 직원들이 아이들의 필요와 요구를 알고 의견을 내는 것이지요. <사례 6>

저녁시간 활용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외부 자원 봉사자들이 들어와서 밤 9시까지 아이들과 함께 학습합니다. 중간처우라 가능한 거죠. <사례 1>

청소년회복센터와 아동보호치료시설은 기본적으로 가정 컨셉입니다. 저녁시간에 가정

의 컨셉으로 중요한 교육들이 이루어질 수 있죠. <사례 8>

3) 6호 처분과 청소년회복센터의 차별성

이른바 그룹홈이라고 불리우는 청소년회복센터는 1호처분 보호자 위탁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으며, 7~10명의 적은 인원이 위탁부모(운영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정집 형태이다. 현재 부산과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상의 지원시설로 인정받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1호에서 10호까지의 10개의 보호처분은 숫자가 커짐에 따라 점점 처벌의 강도가 강해지고 따라서 비행행태가 좀 더 강력해 진다고 인식되어진다. 그러나 현재 1호와 6호처분은 비행의 경중이라기보다는 시설의 수용 가능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동일한 중간처우로서 6호처분이 청소년회복센터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고찰은 각 처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향후 판사가 소년사범을 배치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될 것이다.

시설장과 전문가에게 청소년회복센터에 대한 설명을 한 후에 1호 처분 시설과 6호 처분 시설의 차이점을 질문하였다. 소년원 처우와의 차별성에 비해 1호 처분과의 차별성은 많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주로 제시된 점은 소규모, 가족적 분위기, 프로그램 수행의 가능성 여부 등이었다.

뭔가의 프로그램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될 것 같습니다. 또한 숫자가 어느 정도 될 때 그룹에서 오는 역동성이 있어요. <사례 1>

청소년회복센터가 좀 더 가족적이고 좀 더 밀접하게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례 6>

회복센터는 부모의 역할만 하는 것이고, 6호 시설은 부모와 함께 학교의 역할도 해야 하겠지요. <사례 8>

수용된 소년사범의 숫자 면에서도 장점이 있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교사, 관리자의 수 적인 면에서 장점, 재단으로 운영되는 장점도 제시되었다.

청소년회복센터는 위탁부모, 혹은 관리자가 집 전체를 운영하지만, 우리는 전문가들이 만든 공동체입니다. 동료들이 있고, 훈련받고 교육받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좀 더 체계화되고 전문화된 접근이 가능한 거죠. 더 나은 프로그램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늘 함께 고민합니다. <사례 2>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들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재단이 있다 보니 기본적인 것이 갖춰 있는데, 청소년회복센터는 예산에 제한이 있을 듯합니다.

<사례 5>

나. 6호처분 운영 관련 인식

1) 6호 처분에 가장 적합한 대상자 선별기준

앞서 논의된 바대로 1호와 6호 처분은 비행의 경중에 차이를 두어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수용가능한 시설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시설 배치가 결정된다. 현재 법원에서는 6호 처분 대상자를 선발하는데 있어서 명확한 선별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없다. 이러한 상황은 처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불공평하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 이에 6호 처분 시설을 실제로 운영하는 실무자로서 어떠한 아동·청소년들이 본 시설에 배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6호 시설에 적합한 소년사범으로는 가출력이 있는 아동·청소년, 가정의 보호력이 없는 아동·청소년,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아동·청소년 등이었다.

가정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가 관리가 안되고 오히려 괴롭히는 부모들 있잖아요. 가출을 심하게 하는 아이들은 청소년회복센터에 두면 또 나가니까 오히려 우리 시설이 더 나을 듯 합니다. 성매매 하는 아이들도 그렇구요.

<사례 4>

기본적으로, 소년원에 송치할 정도의 비행정도, 상습성에 이르지 아니한 소년으로서 보호자나 가족이 없거나 보호능력이 심히 부족한 경우를 대상으로 선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령과 비행정도가 높은 남자 소년의 경우는 주로 A시설에 보내고, 주로 성매매와 관련한 여자 소년의 경우는 주로 B시설에 보내는 등 보호시설 별로 적합한 대상자의 나이, 비행유형, 성격 등이 다소 다릅니다. <사례 9>

6호 처분 시설에 적합하지 않은 소년사범에 대해서는 지적장애, 정신병, 폭력성이

심각한 아동·청소년을 제시하였다.

정신장애는 본인도 힘들고 주변도 힘들어서 안됩니다. 조폭문화에 물든 아이, 상습적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 동성 행위를 하는 아이도 공동체 생활이 힘듭니다. <사례 6>

지능이 낮은 애들은 힘듭니다. 공동체 생활에서 힘의 논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지능 낮은 애들은 다른 아이들에게 괴롭힘 당하고 이용당하지요. <사례 3>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는 친구도 때리고 교사도 때립니다. 7호 시설로 보냈어요.
<사례 2>

반면에 나이와 성격은 크게 좌우되는 특성은 아니라는 응답도 있었다.

성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성적이든 활발하던 간에, 아이들의 성격과 특성을 파악해서 접근하고 대응해주면 됩니다. <사례 4>

나이가 너무 어린 아이가 와도 개별 처우가 가능하니까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사례 1>

그간 각 시설별로 어느 정도 특화된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판사가 고려하는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기관마다 좀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나이 많고 폭력적인 아이들이 가는 곳도 있구요. 이런 특성들을 판사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사례 3>

우리 단체가 미혼모를 지원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혼모, 성매매, 성병 등의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요. 특화되어있다고 할 수 있죠. <사례 2>

2) 6호 처분에 가장 적합한 기간

현재 6호 처분은 6개월간 시설 수용이며 6개월을 더 연장하여 최장 1년까지 있을 수 있다. 최근에는 처음부터 1년을 받고 오는 소년사범들도 있다. 6호 처분 시설 기간과 관련하여 변화가 일어나기에는 6개월이 다소 짧을 수 있으며, 부모의 보호력이 없는 소년사범의 경우 6개월 후에 동일한 위험한 환경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좀 더

보호를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다. 현행 기간이 적절한지에 대해 질문이 주어졌다.

2명은 6개월이 적합하다고 의견을 낸 반면, 2명은 2년 정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3명은 아이의 상태에 따라 6개월, 1년, 2년을 보호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6개월이 적합한 이유는 목표를 달성 할 수 있고 시설이 관리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6개월 안에 우리의 교육 목표가 달성 될 수 있습니다. 변화의 동기만 부여해 주어도 됩니다. 기간을 늘려서 2년까지 간다면 민간 소년원이 될 것입니다. <사례 1>

아이들이 참고 견디는 것은 6개월이 한계인 것 같습니다. 시설 입장에서도 기간이 길어지면 관리하기 힘들구요. <사례 8>

반면이 기간을 길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정신의학과에서는 6개월이 변화를 일으키기엔 짧다고 합니다. 처음에 1년을 주고 시기를 조율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례 2>

아이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기간을 적용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6개월도 충분하고 어떤 아이들은 부족하죠. <사례 6>

검정고시, 자격증 등 목표가 있는 아이들은 연장을 원합니다. 판사님과 의논해서 결정합니다. <사례 3>

처음에 1년을 주고 아이의 상황에 따라 6개월, 1년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 2>

반면에 기간이 달라지면 공평성의 문제도 제기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요즘은 처음부터 6개월, 1년 다르게 받고 오다보니까 아이들이 불공평하다고 많이 불평들을 합니다. <사례 3>

다. 6호처분시설의 전문성 관련 인식

1) 6호 시설 종사자가 갖춰야할 소양과 자질

6호 처분시설은 아동복지기관이면서 동시에 법원에서 명령을 받은 소년사범을 수용하는 아동보호치료기관이다. 따라서 아동복지기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비행청소년의 비행성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의들이 있다. 이에 6호 시설 종사자로서 갖추어야할 소양과 자질에 대해 질문하였다. 공통적으로 제시된 것은 인내, 열정, 소명감, 사명감, 인권의식이 강한 사람, 신념이 강한 사람, 아이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아이들을 이해해 주는 사람, 인성이 좋은 사람이라고 답하였다.

학생과 더불어 생활하며 열정과 사랑이 있고, 늘 깨어있는 교사요. 우리가 낮춰야 아이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겸손이 필요합니다. <사례 1>

우린 공무원이 아닙니다. 소명, 사명, 의지가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대화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이들이 마음을 엽니다. 사회복지사 자격 같은 기술적인 것은 살면서 갖출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이해하게 되면 두렵지 않고 아이들도 그런 선생님에게 마음을 엽니다. <사례 5>

또한 종사자들이 들 아이들 곁에 있으면서 아이들을 관찰하고 보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교사가 항상 옆에 있어야 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례 3>

이외에 시설 내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여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회복지사, 운동과 예체능을 잘하는 사람 등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교육을 위해 교육학, 사회복지학, 상담학 등 소년을 이해할 수 있는 학문분야를 전공한 전문가로서 자질을 갖추야 할 것입니다. <사례 11>

2) 6호 시설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공무원의 경우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지만 6호 시설의 종사자는 이러한 기회가 없어서 전문성 강화와 정보 공유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각 시설에서는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내부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실행하는 기관들도 있으며, 협의체 구성이나 정기적 교육과 워크숍의 필요성에도 동의를 하였다. 4명의 시설장들은 해당 시설에서 교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정기적인 회의와 프로그램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매일 아침 회의를 하면서 아이에 대한 정보와 생각을 공유합니다. 자원봉사자와 교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사례 1>

교사들에게 우리의 비전에 대해 계속 이야기 해줍니다. 관련 서적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도 있고요. 교사들에게 사례관리하는 법도 교육하고 MMPI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사례 2>

우리 시설은 엄격한 교사 훈련제도가 있습니다. 1개월간 트레이닝을 하고 3개월 수습 기간을 거쳐야 정식 교사가 됩니다. 매주 모여 회의를 하면서 아이들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2주에 한번 스터디 모임을 가집니다. <사례 6>

기간 내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관련 기관에서 소양교육과 정기적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법무부나 법원에서 직원 소양교육이나 정기적인 워크숍을 개최해서 교육도 하고 의견 교환도 필요합니다. <사례 8>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연수는 있지만, 6호처분 시설만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6호 처분 시설 종사자를 위한 연수나 교육, 워크숍을 해서 아이들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면 시설을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지요. <사례 2>

청소년회복센터가 협의체를 구성한 것과 같이 6호 처분 시설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청소년 회복센터의 경우 개인으로 운영하다보니 협의체나 지원단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19개 센터가 연합한 법인을 만들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례 8>

반면에 다들 시설 운영으로 너무 바쁘고, 또 기관만의 특성, 철학, 고집이 있어서 협의체 구성이나 워크숍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학계 전문가는 채용과정에서 전문가를 선발하는 것도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채용과정에서 소년의 교육, 상담을 전공한 전문가를 선발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례 11>

3) 6호 시설에서 가장 중요하게 시행되어야 할 프로그램

6호 시설의 경우 시설 내에서 학과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6호 시설의 목표인 청소년의 회복과 치유, 재범 억제를 위해 중요하게 시행되어야 할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이 조사되었다. 2명의 시설장은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또 다른 2명의 시설장은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하며, 두 명의 시설장은 상담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한명의 시설장은 모든 프로그램이 다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한명은 사회성을 기르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학과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에는 학령기의 아동·청소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학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학과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마음이 모아져야 공부도 가능하니 심리상담과 병행합니다. <사례 2>

인성이 모든 변화의 시작임을 강조하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른 교육도 가능해지죠. 그래서 우리센터에서는 3개월 동안 인성교육을 시킨 후에 기초학습 강화 교육이 들어갑니다. <사례 5>

요즘 한 자녀가 많아서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되었어요. 올바르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교육을 시킵니다. <사례 6>

고용주들과 이야기 해보면 자격증보다 태도가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예의를 지키고 참아야 하는 지를 교육시켜야 합니다. <사례 12>

상담을 통한 치료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다.

아이들의 다친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가족 상담도 같이 합니다. <사례 4>

상담을 통해 사람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시키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감도 회복시키고, 나의 참 모습을 깨닫게 해줍니다. 학과공부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치료가 우선적입니다. <사례 10>

이외에 사회성을 기르는 훈련,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맺는 훈련, 진로상담, 직업상담 프로그램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일반 학생들은 진로집중 자유학기제를 하잖아요. 비행청소년들이 일반 학생들보다 이런 교육을 더 받아야 합니다. 최소한 자유학기제 수준의 경험은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례 12>

라. 퇴소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후관리

국/내외 연구자들은 변화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6호 처분 시설은 어떠한 형태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대다수의 시설들은 출원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보호력이 없는 경우 여성가족부, 법무부, 혹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연계해주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자립지원관이 있기는 하지만 이미 출원한 소년사범을 관리하기 보다는 출원을 앞둔 소년사범에 대한 지원에 업무가 집중되고 있으며, 자립지원관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출원한 소년사범에 대한 관리는 선생님들과 개인적으로 문자나 SNS를 통해 안부를 묻는 정도만 이루어지고 있었다. 최근엔 홈커밍 데이를 만들고 정기적인 만남을 하고 있다는 시설과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대학에 진학하는 출원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시설도 있었다.

다른 시설에선 안받아줘서 법무부 자립관으로 많이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때문에 법무부 자립관에 자리가 없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자립관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례 5>

여가부 쉼터는 너무 관리가 안되서 보내기 싫구요, 법무부 자립관이나 장기 쉼터에 보내요. <사례 6>

아동복지시설 출신 아이들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기 힘들어요. 우리가 운영하는 다른 시설에 보냅니다. <사례 1>

6호 처분 시설이 운영하는 자립관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없는 경우에는 자립관을 설립하여 돌봄의 연속성이 이루어지길 희망하고 있었다.

또한 두 명은 1호 처분시설인 청소년회복센터를 6호처분 출원자의 자립관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었다.

6호 시설 퇴원 후 갈 곳 없는 아이들은 청소년회복센터로 갈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통고처분해서 보호자의 동의를 얻고 보호자를 설득해야 합니다. <사례 8>

학계 전문가는 멘토·멘티 제도를 제안하였다 .

소년원 직원들은 출원하는 소년사범과 멘토·멘티 관계를 맺는다고 합니다. 6호 처분 시설도 퇴소 전 종사자와 아이들이 그런 관계를 맺었으면 합니다. <사례 12>

마. 관련기관간 연계관련 인식

1)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협조

6호처분 시설은 사회내 처우, 지역사회 교정, 중간처우이며, 이러한 처우의 장점은 사회성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협조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와 협조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이 교육과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고 있고, 후원금을 통해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의료기관이나 교사와 같은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도 참여하여 도움을 주고 있었다. 그러나 각 시설은 주민들

의 범감정을 고려하여 굳이 이 시설이 비행청소년 시설이라고 밝히지는 않고 있었다.

자원봉사자들이 주중, 방학 때, 주말에 오셔서 식사제공도 하시고, 행사도 해주십니다. 지역 심리센터에서 상담이 필요한 아이가 있으면 상담을 실시해주십니다. <사례 7>

프로그램 비용이나, 건물 보수 및 신축에 자금이 필요하면 기업이나, 후원자 등의 도움을 얻습니다. <사례 4>

외부 자원봉사자들이 학습도 지원하고 의료 지원 등 전문적인 부분도 해주세요. <사례 2>

그러나 다소 외진 지역에 위치한 시설은 외부 자원의 활용에 한계가 있으며, 시설의 필요와 후원자들의 필요가 다른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다.

외저서 지역사회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지죠. <사례 5>

2) 관련 국가기관과의 연계와 협조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더불어 관련 국가기관과의 협력 또한 중요하다. 법무부, 법원,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과의 협력관계 구축도 중요하지만, 특히 재정지원을 해주는 지자체와의 이해와 협력은 더더욱 중요하다. 관련 국가기관과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협조가 필요한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지자체와의 협력에 대해서는 한 개의 기관만을 제외하고 6개 기관에서는 대체적으로 이해해주고 협조를 잘해준다고 응답하였지만,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전담 직원이 있기를 바랐다.

기초생활 수급법으로 인해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구청에서 잘 이해하고 노력해 주었습니다. <사례 3>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해하고 지원해 주기는 하는데요 담당자가 바뀌면 어려움이 있어요 <사례 2>

법원, 보호관찰소의 협력은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학령기

아동·청소년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교육부의 협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외부 학교에 보내는 것이 여의치 않고, 내부에서 학과 교육을 하는 것은 어려워요. 퇴임하시는 분, 임용 기다리시는 분들을 교육부에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례 6>

교육청에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면 관심이 없습니다. 퇴원한 소년이 학업을 지속하기 위한 학교 교육과의 연계가 중요합니다. <사례 7>

이 외에 출원하는 소년사범 중에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쉼터를 제공할 수 있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직업훈련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고용노동부, 문화/예술 경험을 시켜 줄 수 있는 문체부의 협력과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관련 기간에 연계와 협력이 잘 안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바. 6호처분 활성화방안에 대한 의견

현재 6호처분시설은 전국에 7군데 밖에 없다. 인식의 부족과 예산의 부족으로 인한 현상일 것이다. 6호 처분 시설이 중간처우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수용된 아동·청소년을 치유하고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제점들이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주어졌다.

시설장들은 6호 처분이 당면한 다양한 방면에서의 문제들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공통적으로 제시된 개선방안으로는 예산 문제 해결, 인력보충, 기초생활 수급의 문제 해결, 시설 수 확대, 교육부 지원강화, 기관간 협력강화, 보건복지부 내 6호 처분 전담팀 구성, 인식의 전환, 자립생활관 구축 등이 다. 각 사안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예산지원 강화

현재 지자체를 통해 예산을 받고 있으며, 일반 아동복지시설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다른 예산체계가 적용되어야 하며 예산이 증가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6호 시설은 지자체에서 재정지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당해 지자체에서 다른 지역의 아이들이 시설에 들어와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경우도 있었고 지자체 담당자에 따라서는 시설을 지원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트집 잡고 감시하려는 생각으로 대하는 경우도 있어 종종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6호 시설을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할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지자체가 아닌 국가재정으로 시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례 9>

일반 아동복지시설과 아동보호치료시설은 같은 예산이 적용되면 안됩니다. 다르게 예산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사례 1>

예산을 지자체에서 하지말고 중앙부처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건비가 높아서 교육에 투자할 예산이 부족합니다. <사례 5>

예산을 중앙에서 집행해주었으면 합니다. 지자체라 구청직원에게 이해시켜야 하고 절차도 2개월이나 걸립니다. 소급은 해주지만 그동안 예산집행에 차질이 있습니다.

<사례 4>

2) 인력 부족현상 해결

모든 시설들이 6호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아동복지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배정된 인력으로는 업무를 감당해 낼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우리 6호 시설은 6개월에 많은 변화와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 온 직원이 집중해서 아이의 케어와 교육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류작업이 워낙 많다보니 아이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지곤 합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하여 인력이 더 충원되어야 합니다. <사례 5>

사후관리가 필요한데 인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책임감 있게 사후관리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례 4>

일반 시설은 낮에 학교를 가지만 우리는 여기가 학교입니다. 게다가 아이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도와줘야 하는 특수성이 있어서 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사례 10>

3) 기초생활 수급문제 해결

법원에서 명령을 받은 소년사범은 해당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주소지를 옮겨야

한다. 이러한 관행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받는다면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적 관행의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아이들이 오면 주소지를 옮겨야 생활수급자가 되고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소지가 옮겨지면 6호 시설에 있었다는 것이 드러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이러한 점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례 5>

여자 아이들이라 산부인과 진료도 많고 치과진료도 많은데 기초생활수급이 안 되는 경우 의료비가 너무 비쌉니다.

주소 이전하고 기초생활대상자로 수급을 받기까지 2개월이나 걸립니다. <사례 6>

4) 시설 수 확대

현재 6호 시설은 전국에 7개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시설이 없는 지역에서는 먼 곳까지 가거나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6명의 실무자와 전문가들은 시설 수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6호 처분 기관이 전국적으로 너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반 쉼터에 보호소년을 보내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일반 아이들과의 갈등이 생기고 기싸움을 하게 됩니다. 지역마다 있어야 합니다. 현재는 집에서 먼 곳에 있는 6호 처분 시설에 가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진정한 중간처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이 면회 올 수 있도록 집 가까운데 시설이 있어야 하고 각 지역마다 있어야 합니다. 인구도 줄고 저출산 시대에, 지금 있는 아이들만이라도 잘 키워야합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1호, 6호 소규모 시설들이 많이 생겨나야 합니다. <사례 8>

전국적으로 시설 수가 너무 적습니다. 시설이 없으니 판사들도 처분을 내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사례 12>

5) 교육부의 지원 강화

6호 시설의 소년사범들은 밖으로 나가는 것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시설 내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를 다니던 학생들은 이곳에서 받는 교육으로 인해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교육부와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교육부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부모와 아이의 의지로 시설에 더 머무를 경우 학력인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교육부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학과교육과 직업교육에 직원이 부족합니다. 교육부가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외진 곳의 경우 외부자원 이용도 쉽지가 않습니다. 교육부에서 교사를 지원해줘야 합니다. <사례 5>

6) 기관간 협력

6호 시설에 수용된 소년사범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내 다양한 기관이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은 기관에 따라, 기관장의 능력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식 부족으로 인해 관련 기관이 잘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부서간 역할은 잘 수행하는데 연계나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설의 아이들은 다양한 기관이 협조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사례 2>

6호 시설에 보내는 소년들의 경우 시설에 있는 동안 담당 법관 또는 조사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므로(집행조사, 정기적인 방문이나 시설 행사에 참석, 화상통화, 퇴소전 면담 등) 이를 통하여 퇴원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관리(집행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하면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 「소년법」에 의하면 6호 처분이 종료되면(퇴원) 앞서 언급한 인위적인 처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원에서 소년을 관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례 9>

보건복지부, 법무부, 법원, 경찰청, 교육부 등 5개 기관은 MOU를 맺거나 어떤 협의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사례 8>

7) 6호처분시설에 대한 인식 전환

대다수의 시민들은 6호 처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심지어 형사사범 종사자들조차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중간처우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협력해야 하지만, 인식부족, 잘못된 인식은 이러한 협력에 방해요인이 될 수 있다.

국가기관, 경찰도 6호 처분 시설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합니다. <사례 10>

비행소년 7만 5천명 중에 5천명만 소년원에 있습니다. 나머지 7만명은 민간 영역에서

케어하고 있습니다. 6호 처분 시설에 대한 인식, 소년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례 8>

8) 사후관리로서 자립생활관 설치

6호 처분에 수용된 소년사범의 대다수는 가정의 보호력이 떨어지고 가족과 문제가 있는 아동·청소년이 많다. 따라서 6개월이라는 생활 후 출원을 하면 돌아갈 곳이 없는 청소년이 많다. 이에 현재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자립관과 쉼터 이용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설에서 운영하는 자립생활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6호 시설에서 퇴원 후 소년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일부 시설에서는 그러한 노력을 하기도 하나 현실적으로 인력,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사례9>

그러므로 자립생활관이 진정한 중간처우입니다. 우리가 관할하는 자립생활관을 세워야 합니다. <사례 6>

법무부나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곳은 한계가 있고, 우리 아이들을 잘 안받아주고 가서 갈등도 있어요. 우리만의 자립관을 세우면 우리가 계속 케어해 줄 수 있습니다.

<사례 10>

이외에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통한 연계 강화, 시설 개선, 6호 기관을 이해해주고 지원해주고 전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자문단의 필요성 등이 개선방안으로 제시되었다.

9) 보건복지부 내의 6호 전담팀 신설

현재 6호처분 시설은 아동복지시설 중의 하나로 보건복지부가 관리하지만 관리자조차도 6호 처분 시설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주무 부처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되었다.

보건복지부에서 아동복지시설 수요가 감소하다 보니 기존의 시설을 아동치료보호시설로 전환하면 지원해주겠다고 하는데 잘 운영하려 들지 않습니다. 변화가 두렵고, 직원들 대다수가 여자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보건 복지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해 줘야 할 것입니다. <사례 6>

보건복지부가 노인, 출산, 육아 등 워낙 많은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아동정책과에는 사무관이 한사람 뿐입니다. 6호시설 전담 직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례 1>

사. 통합 관리·감독의 주체에 관한 의견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6호 처분 시설을 법무부가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비행청소년 관리라는 관점에서 법무부가 모든 소년사범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 대해 중간처우 기관의 특수성과 처우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향후 어떤 정부기관에서 6호 처분 기관을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하는지, 왜 그런 의견을 가지는 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12명 모두 현재대로 6호 처분이 보건복지부 관할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복지적 접근의 필요성, 개별처우의 필요성, 맞춤형 처우의 필요성, 자율성 강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즉, 현재는 이러한 필요성 등이 어느 정도 충족되고 있지만, 법무부가 관할을 하게 되면 이러한 현재의 시도들이 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대로 해야 합니다.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복지적 시각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면서 아이들에 맞는 맞춤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례 1>

법무부는 천편일률적으로 관리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맞게 다가갑니다. 또 6호 기간마다 다른 특성이 있어서 판사들이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시설특성에 적합한 아이들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사례 10>

우리에게 오는 아이들은 결손가정도 많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복지적 접근으로 이런 아이들에게 개별처우와 상담을 제공하고 치유해야 합니다.

<사례 6>

한 학계 전문가는 현행대로 보건복지부가 관리·감독하는 방안이 적절하지만 사실상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6호 처분이 지역사회 각 기관들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성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년만을 담당하는 부서를 두고 관리·감독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지방자치 제도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감독하는 방안이 다른 기관보다는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례 11〉

법무부가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8명이 반대의 의견을 표명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그 특성상 소년에 대한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으며, 공무원의 책임성으로 인한 관리자 중심이 되다보니 사건사고를 줄이는 것에 집중하게 되며,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기는 예민한 시기입니다. 법무부가 관리하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보태게 되고 또 하나의 낙인, 즉 심리적 낙인이 찍히게 되지요. 〈사례 2〉

아이들은 늘 문제를 일으켜요. 24시간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무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건사고에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관리·감독이 엄격해질 수 밖에 없어요.

〈사례 6〉

그러나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내에 6호 처분 시설 담당자를 지정하여 좀 더 관심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 소결

시설장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된 심층면접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6호 처분의 목표에 대해 시설장과 전문가 모두는 복지적 관점에서의 치유와 회복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소년원과의 차별성에 대해서는 종사자와 동일하게 개별 처우가 가능하며, 소년들과 관계성 형성이 가능하고,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며, 외부자원 참여가 가능하다 등을 제시하였다. 청소년회복센터와의 차별성에 대해서는 규모의 차이, 프로그램 수행의 가능성 여부 등이었다. 6호 시설에 적합한 소년사범으로는 부모의 보호력은 없고, 가솔력이 있는 아동·청소년,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아동·청소년 등이 적합하지만 지적장애, 정신병, 폭력성이 심각한 아동·청소년은 적합하지 않다고 응답

하였다. 기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해서 6개월, 2년, 수용된 아동·청소년 상태에 따라 다른 기간을 제시하였다. 6호 시설 종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자질로는 인내, 열정, 소명감, 사명감, 인권의식이 강한 사람, 신념이 강한 사람, 아이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아이들을 이해해 주는 사람, 인성이 좋은 사람 등이 제시되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많은 기관이 내부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정기적인 회의와 프로그램이 있으며, 정기적인 훈련과 교육, 협의체 회의에도 호의적이었다. 시설 내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교육, 인성교육, 상담 등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사후관리와 관련해서는 체계적이진 않았지만, 관련기관에 연계해주고 있었으며, 시설에서 운영하는 자립관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중간처우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의 협력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이 교육과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고 있었으며, 전문가의 참여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지자체, 법원, 보호관찰소와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협조가 특히 필요한 기관은 교육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문체부라고 응답하였다. 시설장들은 6호 처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중앙을 통한 예산지원과 예산 확대, 인력보충, 기초생활 수급의 문제 해결, 시설 수 확대, 교육부 지원강화, 기관간 협력강화, 보건복지부 내 6호 처분 전담팀 구성, 인식의 전환, 자립생활관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통합적 관리부서로는 현재대로 보건복지부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복지적 접근의 필요성, 개별처우의 필요성, 맞춤형 처우의 필요성, 자율성 강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시설장과 전문가의 심층면접 결과는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와 모두 일치하며, 설문조사 결과에서 포착할 수 없는 좀 더 깊이 있는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며, 각 사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6호처분 시설을 좀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외국의 소년범 중간처우 형태 분석

이승현·박선영

외국의 소년범 중간처우 형태 분석

제1절 미국의 소년범 중간처우 형태

미국에서는 1845년에 뉴욕에서 주거부정 출소자를 수용하기 위한 중간처우의 집이 생긴 이래로 주로 출소자를 위한 시설로 활용되었다가 1960년대 부터는 구금의 대안, 보호관찰 대상자, 가석방자 등을 수용하는 지역사회내 중간처우 시설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Latessa et al., 2009). 소년사범의 경우 1917년에 플라나간(Flanagan) 신부가 비행청소년을 위한 그룹홈의 형태인 Boys Town을 운영하여 민간영역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졌다(Ryan et al., 2009). 이후 1961년에 당시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이 소년사범을 위한 중간처우의 집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여 1965년에 「수형자 교화개선법(Prisoners Rehabilitation Act)」이 제정되면서 소년사범의 중간처우의 집 배치가 가능해졌다(정진수 외, 2013). 소년사범의 경우에는 구금형 대안인 중간처우의 한 형태로 사용하는 거주형 시설은 중간처우의 집(halfway house)라는 용어보다는 그룹홈(group hom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Latessa et al., 2010).

이후 1972년 매사추세츠 주에서 소년사범에 대한 구금시설을 폐쇄한 후 위탁가정과 그룹홈에서 소년을 수용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조치가 재범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에 따라 다른 많은 주에서도 지역사회 내 소년사범 중간처우 시설인 그룹홈을 확대하게 되었다(Barth, 2002).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청소년의 범죄가 강력화, 흉포화 됨에 따라 강력한 처벌 정책이 실시되기는 했지만, 구금의 증가와 강력 처벌이 결국은 또다시 재범을 촉발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소년사범에 대한 복지적 접근, 지역사회 교정, 회복적 사범, 다이버전이 확대되고 강화되어 그룹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Latessa et al., 2010). 또한 2008년에는 1974년 제정되었던

‘소년사법과 비행청소년 예방법(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Reauthorization Act)’의 개정으로 초범자를 위한 구금형 대안으로 지역사회 교정을 강화하는 정책이 수립됨에 따라 많은 주에서 소년 구금시설이 폐지되고 위탁가정과 그룹홈이 확대되었다(Latessa & Allen, 2011).

1. 중간처우 시설현황

미국내 그룹홈¹⁹⁾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법무부 산하 사법통계청(Bureau of Justice Statistics)이 2003년에 실시한 “소년 주거시설 조사(Juvenile Residential Facility Census)”이다. 2003년 조사 당시 2,429개의 소년사범 거주 시설이 있으며, 이중에 1,852개 시설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1,852개의 소년사범 수용시설에 50,821명의 소년이 수용되어 있었다. 그 종류와 숫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Hockenberry et al., 2016)

- ① 구금센터(detention center): 664개
- ② 쉼터(Shelter): 143개
- ③ 입소 및 진단센터(reception/diagnostic center): 61개
- ④ 그룹홈(group home): 360개
- ⑤ 랜치(ranch/wilderness): 37개
- ⑥ 훈련학교(training school) :176개
- ⑦ 주거치료센터(residential treatment center): 726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것은 주거치료센터(Residential treatment center)로 전체 시설의 39%, 수용된 소년사범의 37%를 차지한다. 다음으로는 구금센터(detention center)로 전체 시설의 36%, 수용 청소년의 44%를 차지한다. 보통 대규모로 운영되어 가장 많은 소년사범이 수용되어 있는 기관이다. 그룹홈은 전체 시설의

19) 엄밀한 의미에서 그룹홈은 우리나라의 1호 처분 중의 하나로 활용되는 청소년회복센터와 유사하다. 그러나 미국의 그룹홈은 본문에서도 논의된 바대로 표준화된 정의가 부재하여 미국 내에서도 그룹홈이나 주거치료센터(residential treatment center)와 같이 혼재된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대상이 되는 6호처분 아동보호치료시설에 대한 미국 사례에서 그룹홈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19%를 차지하지만 수용인원이 적은 관계로 전체 수용된 소년의 8%를 차지하고 있다. 그룹홈의 대다수는 민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Latessa(2010)의 연구에서 지적인 대로 그룹홈에 대한 표준화된 정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룹홈과 유사한 형태의 소년사범 수용시설인 '주거치료센터(residential treatment center)'와 그룹홈(group home)은 시설 운영자들조차 명확한 구분을 하지 못한 채 혼재되어 운영되고 있다. 본 조사에서도 시설 형태에 대한 중복응답을 가능케 하였는데 자신의 시설을 주거치료센터이면서 그룹홈이라고 밝힌 시설은 전체 시설의 60%에 해당되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룹홈이 수용하는 인원을 살펴보면 64%의 시설이 10명 이하를 수용하며, 23%는 11~20명, 10%는 21~50명이며 50~100명은 3%,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기관은 2%이다. 현재 그룹홈의 23%정도는 적정 인원으로 운영되며 4%의 그룹홈은 적정 인원 이상의 인원을 수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다른 형태와 다른 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그룹홈의 형태를 살펴보면 법원의 명령을 받고 온 비행청소년과 사회복지 기관을 통해 회부된 아동·청소년 7~10명이 일반 가정집 형태의 주거지에서 위탁부모나 운영자와 함께 거주한다. 오하이오 주에서 운영되는 라이트 하우스와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운영되는 아델포이 빌리지 그룹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오하이오 라이트하우스 청소년 센터(Lighthouse Youth Center)





오하이오 주에 위치한 ‘라이트하우스 소년 및 가정서비스(Lighthouse Youth & Family Services)’²⁰⁾는 비행청소년과 문제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1969년에 설립되었으며, 1970년에 오하이오 주에서 처음으로 소녀들을 위한 그룹홈을 열었다. 현재 위탁가정, 그룹홈, 쉼터, 위기에방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하이오 주 내에서 3개의 그룹홈(Lighthouse Youth Center, Hamilton County Community Juvenile Justice Services, Montgomery County Community Juvenile Justice Services)을 운영하고 있다.

3개의 그룹홈 가운데 라이트하우스 청소년 센터(Lighthouse Youth Center)는 오하이오 소년 법정에서 명령을 받은 15세~18세의 소녀들을 수용하고 있다. 시설 운영을

20) 홈페이지 참조 (<https://www.lys.org/services/juvenile-justice/lighthouse-youth-center-at-paint-creek/>, 2017. 10. 15 최종검색).

위해서는 오하이오 직업과 가족(Ohio Department of Jobs and Family Services)부서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오하이오 청소년부(Department of Youth Services, ODYS)에서 소년사범에 대해서는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처음 문을 연 것은 1986으로 오하이오 법무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3년간의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시설 외부에 보안 시설이 없지만 매우 구조화된 프로그램과 전문성 있는 직원이 상주하고 있다.

나. 펜실베이니아 아델포이 빌리지(Adelphoi Village)



펜실베이니아 주 라트로브에 위치한 아델포이 빌리지(Adelphoi Village)²¹⁾는 비영리 단체로서 1971년 Morlino 신부가 비행청소년과 문제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설립했다. 지원의 범위를 확대해서 현재는 그룹홈, 위탁돌봄, 대안학교, 가정기반 치료 프로그램, 구금 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0세~21세까지의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 주는 물론 웨스트 버니지아, 델라웨어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간 2,500명의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다.

그룹홈과 관련해서는 ‘집중관리 그룹홈 (Intensive Supervision Group Homes)’이라는 명칭으로 7개의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 2개는 정신건강(Mental Health)에 문제가 있는 소년사범을 수용하는 기관이다. 그룹홈은 12세~19세의 아동·청소년을 수용하며, IQ가 최소 70 이상은 되어야 한다. 판사의 결정으로 9~18개월 정도 머물며, 21세가 되면 퇴원하지만 성인교도소로도 보내진다. 상세화된 내부 규정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수용된 아동·청소년은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전문적 직원들의 돌봄을 받는다. 홈페이지 상에 제시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정신건강 진단: 입소와 동시에 상주하는 정신과 의사가 정신건강 진단을 실시한다.
- 체육: 매주 체육 수업을 실시하며, 실내/실외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을 실시하여 심신을 건강하게 한다.
- Balanced and Restorative Justice (BARJ) 원칙을 적용하여, 배상 프로그램, 피해자 화해, 역량 개발, 사회봉사 활동을 실시한다.
- 교육: 대안학교를 통해 학교와 동일한 교육을 제공한다.
- 사후관리 계획: 출원후의 성공적인 삶을 지원한다.
- 동문 서비스(Alumni Services): 주거지원과 학업지원을 한다.

아델포이 빌리지는 보안과 관리·감독에 차별화를 둔 단계별 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모범적인 생활을 하거나 문제 행동을 하면 주거 시설로 옮겨질 수 있다. 즉, 가장 자유로운 그룹홈에서 엄중한 경비와 감독이 실시되는 ‘보안 치료센터(Secure Treatment Center)’까지 단계별로 시설 이동이 가능하다.

21) 홈페이지 참조 (<http://www.adelphoi.org/>)

2. 중간처우 시설의 교육프로그램 현황

위에서 논의된 사법 통계청의 “소년 주거시설 조사(Juvenile Residential Facility Census)”에 의하면 교육과 관련된 조사에서 소년사범이 거주하는 시설의 68%에서 수용된 소년 전원이 ‘학교에 다닌다’고 응답한 반면, 그룹홈의 경우 응답한 그룹홈의 53%가 학교를 다닌다고 응답하였다(Hockenberry et al., 2016). 이는 모든 형태의 시설 중에 가장 낮은 비율이었다. ‘학교를 안다닌다’에 대한 조사에서도 다른 시설 보다 가장 높은 비율로 그룹홈의 20%가 학교를 안다닌다고 응답하였다. 학과과정 제공을 살펴보면 그룹홈의 65%가 중학교 과정을 제공하는데 이는 다른 시설에 비해 가장 낮았다. 고등학교 과정도 79%로 가장 낮았으며, 검정고시 준비도 65%로 가장 낮았다. 직업훈련과 삶의 기술은 각각 42%, 60%로 다른 시설에 비해 중간정도의 수준이었다. 그룹홈이 가장 소규모로 운영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교육이 여의치 않음을 알 수 있다.

가. 아델포이 빌리지

아델포이 빌리지²²⁾는 학과교육, 직업교육, 약물 중독, 성범죄 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아델포이 빌리지의 경우 「공립학교법(The Public School Code) 제 1306조」에 의거해서 대안학교를 설립하여 같이 운영하고 있으므로 시설에 거주하는 소년사범은 물론 인근 그룹홈에 거주하는 소년사범도 모두 학교 교육을 받고 있다. 교사는 직접 채용하고 인건비는 교육부에서 부담하여 교육활동비는 아델포이 빌리지에서 부담한다. 필요한 학생의 경우 튜터링도 제공한다. 또한 ‘아델포이 약속(Adelphoi Promise)’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혹은 출원한 청소년이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삶의 기술 지원, 학문적 지원을 실시한다. 단지 금전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헌신적인 지원이 학문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전문 상담사가 대학 선택, 학과 선택, 지원서 작성, 시험, 교재 구입, 가족의 협력 등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실제적인 도움을 둔다. 4년제 대학으로의 편입을 원한다면 장학금 신청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22) 홈페이지 참조 (<http://www.adelphoi.org/>)

- 지역사회 전문대학 입학시 2년 장학금
- 학습 교재 구입을 위한 재정적 지원
- 노트북 컴퓨터
- 안내와 지원

학업 뿐만 아니라 ‘Career Readiness Program’ 통해 진로지도도 제공한다.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요리, 엔진 수리, 컴퓨터 기술, 원예, 응급치료, 자동차 기술 등이다. 1년에 40명의 청소년을 지원한다. 프로그램 시작 전 교사는 각 학생을 대상으로 개별 진로계획을 수립한다. 각 직업이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해당 분야에 취업을 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Substance Abuse Treatment Program)은 약물과 알콜 프로그램 국(Bureau of Drug and Alcohol Programs)의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들이 청소년들에게 제공된다. 6~10개월간 지속되며 테라피/선택 이론, 그룹 과정, 회복적 사법, 12단계 회복 치료 등이 사용된다.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 치료프로그램도 제공된다. 1:1 혹은 그룹 치료가 전문가에 의해 진행된다. 성적인 안전망과 예방 계획과 함께 치료가 병행된다.

나. 오하이오 라이트 하우스²³⁾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학과교육,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 정신건강, 성범죄 예방,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원예교실 등이다. 2013년에는 시설 내에 대안학교인 Paint Creek Academy을 설립하였으며 학교 교육이 제공된다. 또한 시설 내에서 지급 받는 일을 하게 되어 일에 대한 경험도 쌓게 된다. 원예교실에서는 시설 내에 있는 농장에서 경험을 쌓는다. 출원 전에는 소년사범의 가족과 함께 출원 계획을 짜고, 직원의 관리하에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참여한다.

23) 홈페이지 참조 (<https://www.lys.org/services/juvenile-justice/lighthouse-youth-center-at-paint-creek/>, 2017. 10. 15 최종 검색)

3. 중간처우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2003년에 제정된 「교도소내 강간퇴치법(Prison Rape Elimination Act (PREA))」에 의거해 매 3년마다 범죄자 수용 시설인 교도소, 구치소, 소년사범 시설, 유치장 등은 규정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는지 감사를 받는다. 따라서 그룹홈도 법무부 산하 사범 복지청(Bureau of Justice Assistance)를 통해 감사가 실시된다²⁴⁾. 사전 감사 질문지(Pre-Audit Questionnaire) 관련 서류들을 받아 검토하고, 이후 현장 실사가 이루어진다(부록 2 참조). 이틀간 이루어지는 현장 실사에서는 행정실에서의 회의 이후, 3명의 직원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PREA 규정에 대해 질문하고, 12명의 수용된 청소년에 대한 면담을 통해 가혹행위나 성적 학대가 있는지 조사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감사 보고서가 작성된다(부록3 참조).

4. 중간처우시설의 사후관리 현황(지역사회 연계)

아델포이 빌리지의 경우 ‘특화된 독립생활 프로그램(Specialized Independent Living Program)’은 16~20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출원한 청소년에게 4~6개월 간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곳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최소한의 감독을 받는다. 요리, 청소, 구직, 집안 관리, 자산관리, 교육지원, 학업을 지속하도록 도움과 지도를 받는다.

오하이오 주의 라이트 하우스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자와 인턴을 모집하여 시설 생활에 대한 도움, 교육적 도움, 출원 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중간처우시설 관련 입법현황

2008년에 1974년 제정되었던 「소년사범과 비행청소년 예방법(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Reauthorization Act)」이 개정되면서 42 U.S.C. 5603 SEC. 103(1)에 초범자를 위한 구금형 대안으로 그룹홈을 활용할 것을 명시하였다(Latessa & Allen, 2011).

주마다 다르지만 펜실베이니아의 경우 공립학교법 제1306조에 의거해서 시설에

24) National PREA Resource Center 홈페이지 참조 (<https://www.prearesourcecenter.org/audit>)

수용된 소년사범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6. 소년범 대상 중간처우 효과성 연구 검토

비행청소년을 위한 그룹홈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들은 1980년대 중반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다른 처우에 비해 효과가 있다는 결과보다는 오히려 재범이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Knapp et al., 1987; Festinger, 1983). 이러한 결과에 따라 그룹홈을 운영하는 주 정부와 민간기관들은 그룹홈에 비행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긍정적 친구 관계 문화프로그램(Positive Peer Culture program)”, “가족교육 모델(Teaching Family Model)”, “다면적 가정취탁 처우(Multidimensional Treatment Foster Care)” 등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도입하여 그룹홈의 재범억제 효과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Chamberlain, 2003).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는 그룹홈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연구자들은 그룹홈에 수용된 소년사범의 교육적 성취가 강화되었으며(Thompson et al., 1996), 문제행동이 감소하였으며(Larzeler et al., 2004; Nas et al., 2005), 재범억제에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Leve & Chamberlain, 2007; Eddy & Chamberlain, 2000; Leeman, 1993). 또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소년사범에 대한 다양한 처우와 프로그램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한 연구결과들이 제시되었는데 소규모 그룹홈, 중간처우 시설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들이 도출되었다(Lipsey & Wilson, 1998; Greenwood, 2008). 효과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소규모로 인한 개별화된 처우의 가능성, 사회와의 접촉, 전문적인 비행행동 수정 프로그램의 도입, 개인상담 등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룹홈의 효과성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와 긍정적인 결과들이 혼합되어 제시되고 있다.

Chamberlain과 Reid(1999)의 연구에서는 그룹홈의 아동·청소년의 재범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Ramchand(2009)는 그룹홈에 배치된 13~17세 소년사범 229명에 대해 7년간 추적조사를 실시했으며 긍정적 결과와 부정적 결과를 모두 제시하였다. 부정적인 결과로는 대상자의 66%가 범죄를 저질렀으며, 36%가 마약을 사용하였다. 반면에 대상자의 65%가 직업을 구했으며, 57%가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20%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2014년에는 처음 비행을 저지른 소년사범을 대상으

로 실시된 보호관찰, 그룹홈, 비행청소년 캠프, 세가지 처우에 대한 효과성이 비교되었다(Ryan et al., 2014). 재범의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처우는 엄격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진 비행청소년 캠프였으며, 그룹홈은 캠프보다는 높지 않았지만 보호관찰보다는 재범 위험성이 더 높았다. 따라서 연구자는 초범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 수단보다는 좀 더 자유로우며 부모가 개입하는 보호관찰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룹홈의 비행청소년들이 재범률이 높은 것과 관련하여 Ryan 외(2009) 연구에서는 아동복지 시스템 상에서 그룹홈에 배치된 아동·청소년들은 한번 이상 위탁환경이 바뀌는 경험을 했으며 이에 대한 불안정성이 재범에 영향을 준다고 분석하였으며, Satcher(1999) 연구에서는 아동복지 시스템 상에서 마지막 단계에 해당되는 그룹홈에 배치된 아동·청소년들은 이미 위탁자와 많은 갈등을 겪었으며 여러 문제를 안고 있을 위험이 큰 집단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Dishion 외(1996) 연구에서는 소규모 시설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 오히려 더 위험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그룹홈이나 주거치료센터가 비행청소년들의 비행행동을 교정하고 출원 후 재범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처우가 되기 위한 방안으로, 처분변경을 최소화해서 청소년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최소화 할 것(Ryan & Testa, 2005; Courtney, 1998), 비행행동 교정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 (Latessa & Smith, 2010),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협력을 이끌어 낼 것 (McCarthy et al., 2001), 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할 것 (Burns et al., 1999),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적절한 대상자를 선별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연구자들의 평가와 더불어 시설에 수용된 소년사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그룹홈의 효과성을 진단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다. 소년사범과 비행예방부(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OJJDP)는 2003년에 앞서 언급된 '비행청소년 수용시설조사'와 함께 '수용시설 청소년 설문조사(Survey of youth in Residential placement)'를 실시하였다(Sedlak & Bruce, 2010). 2003년에 시설에 수용된 청소년 중에서 7,073명이 참여했으며, 조사 내용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족관계, 범행 관련 내용, 향후 계획, 배치경로, 참여프로그램, 사회적·정서적·법적 지원 시스템, 운영자와의 관계성, 시설내 규칙 여부, 운영자와 직원이 훈육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 등이었다. 응답자가 거주하고 있는 시설을 살펴보면 교정시설(32%), 소년원

(26%), 지역사회 기반시설(18%), 거주치료시설(14%), 캠프(10%)로 그룹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함께 조사가 진행된 '비행청소년 수용시설 조사'에는 그룹홈이 명시되어 있으며, 운영자가 자신의 시설을 치료센터이면서 그룹홈이라고 밝힌 시설은 전체 시설의 60%에 해당되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그룹홈은 '지역사회 기반시설'과 '거주치료시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다.

출원 후 계획에 대해서는 시설 형태별로 응답이 제시가 되지는 않았다. 응답자의 84%는 직장 구하기, 80%는 학교가기, 26%는 마약 및 알콜 중독 치료를 하겠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43%는 주거에 대해 계획을 세웠는데, 이는 과반수 이상이 입소전 가족과 살았기 때문에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해석된다. 출원 후 재범에 대해 86%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90% 이상이 대학교 진학, 고등학교 졸업을 계획하고 있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평가 항목에서 '지역사회 기반시설'과 '거주치료시설'에 거주하는 소년사범들이 다른 시설에 비해 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운영자/관리자와의 관계성에 대한 진단에서도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며, 시설 내에서 공격받은 위협에 대한 두려움도 가장 낮았고, 비상사태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을 가장 잘 받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중구금 시설이 아닌 사회내 처우인 관계로 허락받지 않은 외출과 금지물품 반입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연구자들은 시설에 수용된 소년사범들 전반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학업에 대한 열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체계화된 교육을 제공할 것, 이미 부모가 된 소년사범들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 법적인 지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강화할 것, 수용된 소년사범과의 관계성을 강화할 것, 가족 구성원과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에 소년사범을 배치 할 것,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 훈련을 강화할 것, 규율 위반 처벌시 고립시키는 처벌을 최소화 할 것 등이다.

7. 시사점

미국의 경우 풍부한 연구를 통해 소년사범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소년사범에 대한 복지적 접근, 지역사회 교정, 회복적 사법, 다이버전을 강조하였으며, 대표적인

중간처우 시설인 그룹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2008년에는 1974년 제정되었던 「소년사범과 비행청소년 예방법(Juvenile Justice and Deqlinquency Prevention Act)」의 개정으로 초범자를 위한 구금형 대안으로 지역사회 교정을 강화하는 정책이 수립됨에 따라 많은 주에서 소년 구금시설이 폐지되고 위탁가정과 그룹홈이 확대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매년은 아니지만, 법무부 산하 사법통계청(Bureau of Justice Statistics)이 실시하는 “소년 주거시설 조사(Juvenile Residential Facility Census)”를 통해 전국의 소년사범 시설을 조사하고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은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시설에 대한 감사에서 수용된 소년사범에 대한 면담이 실시되는 점 또한 우리나라와 다른 점으로 가혹행위와 성적학대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령기 아동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이 중요시 되는 점, 특히 아델포이 빌리지의 경우 학교를 세우고 인근 중간처우 시설의 수용된 아동·청소년을 교육하는 방안도 향후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룹홈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하여 높은 재범률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치료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다양한 주에서 다양한 형태의 중간처우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룹홈에 대한 표준화된 정의가 부족한 점은 우리나라의 중간처우 시설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도 고민해야할 사안이다.

제2절 영국의 소년범 중간처우 형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구금형 대안이나 석방 예정자를 위한 중간처우 시설로서 중간처우의 집(halfway house) 혹은 그룹홈(group hom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영국은 다소 다른 용어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Bridges et al., 2008). 보석 상태에 있는 수용자와 사회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주거가 불안정한 가석방자들을 수용하는 기관으로서, 운영초반에는 ‘bail hostels’이란 용어를 사용했으며 현

재는 ‘Approved Premises(AP)’라는 용어를 사용한다(Burnett & Eaton, 2004). 운영 초반에는 성인보다는 어린 범죄자를 타겟으로 하였지만 1969년 「아동·청소년법(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가 제정되어 보호관찰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연령이 17세가 됨에 따라서 Approved Premises(AP) 시설은 성인에게만 제공되게 되었다(Burnett & Eaton, 2004).

따라서 현재 영국은 중간처우에 해당되는 AP 시설을 소년사범에게는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영국의 소년사범 체계를 검토해 보면, 우리나라의 소년사범 중간처우에 해당되는 아동보호치료시설(6호처분), 청소년회복센터(1호처분)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국에서 10세~17세에 해당되는 소년사범²⁵⁾은 소년법원>Youth Court)에서 판사에 의해 ‘지역사회 형(community sentence)’ 혹은 ‘구금과 훈련 명령(Detention and Training Order)’을 받게 된다. 지역사회 형은 문제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회부명령(referral orders)’,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실행하는 ‘배상 명령(reparation orders)’, 최장 3년까지 판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해주는 ‘소년교화명령(youth rehabilitation orders)’으로 구성된다. 반면에 영국에 소년사범은 소년사범에 대한 구금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형을 선고할 때에는 아동의 복지를 반드시 고려하지만(Taylor, 2016),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서 다른 대안이 없을 때,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경험들이 있을 때, 대중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구금형을 명령한다. 구금은 3가지 형태²⁶⁾가 있는데 ‘아동보호시설(Secure Children’s Home, SCH)’, ‘보호훈련소Secure Training Centre, STC)²⁷⁾’, ‘소년수용시설(Young Offender Institution, YOI)²⁸⁾’ 등이며 통상적으로 보안훈련센터와 청소년 범죄자 기관은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은 소년사범을 수용하며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25) 소년범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는

<https://www.justice.gov.uk/offenders/types-of-offender/juveniles> 참조

26) 세가지 구금 시설에 대한 용어는 2011년 법무부가 출간한 “영국의 소년보호제도”에서 사용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27) 사기업이 운영. 17세까지 수용. 50~80명 수용. 5~8명 유닛으로 분리. 학교와 동일한 스케줄 운영. 주당 30시간 교육과 훈련.

28) Prison Service, 사기업이 운영. 15~12세(18세 이하는 다른 건물에 수용)60~400명 수용. 30~60명을 수용한 독립된 wing.

이러한 세가지 구금 시설 중에 일반적으로 나이가 어린 소년사범을 소규모로 수용하며,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시설은 ‘아동보호시설(Secure Children’s Home, SCH)’이다(Review of the Youth Justice System in E and Wales). 지역사회 내에 일반 가정집의 형태로 존재하는 점, 복지적 시각에서 ‘돌봐야할 아동’으로 규정되어서 사회복지사가 모든 아동에게 배정되어 있는 점, 적은 인원수, 교사 1명이 2명의 소년사범을 돌보는 구조,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아동보호시설’은 우리나라의 6호 처분시설인 아동보호치료시설과 1호처분의 하나인 청소년회복센터와 그 기능과 역할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중간처우 시설로서의 ‘아동보호시설’의 운영과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중간처우 시설현황²⁹⁾



29) 본 내용은 영국정부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조하였음. (<http://www.securechildrenshomes.org.uk/>)



법원에서 명령을 받은 소년사범을 수용하는 3개 기관 중의 하나인 ‘아동보호시설(Secure Children’s Home)’은 지방정부가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15개³⁰⁾가 운영되고 있다. 재판전 단계, 구금의 한 형태, 보호 상태에 있는 소년들이 수용되며, 원칙적으로 10~18세의 소년사범을 수용하고 있지만 10~14세가 주로 수용되며, 8명~40명의 소규모 인원이 수용되어 있으며, 소년사범의 개별 필요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과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보안이 요구되는 거주시설에서 학교 교육과 동일하게 주 30시간의 전문교사를 통한 교육이 제공되고 있으며, 의사와 간호사를 통한 심리적/신체적 건강에 대한 전문적 관리도 제공된다. 위험행동을 치료하기 위한 진단과 프로그램이 실시되며, 심리학자를 통한 정신건강 및 학습장애 진단과 치료도 제공된다. 직원과 소년과의 비율이 낮을 만큼 많은 훈련받은 전문성 있는 직원이 있으며 사회복지사가 다양한 부분에서 참여하며, 다기관과 협력하여 개별화된 돌봄 계획을 개발한다. 15개 시설의 시설장으로 구성된 ‘보안시설 네트워크(Secure Accommodation Network)’가 구성되어 있으며, 이 네트워크는 시설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촉진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규칙적으로 만나서 국가정책을 검토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최고의 서비스와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방안을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국가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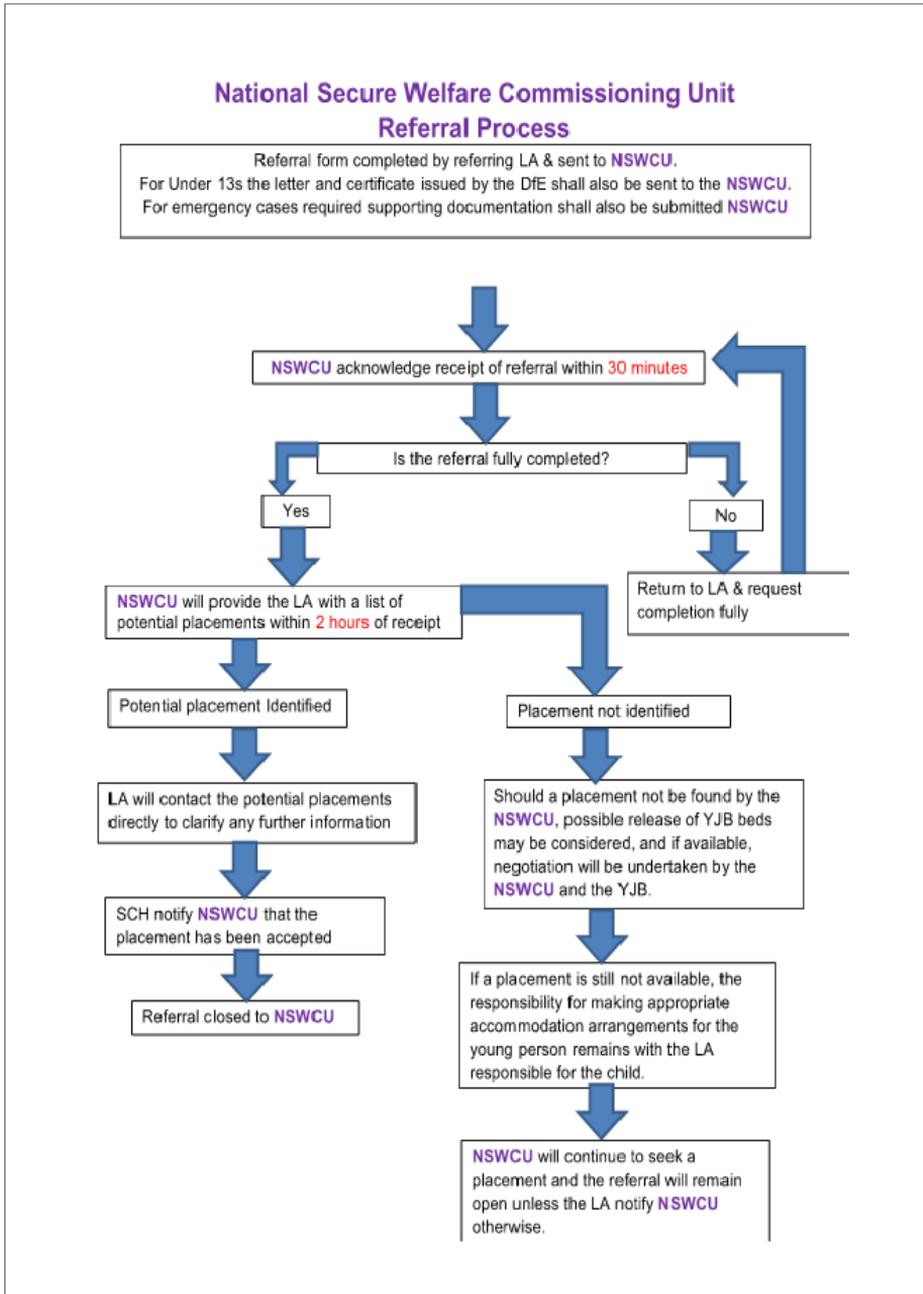
가장 최근 통계인 2016년 3월 현재 88,600명의 소년이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그중 27,900명의 소년사범이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았다. 그 중 6%에 해당되는 1,700명이 구금 처우를 받았으며 이는 전년대비 6% 감소한 숫자이다. 2016년 3월 현재 수용된 소년사범은 960명이다. 이중 대다수인 68%는 ‘소년수용시설(Young Offender Institution)’에, 20%는 ‘보호훈련소(Secure Training Center)’에 11%는 ‘아동보호시설(Secure Children’s Home)’에 수용되어있다(Ministry of Justice, 2017).

본 시설에의 회부는 1989년에 제정된 「아동법(Children’s Act)」 제25조에 따라 이루어지며 2016년 5월부터 소년사범의 시설 배치가 ‘국가복지보장 유닛(National Secure Welfare Commissioning Unit, NSWCU)’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전략단체인 국가복지보장 유닛은 안전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

30) Adel Beck, Aldine House, Atkinson, Aycliffe, Barton Moss, Beechfield, Clare Lodge, Clay fields, Hillside, Kyoie House, Lansdowne, Linconshire, St. Catherline, Swanwick Lodge, Vinney Green 등이다.

개개인의 필요에 맞춘 가장 최적의 장소를 찾는 과정을 능률화하고, 안전한 복지적 배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단일의 헌신적인 담당자를 제공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따라서 청소년을 시설에 보내기 위해 모든 시설에 연락하는 수고를 덜고 행정적인 시간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 몇 가지 서류를 작성하면 청소년을 최상의 곳에 배치할 수 있다. 이 유닛은 모든 시설의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춤형 시설 제공이 가능하다. 청소년의 필요와 요구, 특수한 상황이 반영될 수 있다. 이 유닛은 회부된 모든 청소년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할 것이다. 이러한 중앙 조직으로 인해 시설에 수용된 청소년에 대한 정보가 구축되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와 특성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즉, 배치의 권한을 가진 국가 기관과 시설을 연결해주는 담당관이다.

소년사범의 회부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5-1 참조). 소년법원에서 판사가 소년사범에 대한 구금형을 판결하면, 지방정부는 해당 소년사범에 대한 회부서(referral form)를 '국가복지보장위원 유닛(National Secure Welfare Commissioning Unit, NSWCU)'에 보낸다. 회부서를 받은 국가복지보장위원 유닛은 30분 내로 대응을 해야 한다. 서류가 미비하면 다시 보낼 것을 요청하고 서류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되면 2시간 내로 지방정부에 배치 가능한 아동의 집 명단을 보낸다. 지방정부는 검토를 통해 적절한 아동의 집을 결정하여 해당 아동의 집에 직접 연락을 한다. 아동의 집에 소년사범이 배치되면 지방정부는 국가복지보장위원유닛에 회부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한다. 그러나 만약 지방정부가 적절한 아동의 집을 결정하지 못한다면 소년사범위원회>Youth Justice Board)에 의뢰하여 가능한 거주지를 임시로 제공받기도 한다. 지방정부는 적절한 아동의 집을 찾을 때까지 소년사범에 대한 책임이 있다. 국가복지보장위원유닛은 아동에게 적절한 아동의 집이 있는지 계속 찾아야 한다.



[그림 5-1] 회부절차³¹⁾

31) Secure Children's Home 홈페이지(<http://www.securechildrenshomes.org.uk/referrals-new/>)

회부절차(Referral Process)를 위해서는 규격화된 회부서를 작성해야 한다(부록 4 참조). 회부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총 1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 회부(Referral): 회부하는 날짜, 회부하는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법원, 시설 수용 시작 일과 종료일
- 소년사범(Young Person): 이름, 성별, 생일, 나이, 키, 몸무게, 인종, 종교, 언어, 아동보호 등록 여부, 법적 상태, 13세 이하인지 여부, 72시간 비상 수용 여부
- 접촉(Key Contacts): 담당 사회복지사, 연락처
- 배치 경력(Placement History): 현재 및 과거 수용된 시설과 기간, 현재 돌봄에 대한 계획서 요약
- 가족과 사회관계(Family and Social Relationships)
- 소년사범이슈(Youth Justice Issues): 전과기록
- 행동(Behaviors): 폭력행동, 자해, 자살, 약물남용, 성적 행동, 가출, 취약점
- 건강(Health): 신체적 건강상태, 의료기록
- 정신건강(Mental Health): 정신적 건강상태, 의료기록
- 교육(Education): 현재 교육상황, 학업중단 여부
- 종교적 및 문화적 필요(Religious/Cultural Needs): 고려되어야할 종교적/문화적 특수 상황
- 심화정보(Further Information Required): 지방정부의 현재 돌봄 계획, 최근의 특별돌봄 계획, 법원 보고서, 최근 검토, 최근 계획을 위한 모임, 최근 관련 사건들의 요약, 정신건강 관련 보고
- 기타 정보(Any Other Information): 기타 회부와 관련된 정보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소년사범이 적절한 아동의 집에 배치되어 보내지면, 도착하자마자 소년사범은 '접수 담당자(reception officer)'에게 상담을 받는다. 상담을 통해 본 시설에서 적절한 돌봄이 이뤄질 수 있는지 확인한다. 소년사범은 소지품을 반납하고 신체 수색을 받게 되고 입소 후 몇일 동안은 담당 경관(personal officer)을 만나게 된다. 이 담당경관은 해당 소년사범이 본 센터에 있는 동안 소년의 안녕을 담당하게 된다.

2. 중간처우 시설의 교육프로그램 현황

‘아동보호시설’은 기숙사형 학교의 형태이며, 학교와 동일한 스케줄을 적용하며, 주단 30시간의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의무이다. 정규 학교 교육 외에 직업기술, 행동교정 프로그램, 스포츠, 기타 활동, 알콜, 마약 중독 상담 등이 제공된다. 장애나 특수한 교육적 필요가 있는 아동·청소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비행성 예방을 위해 제시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범죄유형별 예방
- 위험한 성적행동
- 아동 성착취
- 피해자 인식
- 폭력성과 공격성
- 약물남용
- 방화/절도/차량 절도
- 애착과 상실감
- 가정폭력
- 도덕적 사고
- 합리적 추론
- 사회적 기술과 삶의 기술 학습

3. 중간처우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지방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아동보호시설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기 점검(inspection)은 교육감사 기관인 Ofsted, 소년사법 위원회, 보건부, 지방정부 등에 의해 실시된다. 이외에 다양한 관련 기관들과 지역사회 운영을 점검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파트너 기관과 협력한다. 이러한 협력은 개인적인 시설 혹은 ‘보안시설 네트워크(Secure Accommodation Network)’를 통해서 가능하다. 영국 정부의 아동의 집 홈페이지 상에는 아동의 집 운영을 위해 협력하는 기관들을 소개하고

있으며(그림 5-2 참조), 각 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그림 5-2] 아동의 집 협력기관³²⁾

가. 교육·아동복지와 기량에 대한 표준국(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vices and Skills, Ofsted)

교육감사기관인 Ofsted(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vices and Skills)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전역에서 '아동보호시설'이 매우 높은 국가 최소 기준들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점검을 실시한다. Ofsted는 최소기준들을 충족했는지를 검사한 후 통과한 시설에 대해 최장 3년간 운영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발급한다. 이러한 점검은 일년에 2번 실시되며 예고 없이 시설을 방문해서 조사를 한다. 한 번의 완전한 조사와 한 번의 임시조사가 실시된다. Ofsted에게는 아동·청

32) Secure Children's Home 홈페이지(<http://www.securechildrenshomes.org.uk/partner-organisations/>)

소년이 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전반적인 책무가 있다.

나.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교육부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있는 '아동보호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적 책무가 있다. 교육부는 교육 감사기관에 해당되는 Ofsted과 협력해서 각 아동의 집이 법원에서 결정해서 보낸 아동·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돌봄을 제공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는 각 아동의 집이 '국가 최소 기준과 규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원한다. 교육부는 아동의 집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자금지원을 주재한다. 아동의 집은 주당 최소 25시간의 교육을 제공할 완전한 학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교육부는 교육을 정기점검하는 Ofsted와 협력해서 이러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감독한다.

다. 소년사법 위원회(Youth Justice Board)

소년사법위원회는 1998년에 제정된 「범죄와 무질서법(Crime and Disorder Act)」에 의거해 소년사법 시스템의 리더십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법무부의 비부서적 집행 조직이며, 다양한 행정적 기능과 조언적 기능을 한다. 의무로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국가 표준을 설정하고 서비스의 수행을 관리하고 감독하며 소년 구금규정을 의뢰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하며, 소년사법체계의 운영에 대하여 관련 부서들을 모니터링하고 조언을 한다.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2007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소년사법 구금이 감소하였다. 소년사법 위원회는 법원에서 위탁을 받은 청소년들을 위한 안전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17개의 기관 중 10개 기관과 계약을 맺었다. 위원회는 해당 기관이 요건들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월 단위로 해당 시설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한다.

라. 치안법원 판사(Magistrates)

판사는 청소년의 복지에 대해 주재할 의무가 있다. 두가지 경로로 소년사범을 '아동

보호시설'에 보내게 되는데, 하나는 비행으로 인해 수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가장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위해 시설이 사용된다. 또 다른 경로는 아동법 (Children Act 1989) 제25조에 근거한 복지 명령인데 아동·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방의 관련기관에서 요청한 것이다. 이탈의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 이탈한다면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 다른 곳에 가게 되면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아동·청소년이다.

마.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돌볼 책무가 있다. 교육부의 Ofsted와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상의 필요를 충족시킬 시설인지를 확인한다.

바. 지방정부(Local Authorities)

지방정부는 자선단체가 운영하는 St Catherine을 제외하고는 모든 '아동보호시설'을 관리해야 한다. 최상의 돌봄을 받고 안전이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Ofsted 규정에 따라 '책임 담당관(responsible officer)'을 고용하고 시설을 관리한다. 조사를 위해 매달 방문이 이루어진다.

사. 사회복지사(Social Workers)

1989년에 제정된 「아동법」 제25조에 의거해서 본 시설에 수용된 아동·청소년들에게는 사회복지사가 지정되어야 한다. '돌봐야할 아동(child in care)'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돌봄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아동이 해당 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되고 돌봐지는지, 아동의 필요가 충족되어지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한다.

아. 소년범죄대응 팀>Youth Offending Teams)

다기관이 연합되어 만들어진 소년범죄대응 팀은 1998년 「범죄와 무질서법(Crime and Disorder Act)」이 제정됨에 따라 소년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다(Taylor, 2016). 다기관이 연합하여 팀을 결성하기 전까지는 각기 서로

다른 기관에서는 소년사범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와 입장을 가졌다고 생각하였다. 팀의 구성원은 경찰, 사회복지사, 보호관찰관, 보건부와 교육부 사무관 등이다. 경찰 단계에서 투입되기도 하지만 아동·청소년의 행동이 걱정되는 가족이 먼저 접촉을 해도 된다. 팀은 지역회의의 한 부분이고 경찰과 법원과는 독립된 기관이다. 그러나 경찰, 보호관찰소, 아동복지국, 학교, 지역사회 단체, 자선단체들과 협력한다. 소년범 죄대응 팀이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 법원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경찰단계에서 소년사범에 대한 심문시 적절한 어른이 동석할 수 있도록 경찰을 돕는다.
- 법원에서 소년과 가족이 필요로하는 정보와 보고서를 제공한다.
- 사회내 처분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돕는다.
- 시설에 수용된 소년사범과 지속적인 접촉을 한다.
- 시설에서 퇴원하는 아동·청소년을 관리·감독한다.
- 소년의 배경을 조사하고 범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 지역 범죄예방 프로그램 운영한다.

따라서 해당지역의 소년범죄대응 팀(youth offending team)은 소년사범이 '아동보호시설'에 수용된 동안 그들과 연락을 취할 수 있다.

4. 중간처우시설의 사후관리 현황(지역사회 연계)

'아동보호시설'은 돌보는 아동·청소년에게 전문적 케어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외부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마약남용 방지 기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Children's and Adolescent's Mental Health Support), 변호서비스(Advocacy Services), 영국 에세이 작성 서비스(Essay Writing Service UK), 기본 및 2차적 건강지원(Primary and Secondary health support), 직업훈련관(Vocational instructors)이 대표적이다. Barnados와 Voice와 같은 민간 자선단체의 지원도 받으며, 형의 절차를 도와줄 변호서비스도 제공된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특별한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다양한 민간 기관들과도 협력한다.

시설 내에서의 서비스 외에도 ‘재정착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Resettlement and Aftercare Programme, RAP)’을 통해 시설을 떠날 때, 긍정적인 미래를 개발하도록 하고 사후 관리를 제공한다. 사후관리의 목적은 집중적이고 실제적인 도움과 지원을 통해 새출발할 수 있도록 하고, 비행에서 멀어지기 위해 필요한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관련 시설은 해당지역의 소년범죄대응 팀(Youth Offending Team)과 함께 위에서 언급된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과 도움, 고용과 거주에서의 도움을 줌으로써 새로운 출발과 재범 억제에 도모한다.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후관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단기 거주 시설 알선
- 긍정적 레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약물남용과 정신건강에 필요한 치료와 개입을 알선
- 자존감과 자신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지원
- 가족, 동료, 돌보는 사람들과 협력

5. 중간처우시설 관련 입법현황

중간처우 시설에 해당되는 ‘아동보호시설(Secure Children’s House)’ 배치 명령을 법원이 내리기 위해서는 1989년에 제정된 「아동법(Child Act)」 제25조에서 제시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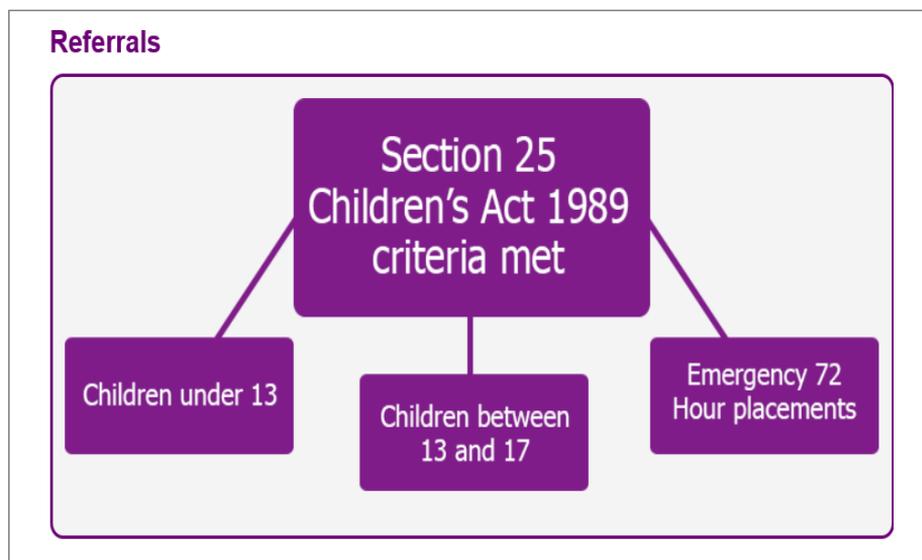
1. 무단이탈의 경력이 있는 청소년
2. 무단이탈을 한다면 제25(1)(a)조에 의거해 상당한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
3. 자기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제25(1)(b)조).

회부 절차에서 제시된 [그림 5-3]을 살펴보면 요건이 충족된 아동·청소년은 ‘13세 미만 아동³³⁾’, ‘13~17세 아동’, ‘비상 72시간 배치³⁴⁾’ 등 세 가지 경로로 해당 시설에

33) 13세 이하 아동의 복지적 회부로서 내무부 장관(Secretary of State)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승인서와 증명서를 보내야 회부가 진행된다.

34) 비상시 최장 72시간까지 청소년을 수용가능하다.

배치된다.



[그림 5-3] 회부절차³⁵⁾

6. 소년범 대상 중간처우 효과성 연구 검토

중간처우에 해당되는 '아동보호시설'에 대한 효과성 연구는 많이 실시되지는 않았으며 다른 두가지 형태의 구금시설과 함께 진단된 연구들이 많다.

소년사범 구금시설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시설을 출원한 소년사범이 높은 재범률을 보인다는 것에 주목하며 시설이 재범을 억제하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가장 최근 통계에 따르면 1년내 재범은 15% 수준이지만, 구금시설에서 출원한 소년사범의 재범률은 68.7%로 2004년에 비하면 6.8% 감소했지만 전년대비 1.5% 증가했다 (Ministry of Justice, 2017). Hayden(2010)은 시설 내 수용된 소년사범을 둘러싼 다양한 위험성으로 인해 시설은 재범을 억제하는데 실패하고 있으며, 세 개의 다른 형태의 구금 시설의 차별성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Gray(2011), Hazel 외(2002), Devitt(2011) 연구에서는 시설에서 출원하는 소년들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 계획이나 조치가 없기

35) Secure Children's Home 홈페이지(<http://www.securechildrenshomes.org.uk/partner-organisations/>)

때문에 재범 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 반면에 Stephenson(2003), Edcoms(2008), Hurry and Moriarty(2004) 연구에서는 시설에 수용된 청소년들이 긍정적으로 태도가 변하였으므로 재범 억제가 기대된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제시하고 있다.

2011년에 Prison Reform Trust는 수용된 소년사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Blades et al., 2011). 13세에서 17세 아동·청소년 23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들이 제시한 시설에서의 어려움 점으로는 친구와 가족과의 접촉이 일부 차단된 점, 사회복지사나 교사와의 관계성, 동료 친구들과의 관계성, 지루함 등이었다. 반면에 동료·교사·사회복지사와의 관계성이 좋고, 외부와 차단되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집중적인 교육 등은 장점이라고 제시하였다. 또한 소규모 맞춤형 교육 시스템으로 인해 학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학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긍정적인 활동에 참여하며 태도가 바뀌었으며, 이는 재범 억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소년사범이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자신들을 문제아로 접근하지 말고 다양한 필요와 갈망을 가진 인격체로 대해줄 것, 자신들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정보를 제공하고 고지해 줄 것, 안전하고 안정적인 시설을 제공해 줄 것, 자신들의 집과 가까운 곳에 배치해 줄 것, 부모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와의 잦은 만남, 사회복지사와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서 자신들의 필요에 대해 이야기할 경로를 확보하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2013년에 David Ellicott은 ‘대안적 미래 컨퍼런스(Alternative Future Conference)’에서 아동보호시설의 교육적 제공의 효과성을 진단하였다. 2011년과 2012년 사이에 지역 ‘아동보호시설’의 효과성을 진단하였다. 감사기관인 Ofsted의 보고서를 분석하였으며, 한 시설에 수용된 소년사범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이 실시되었다. 우선 Ofsted의 2010년 평가에서는 아동보호시설의 교육적 제공은 ‘상당한 진전(substantial improvements)’ 진단을 받았으며 특히 6개월 이하 거주 소년사범의 행동에 긍정적 변화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2012년의 Ofsted의 점검에서는 교육적 성과가 ‘좋다(good)’라는 평가를 받았다. 거주하는 소년사범 16명중에 13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는데, 13~17세 였으며, 소년과 소년이 함께 거주하는 시설이었다. 교육적 성과와 개인적 요인 두가지 면에서 소년사범들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스스로 진단하였

다. 입소시에는 40%의 아동·청소년이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 입소 후 생활하면서 75%의 아동·청소년이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5명 청소년에 대한 심층면접도 실시되었다. 청소년들은 아동보호시설에서의 생활에 대해 대체적으로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이전 교육에 비해 좋은 점으로는 좀 더 개별화되고 맞춤형 교육, 적은 인원, 좀 더 선생님들이 밀접하게 교육을 진행하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사, 직원들과의 친밀하고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유대감이 강해졌다는 점을 장점으로 제시하였다. 연구자는 소규모의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중심 프로그램이 소년사범에게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Tayer(2016)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소년사범 체계 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현재 영국 정부가 가장 엄중한 시설인 YOI 12개를 폐쇄하는 등 구금을 감소하는 전략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년사범에 대한 구금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바람직하지만, 소년사범의 집에서 시설이 멀어지는 단점도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세 개 형태의 시설 모두 직원이 부족하고, 직원의 전문성이 낮으며, 학교교육이 낮고, 사후관리가 부족하다고 평가하였다.

7. 영국 중간처우시설의 시사점

영국은 미국과 비교하자면 좀 더 명확한 형태가 제시되고 있으며, 3가지 형태의 수용시설 가운데 ‘아동보호시설(Secure Children’s Home: SCH)’은 우리나라의 6호 처분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시설 운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모든 시설에 전문교사가 배치되고 30시간의 교육이 제공되고 있으며, 모니터링과 정기 점검(inspection)은 교육감사 기관인 Ofsted, 소년사범 위원회, 보건부, 지방정부 등에 의해 실시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을 중요시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5개 시설의 시설장으로 구성된 ‘보안시설 네트워크(Secure Accommodation Network)’가 시설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촉진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정기적으로 만나서 국가정책을 검토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최고의 서비스와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방안을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국가기관과 협력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도 도입을 고려해 볼만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적절한 기관에 보내기 위해 판사들이 선택을 해야하는 반면, 영국은 판사의 처분 결정이 나면 모든 시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국가복지보장 유닛’에서 시설을 결정하고 있다. 시설 회부에 대한 절차와 각 기관의 역할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소년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해 다기관이 협력하여, 경찰, 사회복지사, 보호관찰관, 보건부와 교육부의 사무관으로 구성된 ‘소년범죄대응 팀’의 역할과 임무도 향후 우리나라에 도입을 고려해볼 만하다.

제3절 일본의 소년범 중간처우 형태

일본 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회적 양호시설로는 아동양호시설, 유아원, 정서장애아 단기치료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 모자생활지원시설, 자립지원홈, 아동가정지원센터가 있다.

아동양호시설(兒童養護施設)은 보호자가 없는 아동이나 보호자에게 감호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아동에 대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정하고 생활지도, 학습지도, 가정환경의 조정 등을 하면서 양육하고, 아동의 심신의 건전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유아원(乳兒院)은 보호자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유아동을 양육하는 시설로 주로 피학대아동, 질병이 있는 아동, 장애 아동 등을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 양육기능을 가지고 있다.

정서장애아단기치료시설(情緒障害兒短期治療施設)은 심리적·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아동에게 의료적 관점에서 지원을 기반으로 한 심리 치료를 하는 기관이다. 단기간(평균 2년 4개월) 시설내 구분 등 학교교육과의 긴밀한 협력을 하면서 종합적인 치료지원을 하고 있고, 아동의 가족에 대한 지원도 함께 하고 있다.

아동자립지원시설(兒童自立支援施設)은 아동의 행동상 문제, 특히 비행문제를 중점으로 대응하는 시설로, 1997년 「아동복지법」 개정에 의해 ‘교호원(教護院)’이라는 명

칭으로 변경되어 가정환경 및 기타 환경상 이유로 생활지도 등을 요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치료시설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

모자생활지원시설(母子生活支援施設)이란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모자가정을 주거 장소를 제공하는 시설로 과거 '모자원(母子寮)'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1997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시설의 목적에 '입소자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추가하여 명칭이 변경되었다.

자립지원홈(自立援助ホーム)은 「아동복지법」 제6조의2 제1항 아동자립생활원조사업의 일환으로, 의무교육을 마친 20세 미만 아동이거나 아동양육시설 등의 퇴소 또는 기타 도도부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이들이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자립지원홈)에서 상담 및 기타 일상생활상 원조, 생활지도, 취업지원 등을 받는 시설이다.

아동가정지원센터(児童家庭支援センター)는 1997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제도화된 것으로, 아동에 관한 가정, 기타 상담 중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아동상담소로부터 위탁을 받은 아동 및 그 가정의 지도, 기타 원조를 종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2008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시정촌의 요구에 응하여 기술적인 조언 기타 필요한 원조를 하는 사업도 함께 하고 있다.

〈표 5-1〉 일본의 청소년지원을 위한 사회적 양호시설 유형³⁶⁾

(2018년 10월 기준)

시설명	개소	정원	현원
아동양호시설	578	31,144	25,722
유아원	134	3,582	3,089
정서장애아단기치료시설	41	1,842	1,339
아동자립지원시설	55	3,597	1,329
모자생활지원시설	261	5,404	3,850세대 아동 6,015명
자립지원홈	82	504	310
아동가정지원센터	87	-	-

36) 후생노동성,

社会的養護の施設等について(<http://www.mhlw.go.jp/toukei/saikin/hw/fukushi/16/dl/sankou02.pdf>)

법원은 「소년법」 제24조에 따라 보호찰소 보호관찰 처분, 아동자립지원시설 또는 아동양호시설 송치처분, 소년원 송치처분을 할 수 있다. 아동자립지원시설과 아동양호시설 처분이 바로 시설내 처우이자 사회내 처우인 중간처우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보호처분은 그 기간의 상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법원이 소년의 비행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간 동안 수용할 수 있다. 다만, 보호관찰의 경우에만 20세까지 가능하고, 소년이 20세가 될 때까지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처분시로부터 2년이 된다.

〈표 5-2〉 일본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구분	보호처분의 종류
1호	보호관찰
2호	아동자립지원시설 또는 아동양호시설 위탁
3호	소년원 송치

「소년법」상 아동자립지원시설과 아동양호시설에 보호처분이 가능하나, 우리나라의 비행청소년을 위한 6호처분 시설 모델로는 아동자립지원시설이 보다 가까우므로 이하에서는 ‘아동자립지원시설’을 중심으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아동자립지원 시설 현황

가. 시설현황

아동자립지원시설은 주로 절도나, 부랑, 성적 비행, 상해, 공갈, 폭력, 난동, 반항, 태학 등 반인륜적·반사회적 불량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적절한 생활과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아동자립지원전문위원과 아동생활지원요원에 의한 생활지도, 교사에 의한 학과교육을 중심으로 자립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자립지원시설에서는 비행아동에게 심리적 교정과 처벌을 부과하는 곳이 아니라, 가정적인 소규모집단 속에서 정서의 안정을 촉진하는 한편, 생활이나 학습에 적극성을 기르는 직업생활에 대한 관심을 높임으로써 아동의 사회적 자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정환경 조정, 지역지원, 사후관리 등 기능에 충실하면서 비행문

제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시설에서 대응이 어려운 경우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아동자립지원시설은 직원인 실제부부와 그 가족이 입주하여 함께 생활하면서 입소 아동에게 일관되고 지속성 있는 지원을 하는 시설로, 전통적인 「소사부부제」, 「소사교대제」 지원형태를 갖춘 시설로, 소규모 가정관리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전문성을 가진 직원을 배치하여 소년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생활을 지향하고, 규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적·복지적 접근법에 의해 개별 아동의 성장과 자립지원을 돕는 시설이다. 「아동복지법」 제44조에 근거하여 도도부현에 아동자립지원시설의 설치 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며, 대부분 공립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에 의하면, 아동자립지원시설은 “불량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아동 및 가정환경 기타 환경상의 이유로 생활지도 등을 요하는 아동을 입소시키거나 보호자 하에 두면서 개별아동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하고, 퇴소한 자에게 상담 기타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아동자립지원시설 운영에 관하여는 「아동복지법」 제44조에 근거규정을 갖고 있으나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시설 최저기준」 제41조에 규정하고 있다. 아동자립지원시설의 일반적인 기준은 아동양호시설 기준을 따른다. 아동자립시설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자립지원시설은 거실, 조리실, 샤워실,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2. 아동의 거실 1실 정원은 15명 이하로 하고, 그 면적은 1인당 3.3제곱미터로 한다.
3. 입소하고 있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남자와 여자의 거실은 분리하여야 한다.
4.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별되어야 한다.
5. 아동 30명 이상을 입소시키는 아동양호시설에는 의무실과 정양실(靜養室)을 두어야 한다.
6. 입소하고 있는 아동의 연령, 적성 등에 따라 직업지도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아동자립지원시설의 취학지도에 관한 설비는 소학교, 중학교 또는 특별지원 학교의 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학교교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학과 지도를 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아동복지시설 최저기준」 제79조).

나. 종사자 배치 및 자격기준

1) 직원의 배치기준

아동자립지원시설에는 아동자립지원전문원(兒童自立支援專門員), 아동생활지원원(兒童生活支援員), 영양사, 조리원, 촉탁의사 및 정신과의 진료에 상당한 경험을 가진 의사 또는 촉탁의사, 개별대응직원, 가정지원전문상담원이 의무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다만, 아동을 40명 이하로 입소시키는 시설에서는 영양사를, 조리업무의 전부를 위탁하는 시설에서는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아동복지시설 최저기준」 제80조 제1항).

아동자립지원시설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도도부현 아동자립지원전문원 및 아동생활지원전문원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아동자립지원시설 전문원은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 종사하고, 아동생활지원전문원은 아동의 생활지원을 위해 종사한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 제2,3항). 아동자립지원전문원 및 아동생활지원원의 총수는 통상 아동 5인당 1명 이상 두어야 한다(「아동복지시설 최저기준」 제80조 제3항).³⁷⁾

가정지원전문상담원은 사회복지사 또는 정정보건복지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아동자립지원시설에서 아동의 지도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법 1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아동복지시설 최저기준」 제50조 제3항).

심리치료(心理療法)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동 10인 이상에게 심리치료를 하는 경우 심리치료담당직원을 배치해야 한다(「아동복지시설 최저기준」 제50조 제3항). 심리치료 담당직원은 학교교육법의 규정에 의해 대학학부로 심리학을 전공으로 하는 학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과정을 거쳐 졸업한 자, 동법 규정에 의해 대학학부로 심리학에 관한 과목단위를 우월한 성적으로 학습한 자로, 동법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학원에 입학할 인정받은 자로, 개인 및 집단심리치료 기술을 가지거나 심리치료에 관하여 1년 이상 경험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아동복지시설 최저기준」 제50조 제4항).

학습설비를 둔 직업지도를 할 경우 직업지도원을 두어야 한다.(「아동복지시설 최저

37) 兒童福祉施設最低基準(<http://www.mhlw.go.jp/bunya/kodomo/pdf/tuuchi-04.pdf>).

기준」 제80조 제2항)

2) 시설장의 자격기준

아동자립지원시설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생노동성조직규칙 제64조의2에서 규정하는 아동자립지원전문원양성소에서 아동자립지원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연수 또는 이에 해당하는 연수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아동복지시설 최저기준」 제81조).

1. 의사로, 정신보건에 관하여 학식경험을 가진 자
2.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3. 아동자립지원전문원의 직에 있었던 자 등 아동자립지원사업에 5년 이상 (양성소에서 아동자립지원
4. 전문원으로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학습하기 위해 강습과정을 수료한 자는 3년 이상) 종사한 자
5. 후생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가 앞에 기재된 자와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다음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양성소에서 강습과정을 수료한 자는 3년 이상)인 자
 - 1) 아동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는 아동복지사업에 종사한 기간
 - 2) 사회복지지사 자격을 가진 자는 사회복지 사업에 종사한 기간
 - 3) 사회복지시설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

3) 아동자립지원전문원의 자격기준

아동자립지원전문원은 다음의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아동복지시설 최저기준」 제82조).

1. 의사로, 정신보건에 관한 학습경험을 가진 자
2. 사회복지사로 자격을 가진 자
3. 지방후생국장 등이 지정하는 아동자립지원전문원을 양성하는 학교 기타 양성시설을 졸업한 자
4. 학교교육법의 규정에 의해 대학 학부에서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을 전공하는 학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자 또는 동법 규정에 의해 대학의 학부에서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에 관한 과목단위를 우수한 성적으로 수학하여, 동법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학원에 입학한 자로서, 1년 이상 아동자립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전조 제1항 제4호에 기재된 기간의 합계가 2년 이상인 자
5. 학교교육법 규정에 대학원에서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을 전공하는 연구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과정을 마쳐 졸업한 자로서 1년 이상 아동자립지원사업에 종사한 자 또는 전조 제1항 제4호에 기재된 기간의 합계가 2년 이상인 자
6. 외국대학에서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을 전공하는 학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과정을 마쳐 졸업한 자로서, 1년 이상 아동자립지원사업에 종사한 자 또는 전조 제1항 제4호에 기재된 기간의 합계가 2년 이상인 자
7. 학교교육법의 규정에 의해 고등학교 또는 중등교육학교를 졸업한 자, 동법 제90조 제2항 규정에 의해 대학에 입학한 자 또는 통상과정에 의해 12년의 학교교육을 수료한 자 또는 문부과학대신이 이와 동등 이상 자격을 가졌다고 인정된 자로서 3년 이상 아동자립지원사업에 종사한 자 또는

전조 제1항 제4호에 기재된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인 자
8. 학교교육법 규정에 의해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중등교육학교의 교과로 인정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1년 이상 아동자립지원사업에 종사한 자 또는 2년 이상 교원으로서 그 직무에 종사한 자.

4) 아동자립지원원의 자격

아동자립지원원은 보육사, 아동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3년 이상 아동자립지원사업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아동복지시설 최저기준」 제83조).

2. 아동자립지원시설의 교육프로그램

아동자립지원시설의 경우 생활지도, 직업지도, 학과지도 등을 주된 업무로 삼고 있다. 아동자립지원시설에서 생활지도 및 직업지도는 모두 아동이 그 적성 및 지능을 고려하여, 자립하는 사회인으로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아동복지시설 최저기준」 제84조 제1항).

학과지도의 경우 학교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학습지도요강을 준용한다. 다만, 학습지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아동복지시설 최저기준」 제84조 제2항). 아동자립지원시설에 입소한 아동에 대하여는 학교교육법에 규정된 보호자에 준하여 시설에 입소중인 또는 수탁중인 아동을 취학시켜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아동복지법」 제48조). 생활지도, 직업지도 및 가정환경의 조정에 대하여는 제44조 및 제45조 규정을 준용한다(「아동복지시설 최저기준」 제84조 제3항).

3. 아동자립지원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아동자립시설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근거규정을 두고 후생노동성에서 정기적으로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법」상 아동보호치료시설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상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법원에서 위탁지정을 하고 있으나 실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일본의 아동자립지원시설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근거규정뿐만 아니라 최소기준에 대한 별도규정을 두고 설치기준, 자격조건 등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 시설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점검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후생노동성의 관리감독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4. 아동자립지원시설 관련 입법현황

법원이 아동자립지원시설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는 「소년법」에 있으나, 아동자립지원시설의 설치근거에 관하여는 「아동복지법」 제45조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특이하게도 일본은 아동자립지원시설의 설치기준, 종사자 자격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후생성령 「아동복지시설 최저기준」이라는 지침을 통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³⁸⁾

5. 아동자립지원시설에 대한 평가

아동자립지원시설은 불량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아동과 환경적 영향으로 생활지도 등이 필요한 아동을 입소시키거나 보호자의 감독 아래 두기 위한 시설이라는 점에서 중간처우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으로 아동자립지원시설 위탁처분을 하는 사례는 매년 0.1~0.2%에 불과하고, 인원으로는 300여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아동자립지원시설 위탁의 비율이 낮은 이유는 아동자립지원시설에서 실제로 중학생을 중심으로 의무교육중인 아동에 한해 수용하고 있는 반면에,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은 14세 이상이기 때문에 가정법원이 이 보호처분을 활용할 여지가 좁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한 다른 처분과 달리 송치 후 가정법원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도 하나의 이유라 할 수 있다. 일본에서도 「아동복지법」과 「소년법」의 법률상 부정합과 연계의 불충분으로 활용도가 적다는 지적이 있다.³⁹⁾

38) 아동복지시설 최저기준 (<http://zenjikyoo.org/aboutus/leagulgroud/>, 2017. 10. 23 최종검색)

39) 사와노보리 토시오, 기본이념에서 개정문제까지 소년법, 강원대학교 출판부, 2007, 110쪽.

6. 일본 중간처우시설의 시사점

일본 아동자립지원시설의 경우 시설에 입소하게 되는 아동의 범위가 명확하기 때문에 유사기관간 대상아동에 대한 서비스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의 장점이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아동양호시설에 대한 최소기준을 정하고 후생성령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있어 유사기관간 역할과 기능에 혼란을 최소화하였다는 점이다.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최소기준은 해당소년에게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욕구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있어서도 소년의 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해 시설장이 의사경력이 있거나, 종사자 배치에 있어서도 정신과 진료에 경험이 있는 자를 자격기준으로 삼고 있어서 정신질환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에 대한 교육적 지원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제48조에서 아동자립지원시설에 입소한 아동에 대하여 학교교육법에 규정된 보호자에 준하여 시설에 입소중인 또는 수탁중인 아동을 취학시켜야 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아동자립지원시설의 지역별 설치기준을 도도부현 단위로 하고 있어 전국 58개 자립지원시설이 존재한다는 것에 있어서 6호처분시설의 절대부족난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과제를 제시해 주고 있다. 게다가 공립지원시설로 모두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 지원체계에서 일관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포하고 있다.

소년범대상 중간처우제도로서 6호처분의 활성화방안

이승현·박선영

소년범대상 중간처우제도로써 6호처분의 활성화방안

제1절 중간처우로서 6호처분의 정체성

1. 6호처분의 정체성 확립

6호처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간처우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6호처분 시설은 이른바 지역사회 교정, 사회 내 처우, 중간처우이다. 중간처우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가시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효과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기본이 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후반에 성인 및 소년 대상으로 한 중간처우 시설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평가연구가 실시되었으며, Allen 외(1978) 연구에서는 시설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시설 운영의 성공 요인 중의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면 대상자 선별 작업도 용이하게 이루어진다고 분석하였다. La Vigne 외(2007), Roman 외(2006), Butterfoss 외(1996) 연구 역시 교정교화와 관련된 프로그램과 제도의 평가연구를 진행하면서 해당 제도와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목표와 전략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보더라도 목표설정은 중요한 가치라고 여겨진다.

현재 6호처분을 중간처우라고 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시설내 처우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 중간처우는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의 중간단계에서 사회로의 원활한 진입을 위한 처우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현재 희망샘학교 1곳을 제외하고 대부분 시설에서는 폐쇄적인 시설내수용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 수용상황에서는 중간처우가 갖고 있는 고유의 기능을 살릴 수가 없고, 소년원과 같은 시설내 처우와의 차별성을 찾기 어렵게 된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 6호 처분시설의 목표에 대한 질문에서 가장 많은 응답자인 29.7%가 '청소년의 치유와 회복'을, 26.8%가 '학교와 가정으로의 복귀'를 제시하였으며 반면에 '비행행동에 대한 처벌'은 가장 적은 응답자(5.5%)가 제시하였다. 전문가 심층면접 조사결과에서 시설장그룹과 기타 전문가그룹 동일하게 참여자 9명이 모두 '복지적 관점으로 접근한 치유와 회복'이라고 응답하였다. 중간처우시설이 복지적 관점에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밖에 지원, 공동체, 도움 등의 단어를 통해 중간처우시설에서 사회복지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6호처분시설이 사회복지적 접근에서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폐쇄형 구조보다는 준개방형 형태의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해야 한다. 따라서 6호처분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기간동안 사회내로의 진입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없도록 6호처분은 준개방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6호처분시설이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의 중간지위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내 처우가 갖는 처벌과 교정의 관점에서 탈피할 필요성도 있다. 일본의 아동자립지원시설 설치목표에서도 보듯이 중간처우시설은 구금시설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중간처우시설에서는 구금을 통해 개선의 효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보호력을 개선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청소년회복센터(1호처분)과의 차별성

6호처분의 중간처우적 성격에의 목표설정에 있어서 혼란을 주었던 부분이 바로 청소년회복센터의 역할 부분이다.

「소년법」 제32조 제1호의 보호자감호위탁에서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의 의무가 있거나 현재 감호하는 자 등이 될 수 있는데, 보호자의 보호력이 미약한 경우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신병인수자원보호자 제도이다. 사법형 그룹홈인 청소년회복센터는 신병을 인수한 보호자로서 개인이 역할을 하던 것을 그룹홈인 시설이 가정의 보호력을 대신하고, 비행소년의 정신·심리상태와 사회적 관계회복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본래 1호처분은 보호자감호위탁으로 사회로 다시 돌려보내는 사회내 처우이었던

다. 그러나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회복지원시설로 인가받은 청소년회복센터는 보호자 감호위탁 형식에 의하고 있긴 하나, 운영면에서는 사법형 그룹홈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중간처우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년법」 내에 중간처우가 2가지 형태가 존재하게 되고, 각 중간처우의 필요성과 존재의의를 찾아서 개별화해야만 보호처분이 다양화될 수 있다.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를 통해 1호 청소년회복센터와 6호 아동보호치료시설이 중간 처우로서 구별기준을 가질 수 있는 기준을 확인하였다. 사법형그룹홈인 청소년회복센터는 보호자의 보호력을 대신하는 것으로 역할이 충분하기 때문에 부모의 보호력 외에는 모든 것이 개방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회복센터에서의 생활이 시설내 수용의 형태를 빌리고 있긴 하나, 가정을 대신한다고 보아 청소년의 생활이나 활동에 있어 제약이 최소화되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반면에 6호처분은 부모의 보호력을 대신할 뿐만 아니라 처우 이후에 바로 사회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적응훈련이 필요한 처우이기 때문에, 6호시설에서의 생활은 청소년회복센터에서의 생활보다는 조금더 제약이 있어야 하고, 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개입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시설규모에 있어서도 1호처분은 가정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수준의 5-10인 이하의 소규모 형태가 바람직한 반면에, 6호처분의 경우 가정의 보호력을 대신하긴 하나, 사회적응훈련을 위해 어느정도 규모의 집단생활이 가능해야 하므로 중형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6-1〉 1호처분과 6호처분의 구별기준

1호처분(청소년회복지원시설)	6호처분(아동보호치료시설)
개방형	준개방형
부모의 보호력	부모의 보호력+사회적응훈련
5-10명의 소규모그룹홈	40-50명의 중형규모

3. 소년원과의 차별성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6호처분은 준개방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6호처분 시설은 기본적으로 일정기간 시설내 수용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년원 처우와 혼란을 줄 수 있다.

전문가심층면접 결과와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더라도 6호처분은 사회적응훈련을 위해 복지적 관점에서 개입하여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개방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 경계를 넘나드는 일이 자유로워야 한다. 그러나 소년원은 시설내 구금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폐쇄성을 벗어날 수 없고, 교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주된 역할로 삼을 수밖에 없다. 관리감독에 집중하다보면 외부자원이 시설내로 들어오는데 있어서 제한요소가 생길수도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소년원은 관리감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수용인원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운영에 있어 어려움이 덜하다. 따라서 6호처분은 개방성의 요소도 지니면서 복지적 차원의 접근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소년원과 차별성이 있다.

〈표 6-2〉 8/9/10호처분과 6호처분의 구별기준

8/9/10호처분(소년원)	6호처분(아동보호치료시설)
폐쇄형	준개방형
교정의 관점	복지적 관점
60명이상 대규모 시설	40-50명의 중형규모

제2절 6호처분 대상자 선별방안

6호처분에 맞는 적절한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은 중도 탈락율을 줄이고, 처분에 있어 불공평하다는 문제제기를 줄일 수 있다(정진수 외, 2013). 미국에서 실시된 평가 연구들은 중간처우 시설이 저위험군 범죄자에게 적합하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고위험군 범죄자에게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정진수 외, 2013). 적정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은 처우의 다양성, 개별 처우, 맞춤형 처우라는 21세기 교정이 지향하는 목적도 성취할 수 있다. 따라서 학계, 실무계로 구성된 전문 인력들이 적정 대상자 선별을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 진단 도구를 개발해야 한다.

또한 6호 처분 시설에 배치됨으로서 최고의 효과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적정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은 1호 처분인 청소년회복센터와 소년원과의 차별성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우선 1호(청소년회복센터) 처분과 8, 9, 10호(소년원) 처분과의 차별성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종사자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결과, '보호소년과 직원과의 관계성' '외부자원의 활용'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다양성' 등이 주요한 차이점으로 제시되었다. 또 다른 형태인 중간처우인 1호(청소년회복센터) 처분과의 차별성에 대하여는 '수용인원'과 '시설 내 프로그램 운영 가능 등이 제시되었다.

6호 시설에 맞는 적정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종사자 설문조사에서는 '가정의 보호력(21.9%)', '대상자의 비행유형(19.7%)', '대상자의 비행경력(19.2%)' 이 제시되었다. 심층면접에서는 가출력이 있어서 가정의 보호력이 필요하지만, '가정의 보호력이 떨어지는 소년',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소년'이 적합하다고 응답되었으며, '폭력성이 지나치거나 정신병, 지적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응답하였다.

전문가심층면접과 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그리고 외국제도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6호처분에 적합한 대상자 기준을 제시해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6호처분 대상자는 가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보호력이 미약하여 일정기간 가정의 기능을 대신하여 줌으로써 보호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기대가능한 대상이어야 한다.

둘째, 6호처분 시설 직원과의 관계 형성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고, 시설내에서 생활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대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폭력성향이 강하여 집단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정신병 또는 지적장애 등으로 인해 개인이 밀착케어를 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대상은 6호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셋째, 사회자원을 활용하여 빠르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으려면 교육에 대한 의지 등을 가진 대상이어야 한다. 이러한 대상자가 수용될 경우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빠른 시간내에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비행력이나 비행유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미국의 평가연구에서 보듯이 단순히 비행력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대상이라 하더라도 집단생활을 통해 사회적응의지를 가질 수 있다면 6호처분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대상군이므로, 비행력만으로 대상자를 선별하는 방식은 자제되어야 한다.

제3절 6호처분시설의 운영개선방안

1. 예산의 국가사무 전환화

6호처분시설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재정적 지원이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른 아동복지시설과 달리 6호처분시설은 비행청소년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전국 단위의 시설이기 때문에 해당지역 거주자가 아닌 청소년이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자체의 예산에만 의존할 경우 해당지자체 거주지를 갖지 않는 비행청소년의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 우리나라 아동보호치료시설과 유사한 아동자립지원시설이 전국에 58개 설치되어 있고, 국공립이 56개소이지만, 사립시설은 2개에 불과하다. 경비부담에 있어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부담하고 있고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1인에 대하여 1년간 지원금액이 7600만원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현재 6호시설인 아동보호치료시설의 경우 예산지원을 지방사무가 아닌 국가사무로 전환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예산지원이나 인력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6호처분 시설의 지역별·시설별 편차를 최소화해야 한다.

2. 6호처분시설 운영기준

가. 시설 운영기준

현재 아동보호치료시설인 6호 처분시설은 보건복지부 관할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분류되어 아동복지시설과 동일한 운영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6호처분 시설의 효과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심층면접에서 시설장들은 6호 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다른 기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예산의 경우, 지자체에서 수용된 보호소년에 대한 기초수급대상자 지정을 해야 하며 이 절차가 2개월이 걸리는 점, 기초수급대상자가 아닌 경우 예산지원이 안되는 점, 보호소년이 자발적으로 기간을 연장할 경우 기초수급지원이 안되는 점, 담당 직원의 이해가 부족하여 이로 인해 예산지원에 갈등이 유발 되는 점 등을 지적하며 중앙부처에서 이를 고려해

관리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인력에 대해서도 일반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청소년들은 학교를 가지만, 6호시설은 시설 내에서 모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인력이 부족하고,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화 되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는 6호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아동보호치료시설에 적합한 시설 운영기준안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7개 기관 시설장과 종사자, 학계 전문가를 포함하는 운영기준안 개발 TFT를 구성해서 실효성 있는 시설운영기준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지원시설이라 하더라도 최저기준에 대하여 후생성령을 통해 각 지원시설의 성격에 맞는 시설기준안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만하다.

나. 종사자 배치기준

현재 「아동복지법」상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은 다른 아동복지시설 유형과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긴 하나, 전체적으로 일반아동양육시설의 조건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6호처분시설은 비행청소년의 관리감독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아동의 시설 기준보다는 보다 강화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6호처분시설에서는 야간 이탈 우려 등을 고려하여 24시간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생활지도를 위한 인력기준이 보다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육사 기준이 현재 아동 7명당 1인보다는 강화되어 아동 5인당 1인 또는 그 수준보다 더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비행청소년의 경우 상당부분 정신질환 또는品行장애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상심리전문가의 비중이 보다 높아져야 한다. 소년원생만 하더라도 정신질환자의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6호처분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에서도 관계자가 정신질환 청소년의 입소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체감한다는 의견을 낸 기관이 많았다. 따라서 전문적인 상담치료 개입을 위해 임상심리전문가 등 전문가의 개입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종사자의 배치기준에서 의사, 간호사가 있으나 실제 실태조사 결과 간호사는 대부분 시설에서 채용하고 있지만, 의사를 채용한 시설은 단 한 곳도 없다. 인건비

부족 등을 이유로 의사를 채용할 수가 없고, 채용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외과적 치료에 집중한 치료를 하고 있어서 6호처분 대상자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정신적 치료 등에 개입이 어려운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부분 시설에서는 입소시 신체검사를 비롯하여 치료가 필요한 사항을 외부기관 진료를 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긴 하나,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있어 기관의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예산확보를 통해 의사의 채용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거나, 군의관과 같은 의료적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집단의 채용기회를 열어주어 의료적 개입이 보다 현실화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다. 시설의 형태 및 운영기준안

앞서 6처분과 1·8·9·10호처분과의 차별성을 위해서는 6호처분의 시설형태가 ‘준개방형’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기술한 바 있다. 준개방형 시설로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설내 규정운영 및 자체운영규칙 등이 준개방형 시설에 맞게 재편될 필요성이 있다.

현재 모든 7개 6호처분시설에는 아동복지시설 기본형태에서 만들어진 시설내 규정과 자체운영규칙뿐만 아니라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생활 규정안이 있다. 6호처분시설의 준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정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수용된 소년사범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자율성과 책임성, 참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모든 시설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엄격한 표준화된 규정과 교칙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시되고 있지만(정진수 외, 2013),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기관(법원, 법무부, 교육부 등), 시설 운영자, 수용된 소년사범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된 사안에 대해서는 모든 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안을 제시하되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개발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제4절 6호처분시설 전문화된 프로그램 마련방안

6호 처분시설은 1호처분인 청소년회복센터와 비교한다면 수용인원의 규모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므로 시설 내에서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하다.

국가가 운영하는 소년원과 비교한다면 소년원에 비해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고 외부 자원이 활용되고 외부 시설이 연계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소년원에 비해 재원의 확보와 프로그램의 안정성 면에서는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인 아동보호치료시설인 관계로 소년사범의 비행성에 대한 대응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이미 선행연구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와 90년대에 실시된 소년사범 중간처우 시설에 대한 평가연구에서 오히려 소년원에 수용된 아동·청소년 보다 문제행동이 더 많고 재범률이 더 높다고 보고되었다(정진수 외, 2013). 문제의 원인을 진단한 결과 비행예방을 목표로하는 전문화된 프로그램이 부재하다는 것이 원인중의 하나로 제시되었다(Latessa & Smith, 2010)). 따라서 소년사범을 수용하는 중간처우 시설에 비행행동을 수정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도입되어 운영되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이 소년사범의 재범을 억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Nas et al., 2005).

선행연구에서 지적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비행성에 초점을 둔 전문화된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시설 운영상 어려운 점에 대한 종사자들은 ‘예산상의 어려움’(3.72)⁴⁰⁾을 가장 높게 인식하게 있었으며 반면에 ‘청소년 비행성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의 부재’는 2.87로 보통보다 낮은 점수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6호 처분 시설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에서는 ‘비행예방교육’(17.3%)이 가장 높게 제시되었으며 이후, ‘심리치료’(17%), ‘부모 및 가족상담’(16.8%), ‘개인 및 집단상담’(14.5%), ‘교과/학습교육’(검정고시)(13.3%), ‘직업/진로교육’(10%) 순이었다. 이러한 응답은 보호소년을 관리감독하는데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 결과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40) 답변으로는 5점 척도인, 전혀그렇지않다(1점), 별로 그렇지않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제시하였다.

어려운 점에 대해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온 항목은 '보호소년이 거짓말, 규칙 미준수 등 시설 부적응 행동을 하는 점'이 3.66 이었으며, '보호소년의 폭력성(언어/신체폭력)'이 3.47점, '보호소년이 학업/진로에 대한 의욕이 없는 점'이 3.45, '보호소년이 가족과 관계가 나쁜 점'이 3.37 순으로 보호소년의 비행성에서 나온 행동들이 종사자들에게 어려운 점으로 다가움을 알 수 있으며, 비행예방 전문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비행성 예방 프로그램 외에도 학령기 아동·청소년임을 감안한다면 교육에 관한 전문성이 보장된 프로그램이 가장 먼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6호 처분 시설에 입소 하면 학업을 지속하던 보호소년은 이곳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출석이 인정되어 학업이 지속될 수 있다. 반면에 이미 학교를 그만둔 학업중단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시설에서 대안학교를 위탁받아서 학력을 인정받거나 검정고시를 공부해야 한다. 7개 시설의 경우 학과교육에 해당되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안교육 기관 위탁을 받은 시설도 있다. 종사자 설문조사에서 10개의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모든 프로그램들이 4점을 넘어서, 종사자들은 현재 모든 프로그램들이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종사자들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교과/학습교육(검정고시)'로 4.83이며, '개인 및 집단 상담'이 4.59, 생활지도가 4.56 순이었다.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프로그램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로는 7명중에 2명이 학과교육, 2명이 인성교육, 2명이 상담, 1명이 모두 중요하다고 답변하여, 학과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 알 수 있었다. 또한 협력이 필요한 기관에서 대한 심층면접에서도 보호소년들이 학령기 아동·청소년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협조가 필요하며 교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심층면접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해 교육에 투자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처럼, 현재 7개 시설이 운영하는 교육은 시설의 위치나 재정 상황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의 질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 미국의 경우 앞서 소개된 펜실베이니아 주의 Adelphoi Village에서 「공립학교법(The Public School Code)」 제1306조에 의거해서 대안학교를 설립하여 시설 내에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시설에 거주하는 소년사범은 물론 인근 중간처우 시설에 거주하는 소년사범도 모두 학교 교육을 받게 하고 있다. 교사는 직접 채용하고 인건비는 교육부에서 부담하여 교육활동비는 시설에서 부담하

고 있다. 영국의 경우 소년사범 대상 중간처우의 집을 기숙사형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와 동일한 스케줄을 적용하며, 주당 30시간의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 하였다. 또한 교육감사기관인 Ofsted가 중간처우의 시설이 매우 높은 국가의 최소 기준들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모니터링 하고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설문조사나 심층면접에서 모두 예산의 어려움, 예산의 한계로 인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 등이 제시되었다.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성을 갖춘 인증된 프로그램들이 도입되는 것에 대해 모니터링과 점검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제5절 6호처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방안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6호처분 시설을 법무부에서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비행을 저지르고 형사사법체계 안에 들어온 소년사범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는 면에서 법무부 관할이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중간처우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복지를 관할하는 국가기관이 관할하여 민간에 위탁을 주는 현행 방식을 고수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안윤숙, 2011). 미국의 경우에는 법령에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의무와 권리를 지정하였지만 시설 운영은 주 정부 혹은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으며, 법무부 산하 사법지원청(Bureau of Justice Assistance), 교육부 등에서 운영에 대한 감사를 받고 있다. 영국의 경우 지방정부가 소년사범 중간처우의 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년법원에서 구금형을 선고받은 소년은 지방정부에서 이를 접수하고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국가복지보장 유닛(National Secure Welfare Commissioning Unit, NSWCU)’ 팀에 해당소년에게 적절한 기관을 배치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중간처우 시설의 감사는 교육부 감사를 받게 되며, 시설에 배치된 보호소년은 경찰, 사회복지사, 보호관찰관, 건강과 교육부 사무관 등으로 구성된 소년범죄 대응팀(Youth offending teams)의 지원을 받게 된다. 관리감독을 관할하는 주무부서는 있지만 다기관이 협력하여 한명의 소년사범을 다각도로 지원하는 형태이다.

본 연구에서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적합한 관리·감독에 대해 가장 높은 응답은 '현행처럼 법원에서 지정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관리·감독한다'로 74.8%의 응답자가 답변하였으며, 13%는 법무부를, 5.3%는 법원, 4.6%는 보건복지부, 1.5%는 기타기관, 0.8%는 지자체를 통합 관리·감독 기관으로 제시하였다. 심층면접에서는 9명 모두 현행 방식대로 보건복지부가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법원이 관리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5.3%에 이르렀다. 법원이어야 한다고 평가한 이유를 보면 '보건복지부 관리감독에 부정적이며, 법원에서 보호감독에 더 집중할 필요성이 있어서'가 1.6%였다. 가장 협조가 잘되는 기관이 법원(4.44)으로 88.9%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0.7%만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보호대상소년들이 법원을 통해 배치되고 있으며, 판사나 법원 관계자가 정기적으로 시설을 방문하는 관례를 고려한다면 가장 협조가 잘되는 기관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법무부가 비행청소년과 가장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통합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13% 있었다. 그러나 전문가심층면접 그룹에서는 법무부의 관리감독에 대하여 대부분 반대입장이었다. 법무부는 교정의 관점에서 비행소년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시설내 처우와 차별성을 두기 어렵고, 공무원의 책임성으로 인한 관리자 중심 마인드를 가지다 보니 교정사고를 줄이는 것에 집중하게 되며 이로 인해 비행청소년에 대한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설문조사 결과 현행처럼 법원에서 지정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관리·감독하자는 의견이 74.8%로 가장 높았다.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할 경우 복지적 관점에서 관련기관 접근이 용이하다고 보았다. 전문가 심층면접에서도 12명중 11명이 현재대로 보건복지부 관할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복지적 접근의 필요성, 개별처우의 필요성, 맞춤형 처우의 필요성, 자율성 강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현재는 이러한 필요성 등이 어느 정도 충족되고 있지만, 법무부가 관할을 하게 되면 이러한 현재의 시도들이 가능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내에 6호처분 시설 담당자를 지정하여 좀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하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입법적 논의가 진행된 것과 달리 법무부가 6호처분시설에 대한 관리감

독권을 갖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 의견이 상당하다. 따라서 관리감독권에 대한 논의는 각 기관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6호처분시설의 특성상 다양한 사회자원이 유입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원활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권의 이양보다는 자원유입에 한계가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이 시급해보인다. 아동보호치료시설 예산지원의 국가사무로의 전환화, 교육적 지원강화를 위한 임용대기교사의 교육지원, 사후관리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보호관찰과의 협력방안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제6절 6호처분 이후 사후관리방안

재범을 방지하는 다양한 교정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한 연구자들이 공동적으로 제시하는 성공요인들 중의 하나는 바로 사후관리를 통한 지속성과 연속성의 확보이다 (Andrews, 2000; MacKenzie, 2006; Aos et al., 2006). 소년원, 청소년회복센터, 6호처분 시설의 운영자들은 6개월, 1년, 2년의 시설생활 동안 시작된 긍정적인 변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과 인력의 한계로 인해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소년사범들이 또 다시 비행친구, 보호력 없는 가정, 갈등이 많은 가정, 무관심한 학교 등 다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형태는 61.4%로 '전화·문자·SNS 등으로 안부 확인'하는 것이었으며, 21.7%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다른 시설에 연계' 13.3%는 '지역사회의 다른 시설 및 프로그램에 연계', '직원의 가정방문 등 정기적 대면상담'은 1.8%, '기타'는 0.6%였으며 1.2%는 사후관리를 안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과반수 이상이 소극적인 형태의 안부 인사 정도이며 재단을 통한 연계와 다른 시설 연계 등, 다른 기관으로 연결해주는 정도만으로 사후관리가 이루어졌다. 정기적인 대면상담은 1.8%에 그쳐 실제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겠다. 그러나 최근에 홈커밍 테이블 만들고 정기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는 시설과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대학 진학하는 출원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시설도 생겨났으며, 심층면접

에서는 본 시설에서 함께 운영하는 자립지원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현재 대다수의 시설들이 대상소년이 출원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보호력이 없는 경우 여성가족부, 법무부, 혹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다른 시설에 연계해주는 방법을 활용하고는 있지만, 해당 시설들은 소년사범의 특성을 고려하고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해당 소년사범을 거부하는 문제, 기존의 청소년들과의 갈등 문제, 그곳 시설 운영자들이 소년사범을 차별하는 문제, 소년사범의 부적응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돌봄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소년사범들의 심리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회복센터나 6호 시설만의 자립지원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제시된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아델포이 빌리지에서 실시하는 특화된 독립생활 프로그램(Specialized Independent Living Program)은 16~20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출원한 청소년에게 4~6개월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곳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최소한의 감독을 받으며, 요리, 청소, 구직, 집안 관리, 자산관리, 교육지원, 학업을 지속하도록 도움과 지도를 받는다. 오하이오 주의 라이트 하우스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자와 인턴을 모집하여 시설 생활에 대한 도움, 교육적 도움, 출원 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돌보는 아동·청소년에게 전문적 케어를 제공하기 위해 마약남용 방지 기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Children's and Adolescent's Mental Health Support), 변호서비스(Advocacy Services), 영국 에세이 작성 서비스(Essay Writing Service UK), 기본 및 2차적 건강지원(Primary and Secondary health support), 직업훈련관(Vocational instructors) 등 많은 기관과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Barnados와 Voice와 같은 민간 자선단체의 지원도 받으며, 항의 절차를 도와줄 변호서비스도 제공된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특별한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다양한 민간 기관들과도 협력한다. 출원을 앞둔 소년사범들은 해당지역의 소년범죄대응 팀(Youth Offending Team)이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과 도움, 고용과 거주에서의 도움을 줌으로써 새로운 출발과 재범 억제를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6호처분 시설 이용 이후에 사회정착의 기회를 보다 가질

수 있는 자립지원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이 요구된다.

첫째, 6호처분 이후 사후정착을 위한 전문시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소년원 퇴원생을 위한 자립생활관도 8곳이나 신설되었고, 경기도 화성에 숙식형 직업교육 학교인 YES센터도 신설되었다. 그러나 이들 시설은 소년원 출원생을 위한 시설이라 소년원 수용규칙들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6호처분기관에서 보다 개방적인 생활과 규칙에 있었던 청소년에게 맞지 않아 시설을 보내더라도 이탈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6호처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사후정착과 장기간의 직업훈련이 가능한 전문시설이 신설되어야 한다.

둘째, 6호처분 대상자의 경우 대부분 퇴소 이후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 보호관찰 단계에서 개입이 6호처분 퇴소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고, 6호처분 대상자의 욕구와 개인사정을 파악하는데 상당시간이 소요되어 보호관찰에서 즉각적 개입이 어렵다. 부산의 경우 학교-보호관찰-청소년회복센터가 연계되어 시설 수용기간 중에도 보호관찰관과 학교교사가 해당학생에 대한 처우상황을 살피고 다음 연계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따라서 6호처분 이후 보호관찰과의 즉각적인 연계를 위해 시설 수용기간내 또는 퇴소 3개월전부터 보호관찰관이 관리감독에 참여하여 보다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처우에 있어서 흠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7절 6호처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입법개선방안

앞에서 다양한 제도의 개선을 제안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지원을 위해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시설 규정에 아동보호치료시설에 대하여 지방재정에서 국가지원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아동보호치료시설에 대한 예산은 국가부담으로 한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법원의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아동이 기초생활수급을 받기 위한 지역이전시 관련지자체에 증빙과 관련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받는데 1-2개

월이 소요되고 이 기간동안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법원의 보호처분 결정문만으로 기초생활수급지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보호치료시설의 기초생활수급에 대한 증빙은 보호처분결정서로 갈음한다”를 지자체 기초생활수급 관련규정에 신설해야 한다.

셋째, 6호처분시설이 대안교육시설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청소년시설이라는 이유로 교육기관의 관여가 부족한 바, 6호처분시설 아동에 대한 대안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에 예비교원에 대한 교육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도 학점관리, 온라인 교육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 김세연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2008), 소년보호처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수탁 기관을 중심으로.
- 김준호/이순래(1994), 소년수탁시설의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선(2002), 4호처분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선(2016), “중간처우시설(6호처분 시설)의 문제점 및 입법과제”, 소년 중간처우시설 운영, 이대로 좋은가?, 국회의원 정성호 정책토론회.
- 김지선(2005), “소년법에 대한 보호처분의 내실화, 다양화 방안”, 소년법 개정논의자료집, 법무부 소년법개정특별위원회.
- 박미숙(2006), 소년법에 대한 중간처우제도 도입에 관한 예비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법무연수원(2016), 범죄백서.
- 법원행정처(2014), 법원실무제요: 소년.
- 보건복지가족부(2009),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개선방안.
- 사와노보리 토시오(2007), 기본이념에서 개정문제까지 소년법, 강원대학교 출판부.
- 서정아/박선영(2016),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안병경(2006), “소년법에 대한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의 연계방안”, 보호 통권 18권, 법무부.
- 안윤숙(2011), 보호소년 위탁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승현(2010), 아동복지시설 위탁처분(6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 제15호, 한국소년정책학회.
- 임영식 외(2017), 청소년회복센터의 현황 및 발전방안, 법원행정처.
- 전국아동보호치료시설협회(2016), 전국아동보호치료시설 현황자료.
- 정진수 외(2013),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태식(2006), “소년법상 보호처분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교정복지연구 제3호.

2. 외국 문헌

- Allen, H.E., Carlson, E.W., Parks, C., Seiter, R.P. (1997). *Halfway Houses*. Rockville, Maryland: National Institute of Law Enforcement and Criminal Justice, U.S. Department of Justice.
- Andrews, D. A. (2000). Does correctional treatment work? A clinically relevant and psychologically informed meta-analysis. *Criminology*, 28, pp. 369-404.
- Aos, S., Mill, M. & Drake, E. (2006). *Evidence-based Public Policy Options to Reduce Future Prison Construct Criminal Justice Costs, and Crime Rates* Olympia, WA: Washington State Institute of Public Policy.
- Barth R.P. (2002). *Institutions vs. Foster Homes: The Empirical Base for a Century of Action*. School of Social Work, Jordan Institute for Families;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https://www.crin.org/en/docs/Barth.pdf>)
- Blades, R., Hart, D., Lea, J. and Willmott, N., (2011). *Care- a stepping stone to custody? The views of children in care on the links between care, offending and custody*. London: Prison Reform Trust.
- Burnett, R., & Eaton, T. (2004) 'One-to-one ways of promoting deinstitutionalization: an evidence-based review' in R. Bunnett and C. Rots eds.) *What works in probation and youth justice: Developing Evidence-Based Practice*. Hullompton: Willan.
- Burns, B.J., Hoagwood, K., and Mrazek, P. (1999). Effective treatment for mental disorder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2, pp. 199-254.
- Butterfoss, F.D., Goodman, R.M., Wandersman, A., Valois, R.F. and Chinman, M.J. (1996). The Plan Quality Index: An empowerment evaluation tool for measuring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plans. In Fetterman, D.M., Kaftarian, S.J. and Wandersman, A. (eds), *Empowerment Evaluation: Knowledge and Tools for Self-assessment and Accountability*. Sage, Thousand Oaks, CA, pp. 304-331.
- Chamberlain, P. and J. B. Reid (2003). *Using a Specialized Foster Care Community*

- Treatment Model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Leaving the State Mental Hospital.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19, pp. 226-276.
- Charlie Taylor. (2016) Review of the Youth Justice System in England and Wales
Ministry of Justice
- Courtney, M. E. (1998). Correlates of socialworker decisions to seek treatment-oriented out-of-home car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0(4), pp. 281-304.
- Devitt, K. (2011). Young adults Today: substance misuse and young adult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fact file, Brighton: young people in focus. (https://researchportal.port.ac.uk/portal/files/1587615/Young_People_in_Focus_Young_Adults_in_CJS_Substance_Misuse_FACT_FILE_2011.pdf)
- Dishion, T. J., K. M. Spracklen, D.W. Andrews, and G. R. Patterson. (1996). Deviancy in Training in Male Adolescent Friendships. *Behavior Therapy*, 27, pp. 327-390.
- Edcoms. (2008). Education, Training and Employment Source document. London: Youth Justice Board.
- Gray, P. (2011). 'Youth custody, resettlement and the right to social justice' *Youth Justice*, 11(3), pp. 235-249.
- Hayden, C. (2010). Offending behaviour in care: Is children's residential care a 'criminogenic' environment?, *Child and Family Social Work*, 15, 4, pp. 461-472.
- Hazel N, Hagell. A., Liddle M, Archer D, Grimshaw R, and King J. (2002). Detention and Training: Assessment of the Detention and Training Order and its impact on the secure estate across England and Wales, Youth Justice Board for England and Wales.
- Hockenberry, S., Sickmund, M., and Sladky, A. (2016). Residential Facility Census.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 Hurry, J. and Moriarty, V. (2004). The National Evaluation of the Youth Justice Board's Education, Training and Employment Projects, London: University of London and Youth Justice Board.

- La Vigne, N.G., Brell, D. and Small. (2007) Evaluation of Flora's Faith-Character-Based Institutions: Final Report. Urban Institute Justice Policy Center Washington, DC.
(<https://www.urban.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46791/411561-Evaluation-of-Florida-s-Faith-and-Character-Based-Institutions.PDF>)
- Larzelere, Robert E., Daly, Daniel L., Davis, Jerry L., Chmelka, M. Beth, Handwerk, Michael L.(2004) Outcome Evaluation of Girls and Boys Town's Family Home Program, Education and Treatment of Children Vol. 27 No. 2, pp. 130-149.
- Latessa, E & Allen, HE. (2011). Corrections in the community. Cincinnati: Anderson
- Latessa, E. J., C. T. Lowenkam, and K. Bechtel. (2009). Community Corrections Centers, Parolees, and Recidivism: An Investigation into the Characteristics of Effective Reentry Programs in Pennsylvania. University of Cincinnati, Center for Criminal Justice Research.
- Latessa, E., L. Brusman, and P. Smith. (2010). Follow-up Evaluation of Ohio's Community Based Correctional Facility and Halfway House Programs-Outcome Study. School of Criminal Justice, University of Cincinnati.
- Leeman LW, Gibbs JC, and Fuller D. (1993). Evaluation of a multi-component group treatment program for juvenile delinquents. Aggressive Behavior, 19, pp. 281-292.
- Leve LD, and Chamberlain P. A. (2007). Randomized evaluation of Multidimensional Treatment Foster Care: Effects on school attendance and homework completion in juvenile justice girls.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17, pp. 657-663.
- Lipsey, M. and D. Wilson. (1998). Effective Intervention for Serious Juvenile Offenders: A Synthesis of Research. pp. 113-336 in R. Loeber and D.P. Farrington (eds.), Serious and Violent Juvenile Offenders: Risk Factors and Successful Intervention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MacKenzie D.L. (2006). What works in corrections? Reducing the criminal

- activities of offenders and delinquent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Carthy B.R. and Bernard J. McCarthy and Matthew Leone. (2001). Community Based Corrections.
- Ministry of Justice/Youth Justice Board (2017) Strategy for the secure estate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England & Wales: plans for 2011/12-2014 consultation document, Ministry of Justice, London
- Nas C, Brugman D, and Koops W (2005). Effects of a multicomponent peer intervention program for juvenile delinquents on moral judgment, cognitive distortions, social skills and recidivism. *Psychology Crime and Law*, 11, pp. 421-434.
- Nas C, Brugman D, Koops W. (2005). Effects of the EQUIP programme on the moral judgment, cognitive distortions, social skills of juvenile delinquents, *Psychology, Crime and Law* Vol. 11 Issue 4, pp. 421-434.
- Roman, J., Brooks, L., Lagerson, E., Chalfin, A., Tereshchenko, B. (2007). Impact and Cost-Benefit Analysis of the Maryland Reentry Partnership Initiative, Urban Institute, Washington D.C.
(<https://www.urban.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46196/311421-Impact-and-Cost-Benefit-Analysis-of-the-Maryland-Reentry-Partnership-Initiative.PDF>)
- Ryan, J. P., Abrams. L. S., Huang Hui. (2014). First-Time Violent Juvenile Offenders: Probation, Placement, and Recidivism. *Social Work Research* 38(1), pp. 7-18.
- Ryan, J. P., and Testa, M. F. (2005). Child maltreatment and juvenile delinquency: Investigating the role of placement and placement instabilit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7, pp. 227-249
- Ryan, J. P., Marshall, J. M., D. Herz, and P. M. Hernandez (2009). Juvenile Delinquency in Group Welfare: Investigating Group Home Effect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0, pp. 1088-1099.
- Satcher, D. (1999). *Mental Health: A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 Washington,

D.C.

Sedlak, A.J. and Bruce, C. (2010). Survey of Youth in Residential Placement: Youth's Characteristics and Backgrounds. SYRP Rport. Rkville, MD: stat.

Stephenson, M. (2003). Young People and offending: Education, youth justice and social inclusion. Cullompton: Willan Publishing.

Thompson, R. W., Smith, G. L., Osgood, D. W., Dowd, T. P., Friman, P. C., and Daly, D. L. (1996). Residential Care: A Study of Short- and Long-term Educational Effect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8(3), pp. 221-242.

児童虐待相談の対応件数及び虐待による死亡事例件数の推移

(http://www.mhlw.go.jp/seisakunitsuite/bunya/kodomo/kodomo_kosodate/dv/dl/120502_01.pdf)

児童相談所運営指針等の改正について

(<http://www.mhlw.go.jp/bunya/kodomo/dv11/>)

児童相談所全国共通ダイヤルのフロー

(<http://www.mhlw.go.jp/bunya/kodomo/dv39/dl/01.pdf>)

平成28年度全国児童相談所一覧

(<http://www.mhlw.go.jp/bunya/kodomo/dv30/zisouichiran.html>)

吉田耕平(2013)「児童養護施設の職員が抱える向精神薬投与への揺らぎとジレンマ」『福祉社会学研究』10号

児童福祉施設最低基準

(<http://www.mhlw.go.jp/bunya/kodomo/pdf/tuuchi-04.pdf>)

厚生労働性,社会的養護の施設等につ

(<http://www.mhlw.go.jp/toukei/saikin/hw/fukushi/16/dl/sankou02.pdf>)

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Halfway Treatment for Delinquent Juvenile : Focused on the Protective Disposition No.6

Lee, Seung-hyun · Park Sun-young

Halfway treatment is alternative of institutional treatment. It means halfway house into prison and referral to child welfare institution is representative disposition in Juvenile Justice. Protective disposition No.6 applies to child or juvenile under vulnerable family environment. Halfway house plays a role of parent for them during 6 month. Among all protective disposition, application rate of disposition no. 6 is under 4%. It results from lack of understanding of disposition no.6 and from lack of facilities.

This study suggests the way to improve disposition No.6 as follows:

First, identity of disposition No.6 needs more clarity. Disposition No.6 is obviously halfway treatment, but actual operational situation is similar to institutional treatment. Thus, the halfway house should be semi-opened facility and need to break punitive and correctional perspectives.

Second, it is vital to select proper juveniles for disposition No.6. The appropriate subject for disposition No.6 are juveniles under vulnerable home environment so that recovery of family function should be available through the role of halfway house. Moreover, they need to get used to a group life. Mentally disordered or violent juveniles should be excluded.

Third, child welfare institution need to operate by national budget not by local government. Also, facility standard have to meet that of child welfare institution, which operate 24hours, not that of child care institution. Regarding the standard of worker should be strengthened.

Forth, development of specialized program and monitoring of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are also important to differentiate from disposition No.1 facilities.

Fifth, supervision of management for the disposition No.6 facility needs to be tightened for systemic operation. Aftercare facility such as Independent Living Center should be provided. Also, juveniles need to be connected to probation before discharge from the disposition No.6 facilities without the gap of treatment.

Sixth, regarding legislative improvements, provisions for budget support by nation need to be newly established. Also, related provisions of basic living security need to be revised in order not to make financial gap.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should be revised for educational support.

부록

[부록1] 위탁소년 대상 설문조사지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6호처분시설 생활경험 및 인식조사

ID					T Y P E	소년용
----	--	--	--	--	------------------	-----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국가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소년, 그리고 시설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6호처분 시설의 생활경험 및 인식, 태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는 6호처분 시설의 이용청소년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귀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다소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바람직한 형사정책을 위해 성실히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개인의 비밀을 보장하도록 관련 법률로 규정되어 있고, 설문내용 역시 학술적 목적 외에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8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 연구 주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 책임 : 이승현 연구위원

조사일시	2017년	월	일	에디팅 확인	입력 확인
------	-------	---	---	-----------	----------

[응답자기입란]

SQ1. 성별	1) 남성 2) 여성
SQ2. 연령	()년생 만()세
SQ3. 입소 기간	()개월
SQ3. 입소 시설명	
SQ5. 입소 전 살았던 곳	()도 ()시/군/구

PART 1. 시설 입소 경험 및 실태

1. 여러분은 6호처분을 받아서 이 시설이나 다른 시설에 들어간 적이 있나요?

- ① 있다. (☞1-1번으로 가세요) ② 없다. (☞2번으로 가세요)

1-1. 이전에 와 봤다면 몇 번이나 왔나요? (이번 입소 횟수 포함)

→ ()번

2. 여러분은 이번에 어떠한 잘못으로 이 시설에 들어왔나요?

- ① 재산범죄(절도,사기,공갈) ② 성범죄(강간,강제추행) ③ 폭력범죄(폭행, 상해)
- ④ 금융범죄 ⑤ 교통범죄 ⑥기타 ()

3. 여러분은 과거 소년원에 처분을 받아 가본 적이 있나요?

- ① 있다. ()번 ② 없다.

4. 여러분은 과거 보호관찰을 받은 경험이 있나요?

- ① 있다. ()번 (☞4-1번으로 가세요) ② 없다. (☞5번으로 가세요)

4-1. 보호관찰 위반으로 처분이 변경된 적이 있나요?

- ① 있다. ② 없다.

8. 입소 전 내 주변 친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응답해 주세요.

질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친구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친구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고민이 있을 때 같이 의논하는 친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친구들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여기 있는 아이들과 범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여기 있는 아이들과 싸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내 주변에 비행으로 조사 또는 처분을 받은 친구들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PART 2. 시설 생활경험 및 시설만족도

9. 여러분은 현재 이 시설 환경과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합니까?

- ① 매우 불만이다. ② 대체로 불만이다.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10. 여러분은 현재 이 시설의 환경과 서비스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합니까?

질문 내용	매우 불만 이다	대체로 불 만이다	보통 이다	대체로 만족 한다	매우 만족 한다
1) 생활실(숙소)	①	②	③	④	⑤
2) 화장실	①	②	③	④	⑤
3) 샤워실	①	②	③	④	⑤
4) 교실	①	②	③	④	⑤
5) 상담실	①	②	③	④	⑤
6) 작업실	①	②	③	④	⑤
7) 운동장 등 부대시설	①	②	③	④	⑤
8) 제공되는 식사	①	②	③	④	⑤

11. 현재 이 시설 중 가장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PART 3. 시설 프로그램 만족도

12. 여러분은 시설에서의 하루일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평일과 주말로 나누어 응답해 주세요.

질문내용	매우 불만이다	대체로 불만 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평일 일과생활	①	②	③	④	⑤
주말 일과생활	①	②	③	④	⑤

12-1. 만일 평일 일과생활 중 **불만족(①,②에 응답한 경우)**하다면, 어떤 점이 가장 불만입니까?

12-2. 만일 주말 일과생활 중 **불만족(①,②에 응답한 경우)**하다면, 어떤 점이 가장 불만입니까?

13. 현재 이 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질문 내용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보통이다	대체로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경험 없음
01) 교과·학습교육(검정고시)	①	②	③	④	⑤	⑥
02) 직업·진로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03) 개인 및 집단상담	①	②	③	④	⑤	⑥
04) 부모 및 가족상담	①	②	③	④	⑤	⑥
05) 심리치료(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①	②	③	④	⑤	⑥
06) 스포츠활동	①	②	③	④	⑤	⑥
07) 문화체험활동	①	②	③	④	⑤	⑥
08) 종교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09) 비행예방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10) 생활지도	①	②	③	④	⑤	⑥

14. 시설에서 만난 담임선생님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응답해 주세요.

질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담임선생님은 내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담임선생님은 내 이야기를 잘 들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3) 담임선생님은 욕설이나 체벌을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담임선생님을 신뢰하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담임선생님과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현재 여러분은 어떠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 ① 교과·학습교육(검정고시) (☞ 16으로 이동하세요)
- ② 직업·진로교육 (☞ 17로 이동하세요)

16.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과·학습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질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용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2) 선생님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3) 교재가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4) 검정고시 준비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5) 진학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6) 미래를 계획하는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17.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직업·진로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질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교육과목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실습장비가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적성에 맞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4) 자격증을 따기에 교육기간이 짧다.	①	②	③	④	⑤
5) 취업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미래를 계획하는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18.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질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에게 꼭 필요한 상담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상담시간이 짧아 아쉽다.	①	②	③	④	⑤
3) 분노조절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를 돌아보는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미래를 계획하는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6) 비행예방 또는 재비행 방지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25. 다음은 여러분이 시설에 들어오기 전에 저지른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응답해 주세요.

질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사과의 편지를 쓰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3) 만나서 사죄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4) 피해배상을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5) 피해자를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6. 다음은 시설에 온 후 자신이 예전보다 나아졌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응답해 주세요.

질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01) 참을성(인내심)이 좋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02)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03)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04) 친구가 힘들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①	②	③	④	⑤
05) 규칙적인 생활습관이 생겼다	①	②	③	④	⑤
06) 규칙과 질서를 잘 지키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07) 나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08)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09) 나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0) 부모님의 사랑과 고마움을 알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1) 학교를 다니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2) 직업을 갖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7. 퇴소 이후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 ① 학교 복학
- ② 취직 또는 취업준비
- ③ 검정고시 준비
- ④ 계획 없다.
- ⑤ 기타 ()

28. 퇴소 이후 잘 적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① 주위의 따뜻한 시선
- ②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
- ③ 생계의 안정
- ④ 선량한 친구들과의 관계
- ⑤ 복학 또는 취직
- ⑥ 기타()

29. 여기서 함께 지내던 친구들이 퇴소 이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 ①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29-1번으로 가세요)
- ② 결코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 29-2번으로 가세요)
- ③ 잘 모르겠다.

29-1. 친구들이 퇴소 이후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비행친구의 유혹 때문에
- ② 돈이 없어서
- ③ 가정환경이 변하지 않아서
- ④ 자신이 변하지 않아서
- ⑤ 기타 ()

29-2. 친구들이 퇴소 이후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시설에서 교육을 받은 후 변화해서
- ② 취직이나 복학을 하기 때문에
- ③ 부모님을 생각해서
- ④ 다시 구속된 생활을 하는게 싫어서
- ⑤ 그냥 하지 않을 거 같아서
- ⑥ 기타 ()

PART 5. 시설에 대한 이미지

30. 여러분은 처음 시설에 들어올 때 이곳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만
응답해 주세요.

- ① 학교와 비슷하게 교육을 받는 곳이다. ② 소년원과 비슷하게 간혀 있는 곳이다.
- ③ 직업훈련을 받는 곳이다. ④ 가정처럼 보호를 받는 곳이다.
- ⑤ 사회복지시설이다.

31. 여러분은 처음 들어올 때와 비교해 현재 시설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바뀌었습
니까?

- ① 전혀 변하지 않았다. ② 별로 변하지 않았다.
- ③ 약간 변했다. ④ 매우 많이 변했다.

32. 여러분은 시설을 생각할 때, 다음 제시된 두 가지 이미지 중 어떤 곳에 더 가
깝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응답해 주세요.

나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좋다
차갑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따뜻하다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편안하다
어둡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밝다
딱딱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부드럽다
약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강하다
조용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활기차다

33. 현재 시설에서 교육받는 기간이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나요?

- ① 1개월 정도 ② 3개월 정도
- ③ 현재처럼 6개월 정도 ④ 1년 정도
- ⑤ 1년 이상 ⑥ 기타 ()

[부록2]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지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6호처분시설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인식조사

ID				T Y P E	종사자 용
----	--	--	--	------------------	----------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국가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소년, 그리고 시설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6호처분 시설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는 6호처분 시설의 이용청소년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귀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다소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바람직한 형사정책을 위해 성실히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개인의 비밀을 보장하도록 관련 법률로 규정되어 있고, 설문내용 역시 학술적 목적 외에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8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연구 주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 책임 : 이승현 연구위원

조사일시	2017년 월 일	에디팅 확인		입력 확인	
------	-----------------	-----------	--	----------	--

[응답자 정보 기입란]

SQ1. 시설명	
SQ2.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SQ3.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SQ4. 재직기간	본 시설 재직(개월) / 해당분야 재직 (개월)
SQ5. 학력	① 고등학교 졸업 ② 학사 재학/졸업 ③ 석사 재학/졸업 ④ 박사 재학/졸업 ⑤ 기타 ()
SQ6. 보유자격증	① 교사 ② 사회복지사 ③ 청소년지도사 ④ 청소년상담사 ⑤ 기타 ()
SQ7. 역할	① 생활지도 ② 상담치료 ③ 교과·학습교육 ④ 직업·진로교육 ⑤ 사회복귀업무(사후관리) ⑥ 실습교육(목공예, 도예, 악기 등) ⑦ 기타 ()

PART 1. 6호처분에 대한 인식

1. 중간처우기관으로서 6호처분 시설이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순위까지 정해주세요)

1순위: () 2순위: () 3순위: ()

- ① 비행행동에 대한 처벌 ② 학교·가정으로의 복귀 ③ 비행환경과의 단절
④ 비행억제를 통한 사회 보호 ⑤ 청소년의 치유와 회복 ⑥ 지역사회와의 소통

2. 6호처분시설이 **소년원**과 구별되는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개방적인 시설	①	②	③	④	⑤
2) 외부자원의 다양한 활용	①	②	③	④	⑤
3)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다양성	①	②	③	④	⑤
4) 직원(교사 등)과 보호소년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5) 사건·사고에 대한 직원(교사 등)의 책임	①	②	③	④	⑤
6) 규칙 운영의 자율성	①	②	③	④	⑤
7) 소규모 시설	①	②	③	④	⑤

3. 6호처분시설이 **청소년회복센터(1호처분)**와 구별되는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일명 '사범형 그룹홈'이라고 불리우는 청소년회복센터는 시설장 및 종사자가 법원에서 보호처분 명령을 받은 6~10명의 비행청소년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돌보는 형태를 말합니다.

2016년에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회복센터는 '청소년복지시설'로 인정되었습니다.

7. 선생님은 다음 중 6호처분 시설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지역별 6호처분시설 설치의 불균형	①	②	③	④	⑤
2) 예산상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3) 비행청소년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전문가 부재	①	②	③	④	⑤
4) 청소년의 비행성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 부재	①	②	③	④	⑤
5) 보호소년이 6호처분을 처벌로 인식하지 않는 문제	①	②	③	④	⑤
6) 표준화된 규율이나 규칙의 부재	①	②	③	④	⑤
7) 사후관리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8) 지역사회 또는 유관부처·기관과의 연계 미흡	①	②	③	④	⑤

8. 현재 이 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음의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질문 내용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보통이다	대체로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실시하지 않음
01) 교과·학습교육(검정고시)	①	②	③	④	⑤	⑨
02) 직업·진로교육	①	②	③	④	⑤	⑨
03) 개인 및 집단상담	①	②	③	④	⑤	⑨
04) 부모 및 가족상담	①	②	③	④	⑤	⑨
05) 심리치료(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①	②	③	④	⑤	⑨
06) 스포츠활동	①	②	③	④	⑤	⑨
07) 문화체험활동	①	②	③	④	⑤	⑨
08) 종교교육	①	②	③	④	⑤	⑨
09) 비행예방교육	①	②	③	④	⑤	⑨
10) 생활지도	①	②	③	④	⑤	⑨

9. 6호처분 시설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순위까지 정해주세요)

1순위: () 2순위: () 3순위: ()

- ① 교과·학습교육(검정고시)
- ② 직업·진로교육
- ③ 개인 및 집단상담
- ④ 부모 및 가족 상담
- ⑤ 심리치료
- ⑥ 비행예방교육
- ⑦ 체험활동
- ⑧ 사후관리

10. 위의 프로그램 외에 6호처분 시설에서 도입이 필요한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11. 6호처분 종사자의 전문성과 교육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질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종사자는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종사자는 비행·범죄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춰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기적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특정분야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선생님께서 보호소년을 관리·감독하는데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질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보호소년이 가족과의 관계가 나쁜 점	①	②	③	④	⑤
2) 보호소년이 시설 내 친구와의 관계가 나쁜 점	①	②	③	④	⑤
3) 보호소년이 거짓말, 규칙 미준수 등 시설부적응 행동을 하는 점	①	②	③	④	⑤
4) 보호소년이 마음을 열지 않는 점	①	②	③	④	⑤
5) 보호소년의 폭력성 (언어, 신체폭력)	①	②	③	④	⑤
6) 보호소년이 학업/진로에 대한 의욕이 없는 점	①	②	③	④	⑤

13. 6호처분 시설이 지역사회 및 관련기관과의 연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질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01) 지역사회와 교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02)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03) 지역사회에서 비행청소년 시설이라고 기피한다.	①	②	③	④	⑤
04)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05) 지역사회 타 기관과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밖 지원센터, 청소년 상담센터 등)	①	②	③	④	⑤
06) 법원과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07) 법무부와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08) 보호관찰소와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09) 보건 복지부와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여성가족부와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지자체와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경찰과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위의 기관 외에 업무 협조 및 연계가 필요한 기관은 어디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무엇입니까?

15.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에 대한 사후관리는 주로 어떠한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 ① 전화, 문자, SNS 등으로 안부 확인
- ② 재단에서 운영하는 다른 시설에 연계
- ③ 지역사회의 다른 시설 및 프로그램에 연계
- ④ 직원의 가정방문 등 정기적 대면상담
- ⑤ 사후관리를 전혀 못함(≒16번으로 이동)
- ⑥ 기타()

15-1.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술해주세요.

PART 3. 6호처분 시설의 개선방안

16. 6호처분이 활성화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질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01) 시설의 노후부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02) 프로그램이 양적인 면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03) 프로그램의 질적인 면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04) 운영예산의 지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05) 직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06) 모든 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표준화된 규율·규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07) 비행성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08) 6호 처분에 적절한 대상 청소년 선별을 위한 표준화된 도구가 개발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09)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보호력 및 지원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및 자원연계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보호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부록3] 관련전문가 심층면접지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6호처분 시설의 효과적 운영방안에 관한 심층면접

ID				T Y P E	소년용
----	--	--	--	------------------	-----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국가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아동보호시설의 시설장,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전문가를 대상으로 6호처분 시설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층면접 결과는 6호처분 시설의 이용청소년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귀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이번 조사는 개인의 비밀을 보장하도록 관련 법률로 규정되어 있고, 심층면접 조사내용 역시 학술적 목적 외에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심층면접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8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연구 주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 책임 : 이승현 연구위원

공동 연구자 :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선영 교수

[응답자 정보 기입란]

1.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2.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3. 직업	① 실무자 ② 교사 ③ 교수 ④ 연구원 ⑤ 기타
4. 학력	① 고등학교 졸업 ② 학사 졸업 ③ 석사 졸업 ④ 박사 졸업 ⑤ 기타 ()
5. 시설장/종사자 보유자격증	① 교사 ② 사회복지사 ③ 청소년지도사 ④ 청소년상담사 ⑤ 기타 ()
6. 시설장/종사자 시설에서의 역할	① 시설장 ② 생활지도 ③ 상담치료 ④ 교과·진로교육 ⑤ 직업교육 ⑥ 사회복지업무 ⑦ 기타()

I. 6처분의 정의와 목표

1. 중간처우로서의 6호 처분의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비행 행동에 대한 처벌, 재사회화, 사회와의 연결, 비행환경과의 단절, 청소년 비행 억제를 통한 사회보호, 수용된 청소년의 회복과 치유 등)

2. 6호 처분이 소년원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3. 6호 처분이 청소년회복센터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청소년회복센터: 일명 사법형 그룹홈이라고 불리움. 법원에서 명령을 받은 6~10명의 비행청소년들이 가정집에서 모여 살며, 시설장과 종사자와 함께 거주하며 청소년들을 돌보는 형태. 대부분 1호 처분 위탁가정의 형태로 운영됨. 기간은 6개월~1년. 2016년에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복지 시설로 인정됨.

4. 6호 처분에 가장 적합한 대상자 선별기준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비행경력, 대상자의 나이, 비행유형, 가정의 보호력, 부모의 학대 여부, 대상자의 성격, 기타 대상자의 특성)

5. 6호 처분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6. 6호 처분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II. 6호시설 운영

7. 중간처우로서 6호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갖추어야할 소양과 자질은 무엇입니까?

8. 6호 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9. 6호 시설에서 가장 중요하게 시행되어야 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10. 퇴원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져야 합니까?
11.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협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12. 관련 국가기관과는 어떠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어떠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합니까?

III. 개선 방안

13. 6호 처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결해야할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14. 6호 처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15. 현재는 법원에서 6호 처분을 받은 비행청소년을 보건복지부 관할 아동복지시설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향후 6호 처분 대상 비행청소년의 관리·감독 관할에 관해 어떤 기관에서 관리·감독을 통합적으로 해야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IV. 시설장에 대한 별도 질의문항

1. 본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모두 소개해 주세요.

01) 교과교육 (검정고시)	
02) 직업교육	
03) 상담교육	
04) 부모 및 가족상담	
05) 치료 (정신과, 일반의료)	
06) 스포츠활동	
07) 문화체험활동	
08) 종교교육	
09) 비행예방교육	
10) 생활지도	

218 소년범 대상 중간처우제도의 활성화방안

시설 명		지역	_____도 _____시/군/구
시설장 성명		보호소년 성별	남 ____ 여____
시설 정원		현재수용 인원	_____명
6호처분 보호소년 수	_____명	보호소년 연령대	
6호처분 종료 후 연장하여 거주하는 아동·청소년 숫자	_____명	종사자 구성	
종사자 수	_____명	시설에 거주하는 종사자 수	_____명
현재(혹은 그간) 본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 중에 경제수준으로 인해 생활보호대상자(수급자) 지정이 안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 _____ 있다_____ => _____명	
현재 본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 의 본거주 지역 문제로 인해 지자체로 부터 예산지원을 못 받은 경우는?		없다 _____ 있다_____ => _____명	
본 시설의 예산지원 기관 구성은?		보건복지부(_____%), 지자체(_____%), 기부금(_____%), 기타(_____%)	
본 시설의 대략적인 예산 편성 구성은?		식비(_____%), 시설비(_____%), 인건비(_____%), 교육비(_____%) 기타(_____%)	
본 시설에 적용 되는 운영규칙은?		아동·청소년의 생활 을 규제하고 감독하 는 명시화된 규칙/규 정은?	없다 _____ 있다_____

연구총서 17-AB-03

소년범 대상 중간처우제도의 활성화방안

- 6호처분을 중심으로 -

발 행 | 2017년 10월

발 행 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 행 인 | 김진환

등 록 | 1990. 3. 20. 제21-143호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 화 | (02)575-5282

홈페이지 | www.kic.re.kr

정 가 | 10,000원

인 쇄 | 경성문화사 02-786-2999

I S B N | 979-11-87160-75-5 93360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함.

